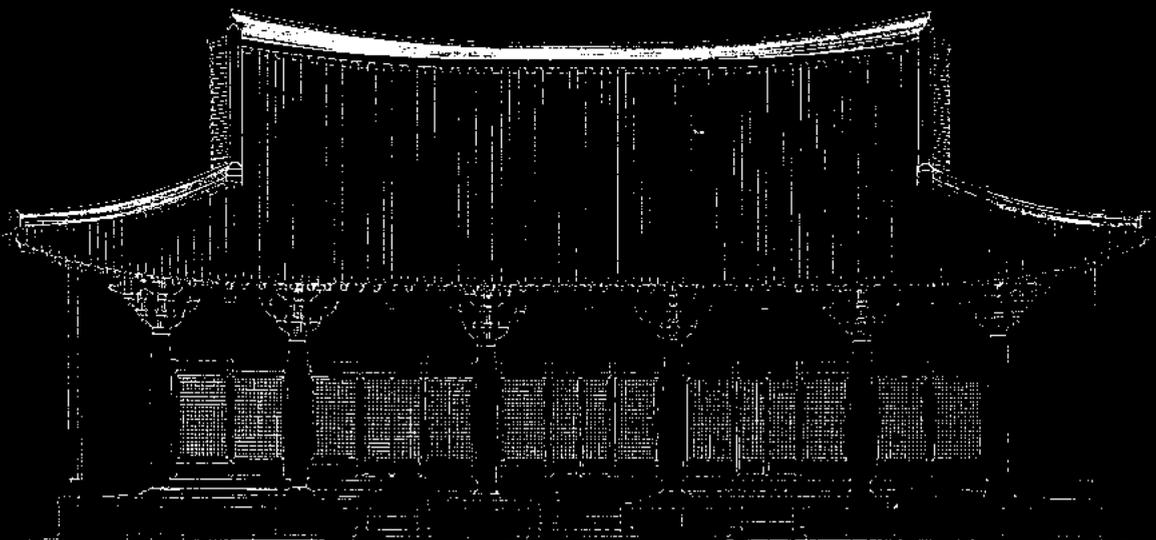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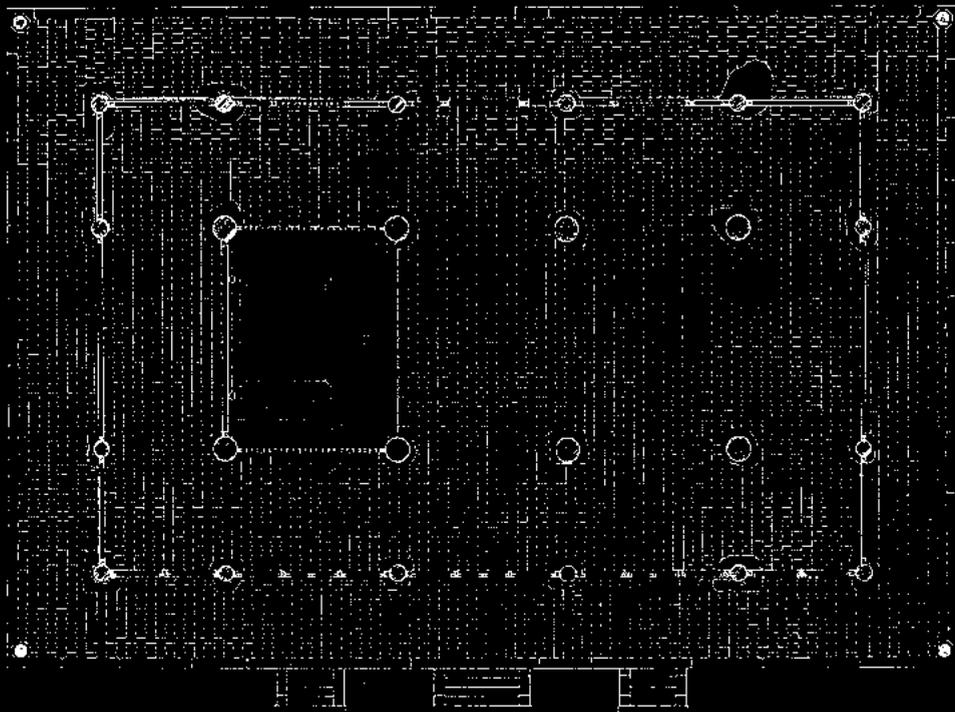


197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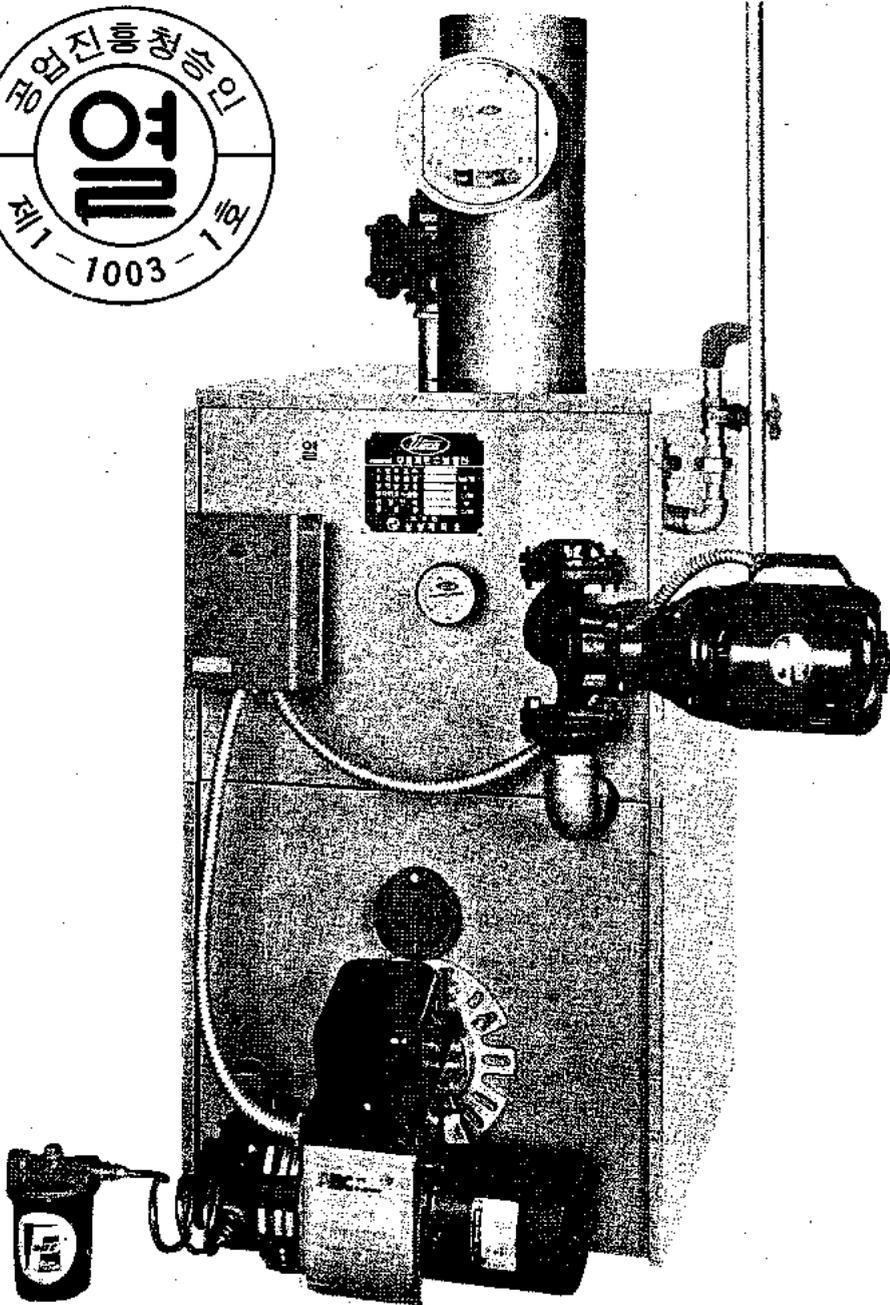


Cast Iron Boilers

놀라운성능 · 연료비절감 · 영구적인수명

※ 난방 / 급탕겸용 ※

Utica 유티카 신
자동 보일러 제 품



製造元：三成製作所
유티카商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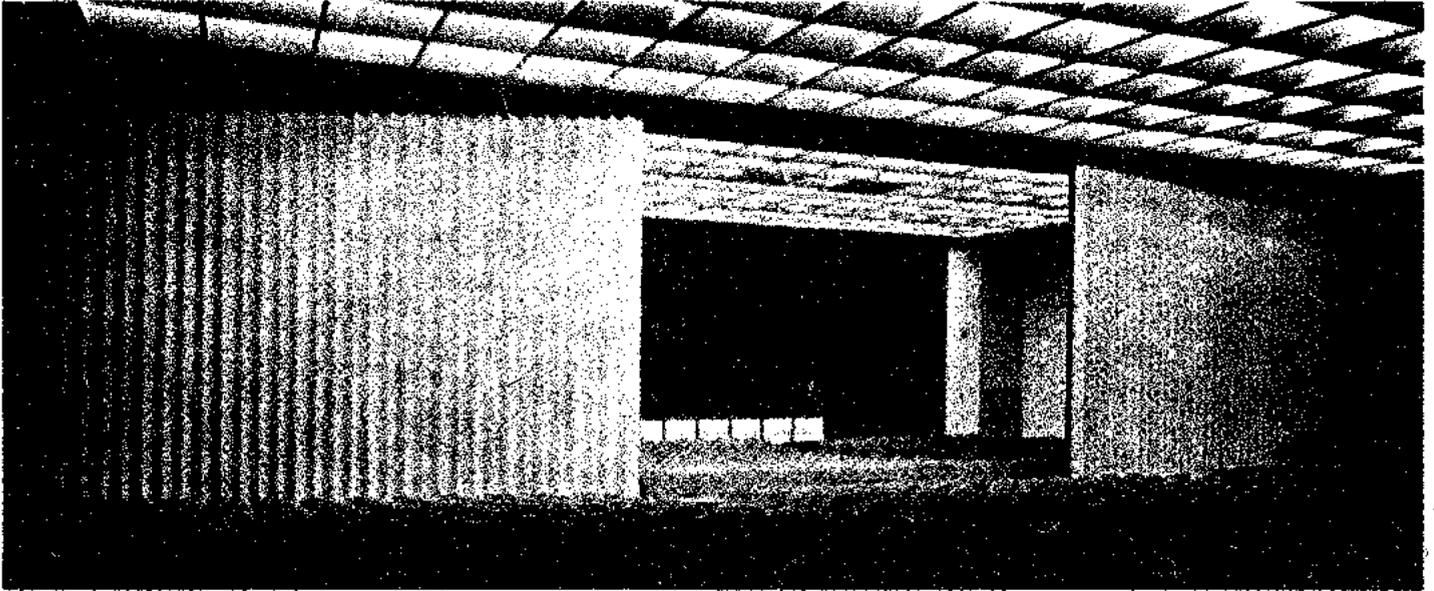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FOLDING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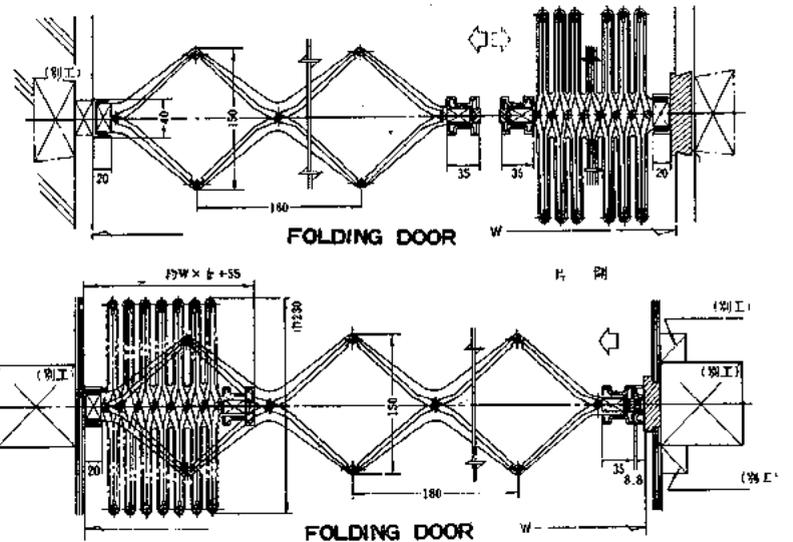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스무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仕 樣

名 稱	材 斷
항 가 레 일	硬質 알미늄합금 押出型材
란 나	特製 테리링 토-라
카 부 레 일	硬質 알미늄합금 押出型材
힌지푸레이드	1.2% 厚鋼版 유니크를 먹기
후 레 임	硬質 알미늄합금 押出型材
싸이드후레임	硬質 알미늄합금 押出型材
張 布 地	人造皮革, 人造실크, 레자 織造地(特殊 難燃処理)
開 閉 裝 置	強力 마구넬
重 量	1m ² 에 約 5kg
접혔을때의부피	W×1 ¹ / ₈ +55mm
積 算	W×H = 面積(m ²) 面積×1m ² 単価 = 1台價格 1台 3m ² 未滿의 境過는 3m ² 로 計算합니다. 最下 注文 單位 3m ² 임.



輕快한 操作으로 조용히 開閉되는 칸막이用 홀딩
하-모니 도아는 住宅, 官廳, 銀行, 會社, 學校, 호텔
病院, 會議室, 應接室, 事務室, 廳, 食堂 等に 適合
하며, 하-모니 도아는 美國·日本의 技術을 導入하여 製作한 堅固하고 美麗한 実用品입니다.

2 in 1 의 壁



홀딩도아
專門메이카

永一홀딩도아商社.

技術 美國 페니會社
指導: 日本 아코디온 도아會社

事務室: 서울市中區 荳洞 2 街 46-8

電話: 26-0873-1658

工場: 永登浦區 新道林洞 1103-6

69-6110

釜山支社: 釜山市 東光洞 2 街 4

22-8640



Better ideas make better Boilers

Korea Rocket Boiler (로켓트 보일러)



- ※ 제 1회 연료사용기기 전시회 우수상 수상
- ※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우수상품 지정



■ 상공부 공업 진흥청 형식 승인

- ◎ 기름보일러 1-1002-1
- ◎ 기름보일러 1-1002-2
- ◎ 기름보일러 1-1002-3
- ◎ 기름보일러 1-1002-4
- ◎ 기름보일러 1-1002-5
- ◎ 기름보일러 1-1002-6
- ◎ 기름보일러 1-1002-113
- ◎ 오일버어너 4-1001-40
- ◎ 연탄보일러 1-1004-10

※ 건축사를 위한 로켓트 보일러 특성표 ※

ITEM	TPE	품 류	로켓트 기름보일러(가정용 권장용)										로켓트 스팀보일러		로켓트 연탄보일러			
			단	위	KR-40	KR-60	KR-80	KR-100	KR-150	KR-200	KR-250	KR-300	KR-400	KR-500	KBS-50	KR-191	KR-192	KR-193
발 열 량	Kcal/hr		20,000	30,000	50,000	7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400,000	500,000	120,000	3,110	6220	9330	12,440
난방기공용수	MBUNG Area		20~30평	30~50	60~80	80~100	100~150	15~200	200~250	250~300	300~400	400~500	715	3~4	6~8	12~15	18~20	
관 수 용 량	ℓ		195	122.9	166.6	178	308	396	573	624	920.9	1280	-	35	81	105	130	
연료소비량	L/hr		3~6	5~6.5	6.5~8	8~11	11~15	15~20	20~24	24~27	32~36	44~56		19공탄	19공탄	19공탄	19공탄	
수압시공압력	kg/cm ²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5.25					
배관구경	㎝/φ		50	60	65	65	75	75	75	75	100	100		32	40	40	50	
연료구경	㎜/φ		150	150	200	200	250	250	300	300	350	400		100	100	100	100	
바 나	FP		1/4	1/4	1/2	1/4	1/4	1/4	1/4	1/2	1/2	1/2	1/4					
외경치수	φ		470	540	610	610	650	690	690	1000	1300	1400		430	550	550	1,250	
외경치수	H		1150	1150	1290	1450	1600	1750	1750	1850	2,000	2,300		590	590	590	590	
중 량	kg		320	340	420	440	480	520	590	620	720	900		780	130	203	259	
로켓트보일러 이탈가액	공 장 도		159,400	202,000	296,900	391,800	418,800	512,400	590,700	590,300	1,149,800	1,297,500	1,297,500	50,400	82,400	109,000	130,500	
로켓트바나 이탈가액	공 장 도		184,300	184,300	194,300	240,800	240,800	246,800	246,800	270,300	312,800	312,800						

◎ 용 도

- ◎ 주택용 30坪 ~ 250坪
- ◎ 공장, 가축사, 빌딩, 100坪 ~ 600坪
(100ℓ ~ 10,000ℓ의 물을 65° C ~ 85° C ~ 온수용)
- ◎ 식품공장, 음료용, 내부가 알미늄 시리콘 처리된 각종 보일러
- ◎ 수출 직물, 전자, 식품가공, 공장용, 사우나용
(0.5 TON 증기보일러)

◎ 특 징

- ◎ 열효율 87.2%
- ◎ 열료절감 40% (재래식보일러비교)
- ◎ 500 TON 오일프레스 성형제작
- ◎ 특허 7873호 특수시설 (금강난방겸용)
- ◎ 전자동 운전 및 안전장치



고려강철주식회사 KOREA STEEL PRODUCTS CO., LTD.

제 1 공장 : 서울 · 영등포구 외발산동 288 - 1
전 화 : 27 - 9358 · 26 · 1135 ~ 6 · 66 - 1363 · 66 - 2810

建設應用講座案內

▲目的에 따라 아래 4週 單科班만을 受講可能

A. 전문과정



■週末構造세미나

(2個月) (64時間)

▲開講: 2月7日(土) 17:00

*한가한 週末을 利用하여 構造力學講座와 同一한 內容으로 講義개학 (力學 및 鉄筋)

(每週 土·日요일 → 17:00~19:00, 19:20~21:20 (4時間))

B. 프로그래밍 과정

(수료증 발급)

C. 응용과정

D. 공정 관리 과정

■構造力學講座 (4週)

(2月 特別班) (64時間)

*2月の 방학을 利用하여 構造力學(3週) 및 鉄筋(1週)를 特殊方法에 依하여, 完全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 (기타 자세한 것은 전화 73-6616으로 문의)

▲開講: 2月7日(土) 17:00

▲教材: 応用構造力學問題集 上·下권 (新刊)
鉄筋콘크리트 問題集

▲講師: 著者 直接 講義

▲講義內容: 초보적인 힘과 모멘트, 각종 공식에서 부정정 구조까지, 鉄筋콘크리트 전반

▲講義方法: 2時間 講義 (實力向上을 위하여 主觀式으로), 1時間 演習 및 試驗

▲接受: 자격관계로 先着順 (2月3日~7日)

접수 사무시간 17:00~19:30

▲特典: 2月 特別班에 한하여, 応用構造力學問題集 出版記念으로 上권을 무료 증정.

▲3月班부터 每月 첫 토요일 開講

■EDPS 入門 (4週)

EDPS란? Computer의 構造에 原理 等 初學者 課程

■FORTRAN (4週)

傳學技術 計算機 言語 課程

■ADVANCED FORTRAN (4週)

高級 課程 및 實習

■構造컴퓨터應用講座 (4週)

CASE(Computer Aided Structural Engineer)양성의 實務實習 課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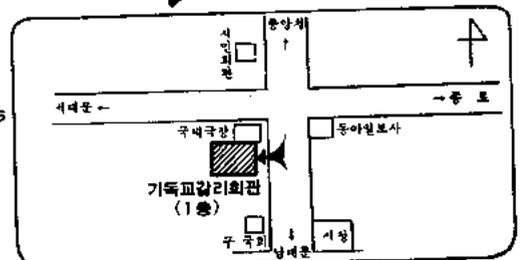
■資格: 構造力學講座(4週) 및 프로그래밍과정(12週)을 수료한 사립

■特典: 성적우수자는 國內의 취업 알선

■工程管理應用講座 (8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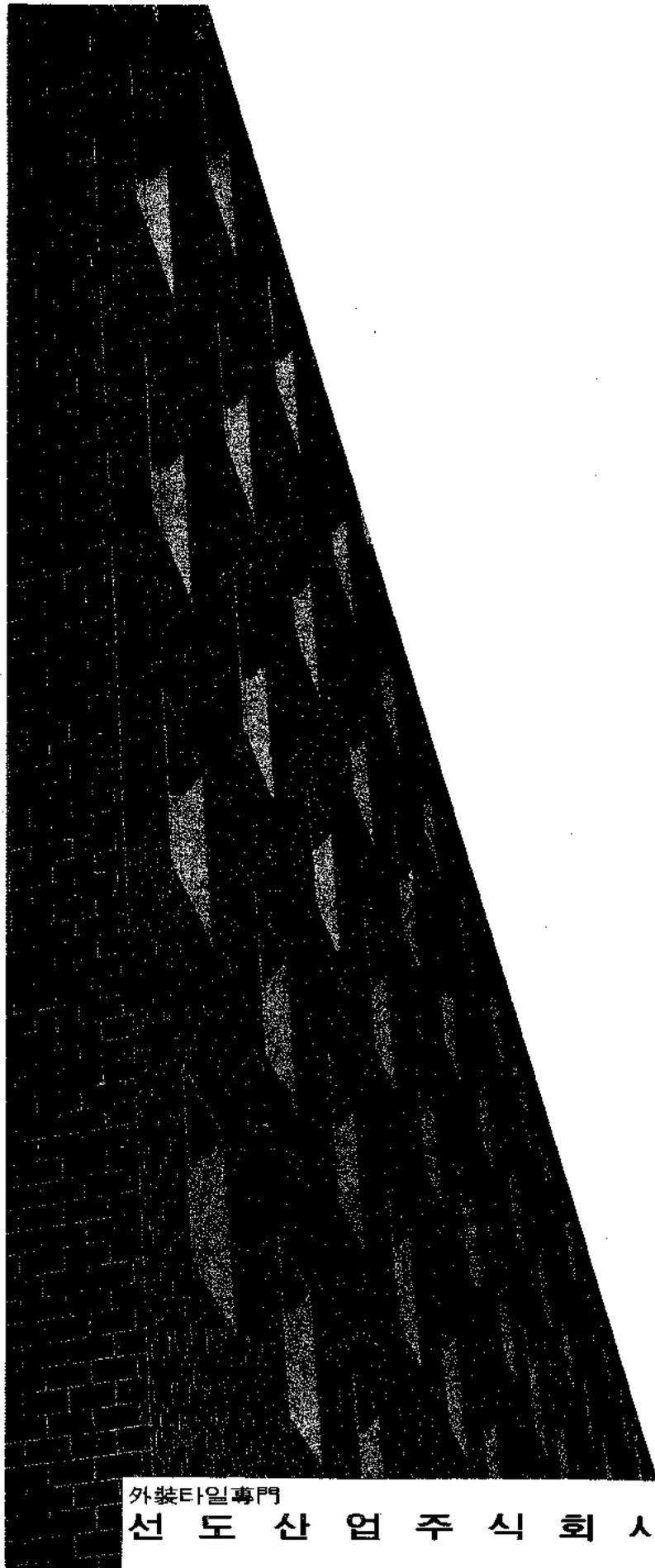
RERT, CPM을 컴퓨터로 應用하는 實務實習課程

分室 및 學院略圖



株式會社 서울컴퓨터 光化門 分室
官認 서울컴퓨터 學院 建設應用室(SCC-CASES)
Seoul Computer Center -
Computer Application of Structural Engineering Services
學院: 서울特別市 中區 太平路1街 64-8 직통 73-6616
光化門 國策 극장 옆 감리회관 1층 (74-0221)
美國事務所: 342 Madison Avenue New York (212) 986-0860
N. Y. 10017. U. S. A.

끝없는 空間創造가 이 素材에서...



鮮陶外裝타일은

耐寒·耐酸性이 强하고

優雅한 色感

美麗한 色相

刺戟性있는

余分の 光澤을 除去한
表面의 多様な 色度處理...

지금부터

建材에 必要한 條件을

完全히 具備한

需要家注目の 製品입니다.

(特殊形狀, 特殊치數의 注文도

引受하고 있습니다)

外裝타일專門

선도산업주식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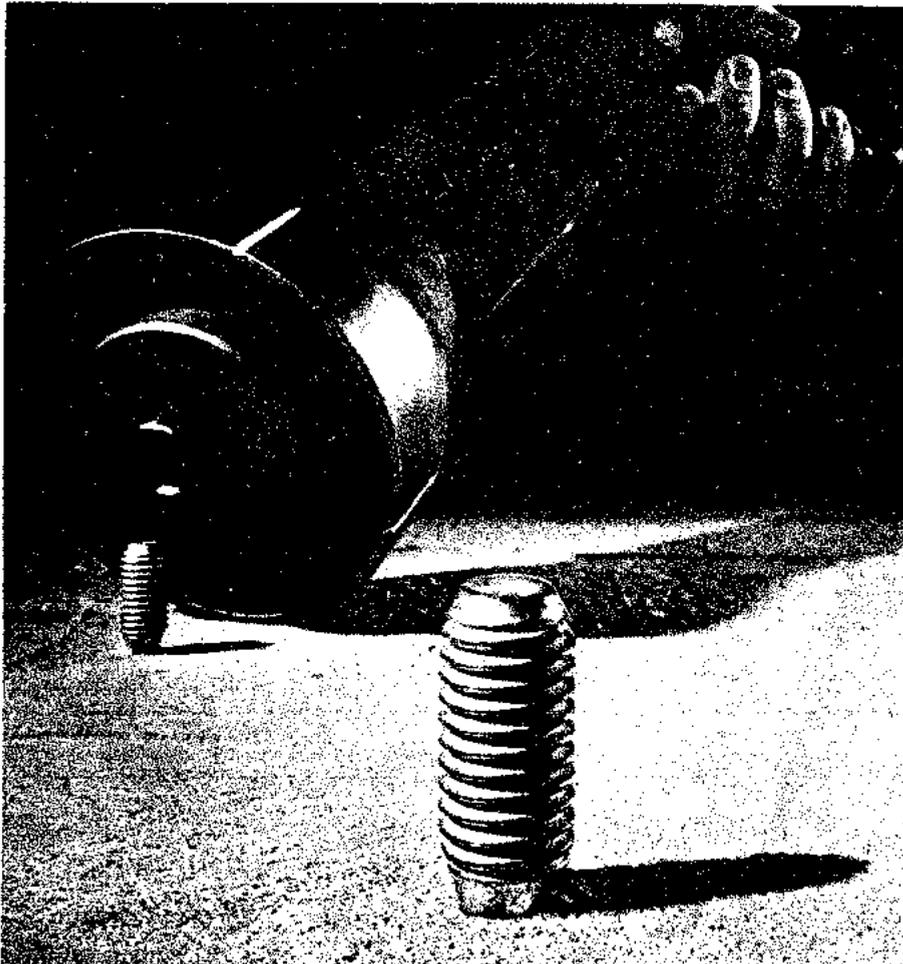
SUNDO TILE

京畿道 廣州郡 西部面 草二里212
서울特別市 中区 乙支路2街 148
TEL. ②6 1565·2534 ⑤5 0764·1790

HILTI

安全建設用打釘工具

HILTI



* 1. 주요 용도 (건축, 조선, 제강용)

- 건축 토목공사
- 전기 설비 공사
- 배선 배관 공사
- 전철 철도 공사
- 탄발 공사
- 조선공사
- 간판, 장식공사
- 냉난방 공사
- 기계 가구류 부착 공사
- 철골 공사
- ROOFING, SIDING, DECKING

* 2. 특 징

- 최대의 안전성
- 시공 기간의 단축
- 시공의 간편, 신속, 확실
- 인건비의 절감
- 깨끗한 외관
- 강한 고착력

* 安全第一을 原則으로 하고있는 HILTI는 세계에서 最初로 低速式 安全打釘原理 開發에 成功 여러 方面의 附屬作業에 從事하는 爲으로 부터 絶對的인 信賴를 받고 있습니다.

유네스코國際勞動局(ILO) 後援의 HILTI 安全原理에 依한 打釘工具는 여하한 狀態에 있어서도 鋼鉄의 PIN을 安全하게 確實히 CONTROL 해 줍니다.

* 새로운 HILTI SYSTEM의 시공예



韓國總代理店

韓國火藥株式會社

本社: 서울特別市 中区 西小門洞12-1
TEL. 23-0381~9·直 22-6679

●營業所

釜山 Tel (43) 2066 · 全州 Tel 213181
 天安 Tel 3500 · 堤川 Tel 2044
 襄湖 Tel 300 · 黃池 Tel 410
 店村 Tel 2314 ·

●대 리 점

서울: 삼성화약사 TEL 06 1949
 삼성 HILTI TEL 68 0290
 인천: 대한화약사 TEL (2) 0750
 대구: 아세아화약사 TEL (2) 0109
 부산: 한광총포사 TEL (23) 1577

U. D. C. 69 / 72 (054-2) : 0612 (519)

月刊「建築士」 (通卷 83号)

1976. 1

目次

新年辞	2
1975年度事業報告	3
1976年度事業計劃	5
陳情書	9
建築法中改正法律	10
改正建築法解説	李文輔 13
看板の色彩調査研究	金眞一 20
國産木材表面の色度と明度分布の調査	尹一柱 28
現代建築石造壁の合理的デザインに關한研究	李廷德 31
우리나라 아파트 平面의 形成過程을 지켜보며	姜明求 38
住宅建設促進法	46
海外建設促進法	
證卷去來所懸賞応募作品	51
海外作品(핀란드編)	65
會員動靜	67
建築許可統計	72
住宅建築許可節次改善方案實施要綱	74
月間協會動靜	78
協會記事	79
建築界소식	80

編纂委員會

委員長	李興	秀錫
委員	金仁	眞一
	俞景	道哲
	尹道	文根
	李文	輔燮
	韓鏞	漢根
	金漢	漢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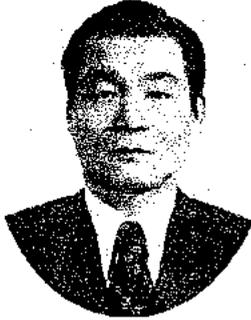
發行人兼編輯人・李主福 / 登錄番号・第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發行日字・1976. 1. 31日 / 通卷 第83号

發行所・大韓建築上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区 瑞麟洞 89番地
(非売品) 電話・73-9491~2

表紙：浮石寺 無量壽殿 韓國建築樣式論에서



新 年 辞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丙辰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해를 맞아 무엇을 어디서부터 始作해야 겠나를 차분한 마음으로 生覺해 나아가야 겠습니다.

지난해에 마무리 지워진 일들을 한가지씩 實踐으로 옮겨 後悔 없는 알찬 歴史를 創造 우리 後代에게 물려줄 態勢를 갖추어야 겠습니다.

지난 1975年은 우리 建築士에게 많은 課題를 남긴 해였습니다. 이 課題는 어느 特定人만의 것은 決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全体會員에게 주어진 課題요, 至上課業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國家는 國民을 위해 存立하고 國民은 國家를 위해 献身, 奉仕하르로서 만이 한 民族이 永遠할 수 있듯이 우리 協會는 全体會員을 위한 機構로서만이 그 存立의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其間 10개 성장 協會發展에 献身的인 會員들의 奉仕가 추모도 소홀하거나 헛되게 취급 되어서는 아니 될줄 믿습니다.

會員相互間의 總和團結을 指標삼아 우리 建築士는 一糸不乱한 몸가짐과 그 品位 向上을 가어히 이루워 時急히 要請되고 있는 建築行政 簡素化 方案에 따른 合理的 対応策을 講究, 우리 스스로의 權益이 한치도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成就시킨 報酬料率 現實化에 이어 全体會員의 待望인 建築士法 改正도 이 새해에는 꼭 끝맺음이 되도록 우리 모두 總力을 다해야 겠습니다.

全國會員과 그 家庭에 萬福이 기쁘시기를 빌면서……

1976年 元旦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李 圭 福

1975年度 事業報告

朴 成 圭 (総務理事)

多事多難했던 1975年度를 보내고 希望에 찬 丙辰 새해를 맞이하여 會員여러분들의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저 하는 일이 알차게 結實하기를 빌면서 本協會의 1975年度 事業実績과 今年度の 事業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1975年度 事業報告

지난 해에는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景氣沈滯에 따른 會員業務의 萎縮、急變하는 国内外情勢에 따른 諸與件 變動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難関이 協會의 事業遂行에 支障을 招來 하였습니다. 全國會員 여러분들의 熱誠的인 協助와 声援 그리고 關係 当局의 幅넓은 理解와 支援으로 当初計劃했던 事業計劃의 大部分을 成就할 수 있었음을 會員 여러분들과 더불어 기뻐하는 바이나 協會가 이룩한 諸事業이 果然 會員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에 어느 程度 副應할 수 있었는가 하는 點에 對해서는 아직도 많은 疑問點이 있고 많은 自省이 必要하다는 點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1975年度 事業実績의 概要를 우선 報告드리겠습니다.

① 制度改善을 위한 措置

① 定款改正

各市道支部에 倫理委員會를 設置하고 圖書審議委員會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10回 定期總會에서 定款一部를 改正.

② 諸 規程 改正

定款改正에 따른 倫理委員會規程을 改正하고, 人

事, 報酬체계의 合理的인 改編을 爲해 人事規程, 報酬規程, 職制規程 등을 제2回 監時總會에서 모두 改正하는 同時業務研究委員會를 폐지하고 建築研究委員會를 設置할 수 있도록 關係規程을 改廢함.

② 關係法令 研究 및 改正推進

不合理한 關係法令의 改正등을 關係当局에 建議한 보람이 있어 75年度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 法令이 改正 또는 新設되어 會員業務에 큰 도움이 되게 되었음

① 建築法

75年度 定期國會에서 通過된 改正建築法이 會員들의 큰 関心事였던 汚物淨化槽의 設計를 建築士가 할 수 있도록 하고 設計 및 監理者에게 不利益 処分을 할 수 없도록 하는 條項이 삽입되었음.

② 海外建設促進法

75年度定期國會에서 通過된 海外建設促進法이 우리 會員들도 海外進出을 法的으로 保障받고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規定되었음.

③ 建築上法

本會는 會員들의 宿願인 建築士法 改正 實施를 爲해 74년 11月末日 建築士法改正建議案을 主務当局에 提出하였던바 主務当局에서도 本協會의 意見의 妥当性を 認定, 建築士法 改正作業에 着手 75年 末頃을 前後하여 建設部 草案이 거의 完成된 것으로 展開되고 있으며 75年 定期國會에서 金建設部長官이 建築士法 改正을 推進하고 있으며 76年度 臨時國會에서 附議할 予定이라고 斷言한 事實등을 미루어볼 때 76年度 中에는 建築士法이 改正될 것으로 보임

③ 會員 福利增進 및 權益옹호

① 報酬料率 現實化

75年度 事業中 가장 큰 力點을 두고 推進한바 있는 “建築士業務 및 報酬基準”이 75年 12月 15日字 “建設部告示 第197号”로 改正 認可되어 報酬料率에 平均 50~70% 引上, 76年 1月 1日부터 施行할 수 있게 되었음을 協會가 會員들을 위한 事業中 가장 큰 수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② 所得標準率 適正化推進

建築士業의 所得標準率 現行34%의 適正化를 期하기 위하여 國內外的 關係資料等을 集부한 所得標準率 適正化 方案을 마련 国税庁 當局에 正式 建議하는 한편 建設部에도 協調를 要請하였던바 建設部에서도 이를 認定 国税庁長에게 所得標準率의 適正化를 公文으로 要請한바 있고 国税庁에서도 76年度中 所得標準率의 再調整 時 反映하겠다는 回示가 있어 今年度の 所得標準率再調整時 本協會 建議가 反映될 것으로 期待됩니다.

④ 建築行政 簡素化 施策에 따른 対策

建設部에서 建築行政 簡素化의 一環으로 建築士 5人 責任制를 骨子로하는 行政 簡素化 案을 마련 76年 1月 1日부터 晉州, 全州, 水原 등 3個都市에서 示範적으로 實施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本協會는 方案이 施行되는 경우 相當한 問題點이 뒤따를 것으로 判斷, 金鎮成 理事가 前記 3個都市의 現地準備態勢 등을 調查하는 한편 75年 各市道支部의 定期總會를 계기로 會長以下 理事 全員이 各市道支部에 出張하여 地方別 여론을 수집 合理的인 補完策 장구를 위한 事前準備를 進행한 바 있으며 이렇게 수집한 資料는 곧 關係當局에 提出하는 建議 資料로 活用될 것입니다.

⑤ 出版事業

① 會誌“建築士”를 前年度에 이어 菊倍版의 國際版型으로 每月 3,000部를 印刷(11·12月号는 合本)하여 全國會員 및 關聯団体, 人士와 外國 機關등에 無料配付하였으며 75年 3月에는 4.6倍版의 會員名簿 2,000部를 發刊 配付하였으며 創立10周年記念 論集인 “오늘 그리고 建築”을 2,000部 發刊 配付하는 한편 75年度 事業計劃의 하나인 “建築士를 위한 稅務解説” 冊字 1,700部를 發行, 全國 會員에게 無料配付하고 “建築法問答集” 1,800部를 發行 全國會員에게 76年 1月 中旬 配付함으로써 例年에 비해 많은 刊行物을 發刊하여 會員 業務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75年度에는 定款 및 諸規程集을 發行 各支部 및 分所에 配付하여 業務遂行에 參考토록 하였습니다.

⑥ 指導事業

會員作品 展示會 및 協會賞 實施 協會 創立 10周年 記念行事의 하나이기도한 會員作品 展示會는 75年度의 指導事業計劃中 重要한 部分으로서 全國會員의 積極的인 參與로 75年 10月 協會會館 一層 展示場에서 展示되었고 觀覽人員수만도 3千余名에 이르는 盛況을 이루었는데 出品된 作品中 厳選된 作品과 論文 部門에 對한 1975年度 協會賞이 授與되었습니다.

① 分所 實態 調査

協會創設以來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全國分所 實態 調査를 實施하여 새로운 分所 運營의 指標를 마련 하는 同時 當面隘路事項 등을 把握하여 앞으로 協會運營目標設定에 反映할 貴重한 資料를 얻었습니다.

② 倫理委 活動 및 其他

年中 6回의 倫理委員會를 開催하여 提訴 事件의 大部分을 處理, 倫理委의 효율적인 運用과 會員의 品位向上등에 相當한 效果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關係法令 質疑에 對한 早速한 回信, 國內外的 關係資料 수집과 會員들에 對한 資料 提供에 特히 注力하였으며 한편 指導事業計劃中 하나인 學術講習會는 諸與件 未熟으로 實施하지 못하였습니다.

⑦ 弘報 및 安保態勢 確立에 참여하는 活動 등 建築士 業務에 對한 一般의 올바른 認識을 유도하기 위한 一環策으로 서울신문 및 한국일보 등 日刊新聞에 關係 案內 廣告를 掲載한 것을 비롯하여 數次에 걸친 言論人 招請 간담회 開催, 其他 日刊新聞通信에 關係 廣告 게재 등 P.R 活動을 大幅 強化하였으며 더욱이 75年度中에는 全國 分所 長 會員이 參席한 庶政 刷新 세미나를 開催하여 政府에서 強力히 展開하고 있는 庶政刷新運動에 呼應하였을 뿐만 아니라, 500余 會員이 參加한 建築士 勝共 羸起大會 開催 등 安保態勢 確立을 爲한 活動을 積極 展開하였으며 또한 全國會員의 積極的인 呼應으로 防衛誠金 1,009萬圓을 建設部長官에게 寄託하기도 하였습니다.

其他

75年 10月 23日은 本協會 創立 10周年 記念 日로서 이날 800余 會員 및 來賓이 參席한 가운데 10周年 記念式을 舉行하고 400余 會員이 産業視察에 나서 (韓國유리 仁川工場) 뜻깊은 하루를 自祝하는 同時 協會에 對한 對內外的 認識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大充 以上과 같이 未備하나마 事業報告를 드리고 이어서 76年度 事業計劃을 說明드리겠습니다.

1976年度 事業計劃

朴 成 圭 (總務理事)

지난 10年間 會員여러분들께서는 “協會發展을 위해” 크나큰 奉仕와 物心兩面의 犧牲을 甘受했습니다. 그 結果 本協會는 여러 面에서 飛躍的인 發展을 거듭해서 団体年輪으로서도 成長期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各界의 耳目을 끄는 어엿한 団体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協會가 “會員을 위해 會員을 위해”라는 스로강을 내걸고 모든 輪을 이 目的達成을 위해 集中시켜야 할 時機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本協會는 今年度 事業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上記한바와 같은 目的達成을 가장 큰 指標로 삼고 이를 段階的으로 成就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다음과 같은 事業計劃을 樹立하였습니다.

1. 사업계획의 지표와 개요

1) 조사연구사업

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본협회 설립목적을 보다 더 조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를 위한 제사업과 협회 운영 방안에 대한 뚜렷한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이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장기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 신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내용으로 한 5개년계획을 수립 76년도 정기총회에서 확장하여 77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 음

○회원 업무에 관련된 제어건 및 환경개선을 년차계획 (관계법령, 행정시책 개선등 포함).
○협회 (지부, 분소 포함) 운영지표 설정과 년차별 개선방안 수립 (조직, 예산, 회비징수 문제 등 포함)

ㄴ) 각시도의 건축행정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건의 각시도의 건축행정 제도 및 제시책이 시도에 따라 상당한 상이점이 있어 회원 업무수행에 혼란과 차질을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함으로 각시도의 건축행정 실태를 정확히 조사 파악한 후 통일된 방안을 마련 관계 당국에 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ㄷ) 표준설계도서 활용확대에 대한 대책 강구
정부 관서에서의 표준설계도서 활용이 점차 확대될 기운이 엿보이고 있음으로 표준설계도서 활용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하여 관계당국에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동시 다각적인 P.R.활동으로 회원 업무의 저해요인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ㄹ) 예산회계법 시행령등 개정 건의,
건축설계업무에 대한 인식부족 및 법적인 뒷받침 결여등으로 아직도 일부 관공서 등에서는 건축설계 용역을 입찰등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감안할때 이를 법제면에서 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됨으로 예산회계법등 관련법규의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ㄹ) 관계법령의 연구
현재 국회 및 행정부에 계류되어 있는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회원 업무에 관계되는 제법규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미비점에 대한 건의등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ㅁ) 회원카드 정리
현재 본회 및 각지부에 비치되어 있는 회원카드는 협회 창설당시에 재정된 양식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많고 또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을 느끼고 있음으로 새로운 양식에 의한 카드를 작성 전면적인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2) 지도사업

ㄱ) 서정쇄신업무 강화
정부시책에 호응하여 신년도에는 서정쇄신 업무를 강력히 수행하고자 감사 기능의 강화 각시도 지부등에 대한 업무지도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동시 회원 및 관계 당국자들을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ㄴ) 설계지침서 및 10년간의 건축통계집 발간
회원 업무의 참고자료로서 설계지침과 10년간의 건축관계 통계를 수록하는 단행본을 발행하여 전국 회원에게 발행하고 아울러 연례사업인 건축법 문답집도 발행하고자 합니다.

ㄷ) 제소사건의 신속처리
회원간의 분쟁을 조속히 조정하고 제소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시도 지부에 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협회 윤리위원회는 매 2개월마다 개최하되 지부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하는 건축사의 재심을 청구 주로 심의 처리하는등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ㄹ)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업무연구위원회를 기술연구위원회로 개편하여 기술개발 및 각지부의 도서심의지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3) 교육훈련사업

ㄱ) 회원 강습화
매 2년마다 개최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신년도에는 건축법등 회원업무에 관련된 제법규를 주제로 하여 회원상대의 강습회를 수요도사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L) 학술 강습회

건축사법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비예산 사업으로(수강자 경비부담) 건축사 시험과목을 중점으로 한 학술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C) 직원 강습회

협회 업무량이 계속적으로 증대하고 복잡다기해짐에 따라 직원 자질향상과 업무 처리능력 배양이 당면 과제라고 판단됨으로 신년도에는 본부 및 각시도 지부 직원(문소 포함)에 대한 실무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출판 사업

담당직원 보강, 제작비 인상(원고료, 인쇄비등)등으로 회지 "건축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명부를 75년도와 같이 조기 발행 배부하고자 합니다.

5) 홍보 선전사업

건축설계 및 건축사 업무에 대한 정부관서, 공공단체, 일반 건축주의 인식을 제고시키고 회원 업무에 관련된 기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을 홍보사업의 지표로 삼고 협회의 공신력을 앙양시키는데 필요한 다각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6) 국제교류

75년도에 이은 제축사업으로서 76년도 2, 3월경 동남아 건축계 시찰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위시하여 외국 건축단체등과의 자료 교환등을 활발히 전개하고자 하며 특히 회원 해외진출이 법적인 면에서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가칭 "건설수출진흥법"에 건축설계도 포함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7) 협회상 시상

75년도 처음 실시한 협회상 제도를 연례행사화 하기 위하여 76년도에는 제 2회 협회상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8. 기타

75년도 사업계획중 매듭을 짓지 못했거나 뒷처리를 해야 할 사업의 완결 및 협회의 상례적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 하고자 합니다.

2. 사업계획(안)

사업명	세부계획	수행방법	시행시기
조사연구	1)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기획위원, 지도위원 및 기타 권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계획안을 작성	76년 9월말까지 완성하여 정기총회의 결의를 얻어 77년도부터 시행
	2) 각시도의 건축행정 실태조사 및 시정건의	1) 각시도 지부 담당으로 해당시도의 건축행정 실태를 조사 2) 각시도 지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에게 위촉 통일된 안을 작성 관계당국에 건의	1) 76년 4월말까지 각시도 지부의 조사완결 2) 76년 6월말까지 통일된 안을 완성 건의
	3) 표준설계도서활용확대에 대한 대책	국내외의 제작료 수집 분석코장단점을 적시 관계 당국에 제보	76년 8월말까지 완성
	4) 예산회계법시행령등 개정건의	구체적인 자료수집코 건의서 작성	76년 4월말까지 완성
	4) 관계법령의 연구	1) 건축사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작성 건의 2) 기타 관련법규에 대한 연구	건축사법 및 건축법에 관한 사항은 6월말까지 완성함. 기타 관련법규에 대한 연구는 76년말까지 계속함

	6) 회원카드 정리	카드 양식을 새로 제정코 각 시도 지부를 통해 각자가 해당 사항을 기록 제출토록 함.	76년 5월 말까지 완결
지도사업	1) 서정채신 업무 강화	1) 각 시도 지부에 대한 수시 지도 및 월예보고의 철저한 이행 2) 지부 임직원 및 분소장과 관계도 및 월예보고의 철저한 이행	76년 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2) 설계지침서 및 건축통계집 발행	2) 지부 임직원 및 분소장과 관계당국자 초청 세미나 개최 권위자에게 원고청탁 및 통계자료 수집으로 단행본을 전국 회원에게 무료배부	76년 9월 말 발행
	3) 건축법 문답지 발행	단행본으로 발행 전국 회원에게 배부	76년 11월 말 발행
	4) 재소사건의 신속 처리	윤리위원회를 매 2개월마다 개최	연간
	5) 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업무연구위원회를 개편하여 기술연구위원회를 설치코 기술개발 및 각 시도 지부의 도시의 심의업무를 지도	연간
교육훈련사업	1) 회원 강습회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등지에서 강습회를 개최	76년 6월 ~ 7월간
	2) 학술 강습회	수강 신청자의 자비 부담으로 시험과목을 중점으로 한 강습회 개최	76년 하반기중
	3) 직원 강습회	강사 초청하여 경리, 세무 관계법규 및 일반회무 처리에 대한 강습회 개최	76년 2월
출판사업	1) 회지발간 2) 회원명부 발행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발행 76년 1월 말 기준의 회원명부 발행	76년 1월 말 원고수집코 3월 중 발행 배부
홍보선전사업	1) 간담회	회원 업무에 관련이 있는 관계 당국자 언론인 회원등 초청코 간담회 3회 개최	상반기중 1회 하반기중 2회
	2) 매스컴을 통한 P. R 활동	회원 업무에 관련된 사항등을 P. R	수시
국제교류	1) 동남아 시찰단 파견 2) 외국 관계 단체와의 자료교환	회원들로 동남아 시찰단을 구성 파견 외국 건축관계단체와 연락관계 자료등을 교환	76년 2월 ~ 3월 수시
기 타		75년도 사업중 완결되지 않았거나 사후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 짓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	

國務總理指示第16號에 對한 陳情書

維新課業 完遂를 爲해 盡力하시는 貴下의 勞若에 對하여 深甚한 敬意를 表하옵고 1975. 11. 3字 國務總理 指示 第16號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陳情하오니 早速히 善處하여 주시기를 仰願하나이다.

1. 陳情의 要旨

建築設計分野는 國家技術資格法에 規定한 技術種目이 아니고, 또한 技術用役育成法에 規定한 對象業種이 아니므로 國務總理指示第16號와는 全혀 無關한 事項임을 示達하시어 建築設計 用役 發注에 混線을 惹起하지 않도록 時急히 措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陳情의 事由

(1) 傳聞한 바에 依하면 政府에서는 技術用役業體의 重點育成策의 一環으로 1975. 11. 13字 國務總理 指示 第16號로 政府의 各部處,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傘下 團體에서 發注하는 用役費 500萬원 以上の 土木 建設分野 技術用役은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에 化工部分은 「코리어 엔지니어링」에 各各 委囑하도록 示達하였다는바,

上記한 國務總理 指示 根據를 最近政府의 一部 部處에서는 建築設計分野도 이 指示와 關聯시켜 本協會 會員 (建築士法에 依據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建築士의 免許를 받아 地方長官에게 事務所 開設登錄을 畢한 建築士)에게 發注하는 것을 拒否하며 一대 混線을 빚고 있어 本協會 會員 活動에 深刻한 打擊을 加하고 時急한 是正을 要하고 있습니다.

(2) 建築設計는 單純한 技術이 아니라 建築士의 經驗과 個性에 따라 創作되는 造形藝術分野라는 것이 認定되어 1974年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制定當時 오랜 論難 끝에 同法의 技術種目에서 除外되었고 이에 따라 技術用役育成法에서도 建築設計는 對象業種에서 除外되고 있습니다.

(3) 前 2項의 事由로 미루어 볼때에도 國務總理指示 第16號에서 規定한 土木, 建設은 建築設計는 包含되지 않은 土木, 建設分野임이 明白함에도 不拘하고 一部官署에서 國務總理 指示內容을 擴大 解析하여 建築設計分野까지 適用하고 있음은 全的으로 不當한 것이라고 思料됩니다.

3. 關係 法條文

技術用役育成法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技術用役(以下 “用役”이라 한다)이라 함은 他人의 委託에 依하여 高度의 科學技術을 應用하여 事業 및 施設物의 計劃·研究·設計(建築物은 除外)·分析·調査·購買·調達·試驗·監理(建築物은 除外)·試運轉·評價·諮問·指導·其他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用役業이라 함은 前號의 用役을 營業의 目的으로 行하는 것을 말한다.
3. 用役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依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登錄을 받아 用役業을 行하는 者를 말한다.

建築法中改正法律

建築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空地”라 함은 하나의 建築物 또는 하나의 建築物과 이에 附屬되는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를 말한다. 다만, 共同住宅과 工場에 있어서는 運營上 또는 用途上 不可分の 關係에 있는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範圍를 말한다.

第2條第3號 중 “旅館·호텔”을 “宿泊業用建築物”로 한다.

第2條第5號 중 “地表”를 “地表面”으로 한다.

第2條第11號 중 “不燃性的 材料”을 “不燃性的 材料로서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에 適合한 것”으로 한다.

第2條第1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大修繕”이라 함은 建築物의 主要構造部에 대한 修繕 또는 變更으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第14號를 削除한다.

第2條第1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可能한 幅 4미터 이상의 道路(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의 道路)로서 다음에 揭記하는 것의 하나에 該當하는 도로 또는 그 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都市計画法·道路法·私道法 기타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것.

나. 建築許可時 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 郡守가 그 位置를 指定한 道路

第2條第19號·第21號 및 第23號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각각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3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第3章 내지 第5章의 規定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都市計畵區域 이외의 區域과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를 제외한 區域에서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③ 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本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邑·面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5條 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하고, “增築 또는 改築”을 “增築·改築 또는 大修繕”으로 하며, 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都市計畵區域,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聚落地區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區域안에 있어서의 建築物

第5條에 第2項 내지 第4項을 各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② 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接受한 때에는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建築物臺帳에 이를 記載하고 保管하여야 한다.

- ③ 建築主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工事を 함에 있어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變更은 이를 許可 또는 申告없이 할 수 있다.

- ④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用途·規模·構造의 建築物 또는 設備를 가진 建築物의 建築(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規模 이하의 增築·改築을 除外한다)을 許可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6條第1項 및 第2項 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各各 “또는 大修繕”으로 하고, 同條第3項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하며, 同條에 第7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 ⑦ 建築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違反事項을 報告한 工事監理者에게 이로 인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의 指定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監理에 대한 報酬의 支給을 拒否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不利益도 주어서는 아니된다.

第7條第1項 중 “着手하거나 完了한 때”를 “着手한 때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第8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 및 承認을 包含한다)를 받거나 申告를 한 建築物의 建築工事を 完了한 때”로 하고, “前條第2項”을 “第6條第2項”으로 한다.

第7條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3項 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9條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條의 2 (土地의 各部分에 대한 整理 등) ① 土地를 造成하거나 建築工事に 隨伴하여 土地를 굴착한 者는 當該 굴착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危險發生의 防止, 環境의 保存 기타 필요한 整理를 하여야 한다.

- ② 工場의 建築主는 그 空地 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面積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하여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따라 公害防止 및 造景을 위한 植樹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③ 市長·郡守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違

反한 者에 대하여 그 義務履行에 필요한 措置를 命하고 그 措置에 응할 때까지 第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를 拒否할 수 있다.

第10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第5條第1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大修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構造의 安全을 確認하여야 한다.

第11條第2項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한 補強을 함으로써 그 構造의 安全이 確認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12條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17條第2號 및 第3號중 “旅館·호텔”을 각각 “宿泊業用 建築物”로 한다.

第18條第1項 중 “旅館”을 “宿泊業用 建築物”으로 하고, 同條 第3項 중 “前2項”을 “第1項 및 第2項”으로 한다.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 (住宅의 居室 設置) 住宅의 居室을 地表面 이하에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換氣 기타 衛生上 支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20條第2項 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2條의 2第1項 後段 중 “前項”을 “前段”으로 하고, 同條 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2條의 3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3條중 “第7條의 2에 規定된”을 削除한다.

第23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3條의 4 (建築物에 있어서의 熱損失 防犯) 建築物을 建築할 때에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止에 따라 熱의 損失을 防止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4條중 “階段”을 “開口部 階段”으로 한다.

第25條중 “建築材料의 品質은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에 適合한 것이어야 하되.”를 “建築材料는 工業標準化法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表示品으로 하되.”로 하고,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檢定基準에 適合한 것이어야 한다”를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檢定基準에 適合하다고 建設部長官이 指定한 것이어야 한다”로 한다.

第26條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27條第2項중 “第23條의 規定에 의한”을 “第7條의 2에 規定된”으로 한다.

第30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築線은 道路의 境界線으로 한다. 다만, 第2條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所要幅에 未達되는 幅의 道路인 경우에는 그 中心線으로부터 당해 所要幅

의 2分の1에 相當하는 水平距離를 後退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되, 당해 道路의 反對側에 傾斜地·河川·鐵道 등 線路敷地 기타 이와 類似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 등이 있는 側道路 境界線에서 所要幅에 相當하는 不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建築線으로 하며,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

第30條第3項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32條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公園境域 또는 그 豫定地”를 “公園 遊園地의 境域 또는 그 豫定地”로 하며 “公園 目的”을 “公園 또는 遊園地의 目的”으로 한다.

第33條의 2第3項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한다.

第33條의 3第1項 및 第2項중 “前條第2項”을 각각 “第33條의 2第2項”으로 하고, 同條 第3項중 “前項”을 “第2項”으로 하며, 同條 第4項중 “前項”을 “第3項”으로 하고, 同條 第5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建築 및 特定街区 整備地区내의 國公有地에 관하여는 都市計画法 第24條 내지 第28條·第33條 내지 第53條·第82條 및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당해 地域내의 土地(公共施設用地를 제외한다) 全部가 1人의 所有인 경우에는 都市計画法 第34條·第39條 내지 第44條의 規定을 準用하지 아니한다.

第4章에 第38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8條 (聚落地区내에서의 建築物)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区내에 있어서의 建築物의 建築制限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39條第1項 本文중 “建築面積” 다음에 “(垆地에 2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를 插入한다.

第39條第1項 第3號중 “準住居地域”을 削除한다.

第39條第1項 第4號중 “商業地域” 다음에 “과 準住居地域”을 插入한다.

第39條第1項 第5號를 削除한다.

第39條第1項 第6號중 “商業地域” 다음에 “또는 準住居地域”을 插入하고 “垆地로서 市長·郡守가 指定하는 區域内에서는”을 “垆地에서는”으로 한다.

第39條第2項중 “建築面積의 垆地面積에 대한 比率을 前項에”를 “建蔽率 第1項에”로 한다.

第39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1項 第4號·第6號의 規定 및 第2項의 規定(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蔽率을 10分의 6 미만으로 制限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住居用建築物과 工業用建築物의 建蔽率은 10分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第40條 第1項중 “建築延面積”을 “延面積(空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延面積의 합計로 한다)”로 한다.

第5章에 第41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1條의 2 (空地안의 空地)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線 및 隣接 空地境界線으로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距離를 띄어 建築하여야 한다.

第42條 第1項 第1號중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42條 第1項 第2號 및 第4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保安上 또는 衛生上 顯著히 有害하다고 인정될 때

4. 第5條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工事に 着手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竣工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第42條 第2項중 “前項 第1號”를 “第1項 第1號”로 하고, 同條 第5項중 “前項”을 “第4項”으로 한다.

第42條의 2 第1項중 “前條 第1項 第1號”를 “第42條 第1項 第1號”로 하고, 同條 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43條 第1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45條 第1項에 第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4. 第42條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의 取消措置와 建築物의 撤去·改築 또는 大修繕의 命令

第47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는 第2章 내지 第5章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2條중 “建築物 또는 空地”를 “建築物 및 空地”로 하고, 同條에 但書を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空地가 道路에 沿하여 터모양으로 指定된 商業地域·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와, 기타의 地域·地區(防火地區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建築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이들 地域 또는 地區에 建築할 때에는 그 建築物 및 空地의 全部에 대하여 商業地域·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내의 建築物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53條의 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3條의 4 (同前) 第6條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建築物에 附隨되는 液狀廢棄物 淨化槽에 관한 設計의 경우에는 汚物清掃法 第14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53條의 6 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第54條중 “第5條·第39條·第40條 또는 第41條”를 “第5條 第1項 本文·第39條 第40條·第41條 또는 第41條의 2”로 하고,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55條 第1號중 “第39條 第1項”을 “第39條 第1項 및 第3項”으로 한다.

第55條 第2號중 “第22條 第2項” 다음에 “·第22條의 2·第22條의 3”을, “第23條의 3 第1項” 다음에 “·第23條의 4”를, “第36條 第2項” 다음에 “第38條”를 각각 插入한다.

第55條 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第6條 第2項·第6項·第7項·第7條 3項 第7條의 2·第9條의 2 第1項·第2項·第29條 또는 第39條의 2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第55條 第5號중 “策42條 第1項의 規定”을 “第9條의 2 第3項 및 第42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한다.

第55條 第6號중 “第5條·第39條·第40條 또는 第41條”를 “第5條 第1項 本文·第39條·第40條·第41條 또는 第41條의 2”로 하고, “大修繕 또는 重要變更”을 “또는 大修繕”으로 한다.

第56條중 “·第53條의 2 第2項 但書의 規定에 違反한 工事施工者 및 工事監理者” 및 “·第29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57條중 “前3條”를 “第54條 내지 第56條의”로 한다.

第58條를 削除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1月이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国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指定된 聚落地區내에서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條例의 施行日로부터 施行한다.

② (既存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第2條 第15號의 規定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은 同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道路로 본다.

③ (既存空地의 分割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當時에 2 이상의 既存建築物(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는 建築物을 제외한다)이 있는 空地面積의 最少限度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된 建築法 規定의 개요

李 文 輔

建築法은 1962年 制定된 이래, 이번 1975年 12月 31日의 改正으로서 5번째의 改正을 보게 되었다. 改正된 규정은 상당히 많은 조항에 걸쳐 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그 대강만을 살펴보는 셈이 된다. 이번 建築法中改正法律은 公布(1975. 12. 31) 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母法 改正으로 인한 建築法施行令 改正令은 그때까지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母法改正과는 관계없이 지금까지 不合理하다고 지적되어 온 규정도 그 改正令에 포함되리라 기대되므로 注目되는 바 크다.

1. 개정된 用語의 定義

垆地(法才 2條才 1号 改正)

1 建築物 1垆地主義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종전에는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一團의 土地는 그 建築物들이 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에 있을 경우만 하나의 垆地로 보았다. 물론 用途上 可分의 관계에 있으면 2 이상의 垆地로 나누어야 한다. 그 用途上 不可分의 관계의 해석에 혼선을 빚는 예가 있어 왔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그 표현을 “하나의 建築物과 이에 부속되는 建築物”로 바뀌었다. 즉 一團의 土地안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 그 建築物사이에 부속관계가 성립하면 그 土地는 하나의 垆地로 보며, 그 부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2 이상의 垆地로 구분하여 이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아파트 團地 등에 있어서 그 여러棟의 아파트 建築物 사이에는 부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各棟 마다의 垆地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不合理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은 例外規定이 신설되었다.

즉 “共同住宅과 工場에 있어서는 運營上 또는 用途上 不可分(구분할 수 없는)의 관계에 있는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一團의 土地의 범위”를 垆地라 한다.

特殊建築物(法才 2條才 3改正)

學校 등 26개 종류의 用途를 열거하고, 이와같은 용도에 쓰이는 建築物을 특수건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26개 용도중 “旅館·호텔”을 “宿泊業用 建築物”로 바꾸어 표현하였다. 따라서 이하 各條에서도 모두 통일하고 있다.

이와 包括的 概念으로 表現한다면, 特殊建築物로 揭記된 다른 用途(예를 들면 劇場·映画館·集會場·觀覽場... 등)의 것도 그와같은 방식으로 개정하여 통일을 기하였다면 더욱 簡明하게 되었을 것이다.

地下層(法才 2條才 5号 改正)

“地表”를 “地表面”으로 개정. 해석상 혼란은 없을 것이다.

不燃材料(法才 2條才 11号 改正)

不燃材料는 鐵鋼·콘크리트·벽돌·기와... 등등인 것은 종전과 같으나, “기타”이와 유사한 不燃性의 材料는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改正條文은 콘크리트·벽돌·기와... 등 열거한 材料까지도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해석되게 되어 있는 것은 잘못 표현으로 생각된다.

大修繕(法才 2條才 13号 改正)

종전에는 “大修繕”과 “重要變更”은 각각 별개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 2가지가 “大修繕”의 하나로 통합되고 “重要變更”은 削除되었다. 그리고 大修繕의 내용은 大統領令에 그 기준을 위임하고 있다.

종전에는 建築法 運營상 大修繕과 重要變更은 制限上에 다른바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별개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道路(法才2條才15号改正)

道路는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道路이어야 한다. 그러나 막다른 道路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構造 및 幅을 가진것이어야 한다. 즉 대통령령의 規定에 따라 막다른 도로에 한하여 폭 4m 미만의 도로가 허용될 수 있다. 종전에는 폭 4m 미만의 것은 市長·郡守가 지정 하여야 한다는것이 要件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서 上揭 大統領令의 規定에 적합하면 市長·郡守의 指定節次 없이 그대로 도로가 된다. 따라서 4m 미만의 폭을 가진 도로의 지정은 市長·郡守가 임의로 할 수 없게 된것이다.

現存道路는 물론 예정도로도 道路로 정의될 수 있음은 종전과 같으나, 本規定 冒頭에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추가되었으므로, “道路의 新設 또는 변경에 관한 告示”는 道路의 充分條件이 되지 못한다.

기타 建築主·設計圖書·工事施工者의 用語에 대한 改正이 있으나 “主要變更”의 用語가 削除되므로 인한字句修正이다.

2. 本法 才3章 내지 才5章의 規定의 適用區域이 확대되었다. (法才3條才2項改正)

소위 集團規定이라 하는 法才3章 내지 才5章의 規定은 종전에 다음 區域에 한하여 적용되어왔다.

① 都市計劃區域

②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區域

(1) 都市計劃區域이 아닌 市·邑의 區域

(2) 高速國道 및 一般國道の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m 이내의 구역

(3)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基準地價告示對象地域으로 지정 공고된 구역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다음 구역이 그 適用區域으로 추가되었다.

③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區의 구역

여기의 工業地域과 聚落地區는 都市計劃法 및 建築法에 의한것이 아니고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區域 外에서 지정되는것임에 주의를 요한다.

國土利用管理法은 國土建設綜合計劃에 따른 土地利用計劃의 立案 및 決定과 그 施行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는데, 그 法에 의한 土地利用計劃은 他法에 의한 土地의 利用에 관한 計劃의 基本이 된다.

여기의 土地利用計劃은 基本計劃과 施行計劃으로 구분된다.

基本計劃에는 다음의 用途地域의 지정에 관한 計劃을 정한다. 基本計劃은 建設部長官이 立案하고, 國土建設綜合計劃 審議會와 國務會議의 심의를 거쳐 建設部長官이 告示함으로써 결정된다.

都市地域

農業地域

山林地域

工業地域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

留保地域

施行計劃에는 基本計劃에서 정하여진 用途地域別로 그 地域안의 土地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하여 다음 用途地區의 指定에 관한 計劃을 정한다. 施行計劃은 道知事가 立案하되 建設部長官의 調整을 받아야 하며 道建設綜合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道知事가 告示함으로써 결정된다.

農業地域

① 耕作地區

② 聚落地區：農漁民의 集團의 生活根據地로서 開發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區

山林地域

① 山林保全地區

② 開墾促進地區

工業地域

① 工業專用地區：주로 重化學工業 기타의 工場用地로 利用되고 있거나 利用될 地區

② 準工業地區：公害의 위험이 적은 工場用地와 그 從事者 및 이에 부수되는 業에 종사하는 者의 住居用으로 利用되고 있거나 利用될 地區

自然 및

文化財保全地域

① 自然環境保全地區

④ 海岸保全地區

② 文化財保全地區

⑤ 水資源保全地區

③ 觀光休養地區

이상의 用途地域 및 用途地区 안에서의 建築 등 行為의 制限에 관하여는 国土利用管理法 및 同施行令 참조.

3. 郡守의 權限도 邑·面長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法才 4 條才 3 項新設)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 建設部長官은 서울市長, 釜山市長,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서울市長·釜山市長·區가 설치된 市의 市長은 區庁長에게 위임할 수 있었다.

이번 改正으로, 郡守도 그의 權限의 一部를 邑·面長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

4. 建築許可·申告制度의 一部가 개정되었다. (法才 5 條 改正)

① 建築許可 등에 있어서 国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工業地域 및 聚落地区 안에 있어서의 建築物은 都市計劃區域 안의 건축물과 同一하게 취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음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建築許可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② 종전에는 연면적 10m² 이내의 増築·改築만이 申告對象 이었다. 여기에 연면적 10m² 이내의 大修繕도 申告對象으로 추가되었다. (단 防火地区外에 한한다)

5. 建築物台帳登載制度를 신설하였다. (法才 5 條才 2 項新設)

새로이 建築物台帳 登載制度를 신설하여, 市長·郡守는 建築許可處分이나 申告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記載하고 保管하게 되었다.

6. 경미한 設計變更 등은 許可·申告不要 (法才 5 條才 3 項新設)

建築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하고 建築工事を 함에 있어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 (建築法規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간막이壁의 位置變更과 같이 構造上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으로 추측)은 許可 또는 申告없이 할 수 있게 明示하였다.

7. 大規模 建築物 등의 許可에는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요한다. (法才 5 條才 4 項新設)

市長·郡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用途·規模·構造의 건축물 또는 設備를 가진 건축물을 許可할 때에는 미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하도록 되었다.

8. 工事監理者에게 不利益을 줄 수 없도록 補強되었다. (法才 6 條才 7 項新設)

工事監理者가 工事監理中에 市長·郡守에게 工事의 違法事項報告를 하였다는 理由로 建築主가 工事監理者指定의 取消·變更, 監理報酬支給의 拒否·遲延, 기타 不利益을 주는 行위를 할 수 없도록 이를 禁止하였다. 이 規定에 위반한 建築主에 대하여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할 수 있도록 罰則規定도 아울러 신설하였다.

9. 公用建築物도 着工申告 등의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였다. (法才 7 條 改正)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建築物을 건축하고자 할 때, 관할 市長·郡守와 協議하거나 承認을 받아야 함은 종전과 같다. 그후에 着工에서부터 使用承認에 이르는 과정에서 各 段階마다 일반 건축물과 같은 申告檢査節次 등을 밟아야 하는데 해석상 혼란이 있었다. 이번 改正으로 그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였다.

10. 土地掘鑿部分에 대한 整理의 義務者 (法才 9 條의 2 才 1 項 改正)

垆地造成 기타 建築工事に 수반하여 土地를 굴착한 경우에, 그 굴착부분에 대한 整理는 建築主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垆地造成 그것은 建築工事が 아니기 때문에 그 起業主는 建築主가 아니다. 이번 개정에서 整理義務者는 “土地를 굴착한 者”로 하였다.

11. 工場建築에 있어서 公害防止와 造景을 위한 植樹 (法才 9 條의 2 才 2 項新設)

工場の 建築主는 그 垆地안에 公害防止 및 造景을 위한 植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었다. 植樹 등의 面積基準은 대통령령에, 植樹 등의 기타 基準은 建設部令에 위임되었다.

12. 構造 安全의 確認의 基準 (法才10條才 2項改正)

일정한 범위 (그 범위는 종전과 같다)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安全을 확인하여야 함은 종전과 같다.
그런데 종전에는 “建築”할 때에만 요구되었으나, 이번에는 “建築하거나 大修繕”할 때에도 필요조건으로 되었다.
그리고 構造安全의 확인의 基準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13. 一定높이 이상의 組積造에 대한 例外規定 (法才11條才 2項改正)

建築物의 主要構造部가 石造·벽돌造·콘크리트블록造인 경우에는 높이 13m 이상 또는 처마높이 9m 이상을 원칙적으로 禁止하는것은 종전과 같다. 그러나 但書規定에 의하여 허용될 수도 있는데, 그 조건 즉 “특별한 補強을 함으로써 그 構造의 安全이 확인된 때”의 구체적 基準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14. 住宅 居室의 위치제한의 철폐 (法才19條 改正)

종전에는 住宅의 居室을 地下層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금지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住宅의 居室을 地表面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衛生上 支障이 없도록”할것을 규정하였다.

15. 避難施設 및 消火設備 등 규정의 適用範圍의 擴大 (法才23條改正)

종전에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되, 그 적용대상이 되는 建築物은 法才7條의 2에 규정된 建築物 즉,

- ① 特殊建築物
- ② 3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 ③ 延面積 1000m² 이상의 건축물로 한정 하였었다.

이번 개정에서 그 限定을 철폐하였으므로 用途, 層數, 延面積 여하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하였다.

16. 熱損失防止의 조치 (法才23條의 4 新設)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熱損失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새로이 규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大統領令에 위임되었다.

17. 開口部의 構造基準을 규정하게 되었다 (法才24條改正)

건축물의 構造 등에 관하여 필요한 技術的 基準은 대체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왔는데, 여기에 開口部를 추가하여 규정하였다.

18. 중요한 建築材料는 KS 表示品 또는 指定品을 사용하게 되었다 (法才25條改正)

건축물의 기초·주요구조부 기타 安全上 防火上 또는 위생상 중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鋼材·시멘트 기타의 建築材料에 있어서, 종전에는 KS에 적합한 品質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改正은 그品質을 규정하지 않고, 그 建築材料는 韓國工業規格 表示品으로 아주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국공업규격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建築材料에 대하여는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檢定基準에 적합 (여기까지는 종전과 같다)할 뿐 아니라 適合하다고 建設部長官이 指定한것이어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19. 막다른 道路인 경우의 建築線 등이 개정되었다. (法才30條才 1項改正)

종전에 4m 미만의 道路인 경우, 그 建築線은 道路中心線으로부터 2m 후퇴한 線으로 하였다. 따라서 도로의 所要幅이 6m 이상인 경우에도 2m를 후퇴하므로 그 所要幅을 확보할 수 없었다. (막다른 道路의 所要幅은 그 길이에 따라 2m, 3m, 4m 또는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建築法施行令 才38條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와같은 후퇴거리를 絶對값으로 규정할것이 아니라 比例값으로 정하는것이 타당하게 된다.

이번 改正에서 그 후퇴거리를 “당해 所要幅의 1/2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로, 당해 道路의 반대측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所要幅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로 바꾸어졌다.

이렇게 개정하였지만 “당해 道路의 반대측에 傾斜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傾斜地 등이 있는 側 道路境界線에서 所要幅에 상당하는 A 水平距離의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라고 한 부분에 있

어서 다만 “당해 道路의 반대측에 傾斜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라 하였으므로 그 傾斜地 등이 道路에 接하고 있지 않는 경우 道路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所要幅에 상당하는 水平距離를 후퇴하여야 한다고 해석될 우려가 많다. 그리고 위에서 ㉔ 이후의 부분은 “水平距離를 후퇴한 線을 建築線으로 하며……”라고 하여야 뜻이 통한다.

그리고 개정된 才30條 才1項의 末尾에 “道路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線을 建築線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모퉁이 垜地(街角)에 있어서 建築線을 垜地 안쪽에 정하고자 하는 뜻으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 “道路의 모퉁이”라고 하면 혼란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모퉁이라는 것은 모(角)의 바깥 언저리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20. 公園·遊園地 境域内에서의 建築物의 用途制限 등 (法才32條才3項 改正)

중전에는 “公園境域 또는 그 予定地内에서는 公園目的에 적합한 건축물만을 허용하였으며, 이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에서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설치하는 조건을 전제하고 있다.

이번 改正으로 “遊園地境域 또는 그 予定地内”에서도 公園 및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建築物만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앞으로 있을 대통령령의 규정이 주목된다.

21. 特定街区整備地区에 관한 一部規定이 개정되었다. (法才33條의 3才5項 改正)

特定街区整備地区 안에 있는 國公有地는 特定街区整備事業의 目的 이외의 目的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讓渡할 수 없도록 都市計画法 才82條의 規定을 準用하게 보강하였다.

그리고 同地区의 土地 全部가 1人의 소유인 경우에는 再開發事業節次中 實施計劃案의 公告, 意見聽取, 管理処分計劃의 作成 등 節次는 무의미한 것이며 建築期間中 遲延시키므로 이를 準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22. 聚落地区内에서의 建築物의 建築制限 (法才38條 新設)

本稿 2項에서 설명된 聚落地区内에서의 建築物의 建築制限에 대하여는 다른地区和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에 의하도록 위임되었다.

23. 建蔽率에 관한 규정이 一部 改正되었다 (法才39條 改正)

建蔽率 산정에 있어서 建築面積은 하나의 垜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建築面積의 合計로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나 아직까지 이법이나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建蔽率에 관하여 개정된 것은

① 準住居地域内에서는 7/10(중전은 6/10)로 완화되었다. 기타의 地域은 중전과 같다.

② 商業地域이 아닌 防火地区内에 있는 建築物로서 그 主要構造部가 耐火構造인 것은 建蔽率이 완화되던 중전의 규정은 削除되었다.

③ 建蔽率 制限에 관한 限, 準住居地域은 商業地域과 同一하게 規制되었다.

그리고, 商業地域 또는 準住居地域内的 防火地区内에 있는 建築物로서 耐火構造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街区의 모퉁이에 있는 垜地 및 이에 準하는 垜地에서는 9/10로 제한되는 중전과 같으나, 市長·郡守가 그 垜地를 指定하는 節次는 削除되었다.

④ 建蔽率에 관하여 개정함에 가장 두드러진 特徵은, 建築物의 用途에 따라 建蔽率이 제한되던 점이다. 즉 住居用 建築物과 工業用 建築物의 建蔽率은 6/10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建蔽率을 6/10 미만으로 제한하여 정한 경우는 제외되는데 — 그것은 現行地域으로 보면, 住居專用地域(5/10)과 綠地地域(2/10), 그리고 風致地区(2/10~4/10)가 있다.

24. 容積率 制限에 있어서 연면적의 算定 (法才40條才1項 改正)

容積率 산정에 있어서 建築物의 延面積은 하나의 垜地에 2 이상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延面積의 合計로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25. 垜地 안의 空地 (法才41條의 2 新設)

건축물을 建築하고자 할 때에는 建築線 및 隣接垜地境界線으로 부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一定한 距離를 더어 建築하도록 새로이 규정이 신설되었다. 앞으로 이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의 규정이 주목된다.

개정된 建蔽率

地 域	原 則	防火地区内 (耐火構造인때)		住居用建築物・工業用建築物 地域・地区에 관계없음
		一 般	街区의 모퉁이	
住居專用地域	5/10	左欄原則과 같음		5/10
住居 地域	6/10			6/10
準住居地域	7/10	8/10	9/10	6/10
商業 地域	7/10	8/10	9/10	6/10
準工業地域	6/10	左欄原則과 같음		6/10
工業 地域	6/10			6/10
專用工業地域	6/10			6/10
絲地 地域	2/10			2/10
地域의 指定이 없는 区域	6/10			6/10

※ 地区 등에 대하여는 대봉령령에 따른다.

26. 違反建築物등에 대한 行政措置條件의 一部 緩和 (法才42條才1項才2号 改正)

市長・郡守가 許可取消・効力停止… 工事中止・撤去・改築・増築・修繕… 使用禁止 또는 使用制限 등 필요한 조치를 命할 수 있는 경우 가운데 “保安上 또는 衛生上 有害하다고 認定될 때”가 있었다. 이 有害가 경미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면 無理가 뒤따를 수 있다. 이번 개정에 의하여 “顯著히 有害하다고 認定될 때”로 개정되었다.

27. 위의 行政措置 등의 경우 上部官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法才45條才1項才4号 신설)

위 26項에 의한 建築許可의 取消措置와 建築物의 撤去・改築 또는 大修繕의 命令에 대하여는, 서울市長, 釜山市長은 建設部長官의, 市長・郡守는 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되었다.

28. 着工前 建築許可의 有効期間이 1年으로 延長되었다 (法才42條才1項才4号 改正)

종전에는, 建築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6月 이내에 工事に 着手하지 아니하면 그 許可를 취소할 수 있었는데 그 期間 6月을 1年으로 개정하였다.

29. 一部 仮設建築物은 法才2章 내지 才5章은 適用하지 않는다 (法才47條才3項 新設)

法第47條才2項의 규정에 의하여 災害復旧用 興行・展覽會・工事用 仮設建築物 기타 이와 유사한 用途에 供하는 臨時的인 仮設建築物로서 建設部令으로 정하는 建築物을 築造하고자 할 때에는 그 建築物의 存置期間을 정하여 着工 5日전에 市長・郡守에게 申告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한 仮設建築物의 建築에 있어서는 第2章 내지 第5章(이들 章에 속하는 규정은 소위 個體規定과 集團規定이며, 本稿에서는 7항 내지 25항이 그에 속한다)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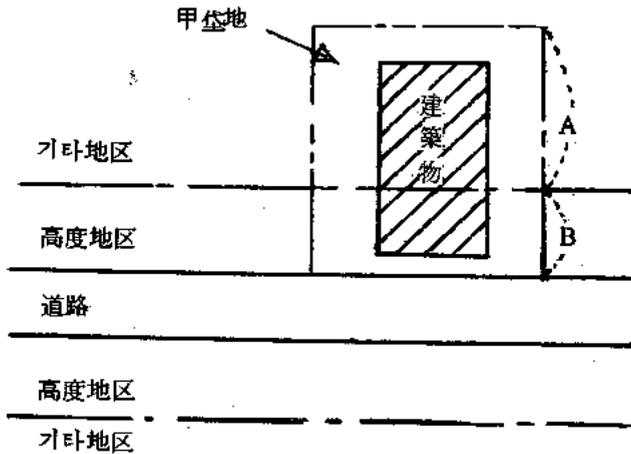
30. 垜地가 区域, 地域 또는 地区의 内外에 걸칠 때의 措置 (法才52條 但書 新設)

法第52條 本文의 규정에 의하여 垜地가 이법에 의하여 規制되는 区域・地域 또는 地区(防火地区는 별도, 이하 같다) 内外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建築物 또는 垜地의 全部에 대하여 그 垜地의 過半이 속하는 区域・地域 또는 地区내의 建築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번 改正으로 다음과 같은 例外規定이 신설되었다.

垜地가 道路에 沿하여 卍모양으로 指定된 商業地域・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와, 기타의 地域・地区에 걸치는 경우에 建築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이들 地域 또는 地区에 建築할 때에는 그 建築物 및 垜地의 全部에 대하여 商業地域, 美觀地區 또는 高度地區内의 建築物에 관한 규정을 適用한다.

그림과 같이 道路에 沿하여 卍모양으로 高度地區가 지정되어 있고 甲垜地의 過半이 기타 地区에 속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종전 규정대로 따른다면 甲垜地는 卍반이 기타 地区이므로 甲垜地와 建築物 全部에 대하여 기타 地区의 建築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경우 그 高度 地区 指定의 의의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甲垜地와 건축물 전부에 대하여 高度地區의 建築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甲垆地の ○부분이 기타地区内に 깊숙히 延長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되어도 종울런지 또 計劃的으로 垆地를 延長하여 高度地区에 관한 제한을 받게할 우려가 없지 않다.

31. 汚物淨化槽의 設計는 建築士가 할 수 있다 (法第 53條의 4 新設)

汚物清掃法 第 4 條의 規定에 의하면 液狀廢棄物淨化槽의 設計·施工 또는 그 清掃를 業으로 하는 者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釜山市 또는 市·郡에 登錄하여야 한다.

液狀廢棄物淨化槽라 함은 沈澱·好氣性 또는 嫌氣性 分解 등의 方法에 의하여 糞尿 또는 下水를 安全하게 처리하는 淨化施設을 말하는데, (同法第 2 條 第 4 号) 보통 建築物에 設置되는 汚物淨化槽이다.

建築士는 建築物에 부수되는 汚物淨化槽를 市·郡에 登錄하지 않고 設計를 할 수 있게 개정하였다.

32. 罰則規定이 補完·削除되었다 (法第 54 條~57 條改正, 第 58 條 削除)

여러 規定이 改正됨으로써 이로 인한 罰則規定이 補完되었다. 그리고 條例에 罰則規定을 위임하였던 第 58 條가 削除되었다.

33. 既存垆地의 分割에 대한 經過措置 (附則 第 3 項)

法第 39 條의 2 의 規定에 의하면 건축물의 垆地面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建築物이 있는 垆地는 그와같은 규모의 기준에 未達되지 分割될 수 없다. 개정된 垆地의 定義(本稿 1 項中 참조)에 의하여 既存建築物의 垆地를 分割하고자 할 경우, 上揭 第 39 條의 2 의 規定에 위반될 수 있다.

따라서 經過規定에 의하여 이 法施行當時(1976. 2 月 1 日)에 2 이상의 既存建築物이 있는 垆地를 建築物 單位로 分割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上揭 第 39 條의 2 (垆地面積의 最小限度)의 規定을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34. 既存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附則 第 2 項)

이 法施行當時(1976年 2 月 1 日) 중간의 規定에 의한 道路로서, 개정된 道路의 定義(本稿 1 項中 참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適合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道路로 본다.

看板의 色彩調查研究

(18個國 22都市商街建物 Facade)

A Study of Colors in Graphics)

—Shopping Streets of 22 Cities in 18 Countries—

金 眞 一

漢陽大教授 工博.

1. 序 論

建築의 成形過程이 건축외의 문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건축재료가 自然材에서 人工材로의 전환은 특히 色彩環境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Facade는 個別創造의 舞臺이며, 都市 또는 지역수준으로서의 계획개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構造物에 주어지는 규제에서 色彩는 放任狀態로 부터 약간의 제동이 가하여 지고 있으나 試行錯誤의 단계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都市나 사회적, 공간적인 local color를 지니고 있고 일견 복잡한것 같으나 Facade의 色彩도 total的으로 보면, 어떤 生態的인 균형과 基調色을 지니고 있다. 現代文化의 80%는 色彩라고 할만큼 우리들은 色彩에 민감하면서도 色彩가 지닌 魅力케이트한 점때문에 그의 運用에는 定說이 없다. 그러나 유럽都市에서는 옛 建築物과 graphic가 共存할 수 있는 知慧를 찾았다. 이 論文은 18개國, 22개 都市에서 선정한 商街建物 Facade의 看板과 裝置物의 색채사용빈도와 配色상태를 field work를 통하여 分析한 것이다.

2. 調 査

표 1(a)의 各都市에서 筆者가 직접 현지 답사를 통하여 都心에서 가장 변화한 街路의 3~5개 block를 선정하여 계속된 view에서 Facade의 촬영을 겸한 field work를 하였다. 조된 調査는 Facade에 부착된 看板과 裝置物에 사용된 色彩의 사용빈도와 色彩配合, 그리고 이들 裝置物과 Facade와의 크기, 比例등이지만 本 論文에서는 色彩부분을 주로 다루었다.

표 1 (a) 調査都市表

都 市	調査路街	調査資料數	國 名	調査年度
1 London	Oxford Street	234	England	1972
2 London	Piccadilly Circus	63	England	1974
3 Paris	Avenue de Opéra	261	France	1974
4 Amsterdam	Kalver Street	223	Netherland	1974
5 Stockholm	Freis Streit	323	Sweden	1972
6 Wien	Karantner Strasse	217	Austria	1974
7 Rome	Via Nazional	339	Italy	1972
8 Athene	Ermou	173	Greece	1974
9 Basel	Freie	278	Switzerland	1972
10 Frankfrut	Keiser Strect	164	Germany	1974
11 Pennsylvaniam	Market Street	108	America	1974
12 Pennsylvaniam	Oxford Valy Mall	104	America	1974
13 Istanble	Rihtimcadpesi	169	Turkey	1974
14 New Delhi	Connagu Place	105	India	1974
15 Teheran	Sabzeh Meyder Bazzar	101	Iran	1974
16 Hankong	漢口路	215	Hongkong	1972
17 Bangkok	Siam Squer	102	Thailand	1972
18 Taipei	衡陽路	195	China	1972
19 Nagasaki	中央通	461	Japan	1971
20 Tokyo	銀座 4-8丁目	415	Japan	1972
21 Busan	光復洞	320	Korea	1973
22 Seoul	鍾路 1-3가	337	Korea	1970

Copenhagen에서는 계속되는 降雪로, 또 西 Berlin에서는 고무지 못한 기후때문에 촬영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몇가지 요인으로 조사된 都市間의 조사연도와 季節의 다른 점은 색채의 明度の 비교검토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色彩사용비도와 色彩의 배합경향의 調査分析에서는 色彩理論보다 色彩의 Facade와의 應用에 초점을 두었다. 色相分類에서는 Munsell System에 의하였다. 다만, 分析과정에서 Br(Brown)의 비중이 의외로 크고 뚜렷하여 이를 하나의 色相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이論文은 筆者의 계속적 調査研究인 商街景觀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표 1 (b) 色彩分布의 比率

Color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rut	Penn.	Penn. (Mall)	Istanble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White	33.1	37.0	30.6	30.5	33.3	26.2	44.8	32.4	37.0	26.2	38.7	31.0	29.7	36.7	28.4	29.6	30.7	31.1	30.3	39.1	27.7	29.5
Red	15.7	25.0	5.9	14.1	14.0	10.7	10.6	16.0	10.0	20.4	17.5	16.8	27.5	25.0	25.2	25.0	18.6	23.6	23.1	13.0	14.2	21.8
Blue	12.7	11.1	6.3	16.5	11.0	13.8	6.9	14.8	10.1	10.4	13.1	6.1	19.0	27.6	18.7	14.3	20.7	8.1	11.0	16.2	15.1	15.3
Green	2.6	3.7	1.9	3.8	3.8	3.0	3.0	2.2	5.6	3.4	3.3	8.1	2.2	0.5	2.1	4.8		4.5	4.6	1.4	16.8	8.8
Black	17.9	6.5	22.0	14.1	12.8	14.9	13.8	17.0	23.6	22.6	7.7	13.7	9.5	4.1	11.2	12.1	9.3	15.2	17.3	14.4	7.6	11.1
Yellow	13.5	7.4	18.4	7.6	17.7	19.6	9.6	5.7	10.0	9.1	3.8	9.6	7.8	4.1	9.1	10.7	17.9	13.9	7.8	5.4	7.4	10.2
Yellow Red			0.6	1.7	3.2	0.8	1.2	3.8		3.0	1.1	4.6	2.2		1.1	0.8		1.2	1.4	0.9	5.0	1.7
Brown	3.1	7.4	4.0	3.8	2.6	6.6	6.7	5.3	1.2	1.5	7.7	9.1	0.6	1.5	2.1	2.7	1.4	1.3	3.2	2.3	4.1	1.4
Green Yellow	1.1	1.9	10.1	7.2	1.1	3.6	3.0	2.2	2.4	3.4	5.5		1.1	0.5	2.1		1.4	0.9	0.4	1.4	1.5	0.2
Purple	0.3		0.2	0.7	0.5	0.8	0.4	0.6	0.1		1.6	1.0	0.4					0.2	0.9	0.9	0.6	0.1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표 2. 層別 Basement의 色率

Color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urt	Penn.	Penn. (Mall)	Istanbul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W	36.7	44.4	31.0	26.0	27.1	13.8	33.0	35.8	30.9	33.5	40.8	22.2	36.5	67.0	40.8	40.0	26.8	37.9	40.6	52.5	43.7	76.4
R	10.3	7.9	4.6	10.3	3.3	9.2	3.2	10.4	7.6	13.4	8	11.5	25.4	4.7	4.9	8.8	14.6	8.7	9.1	8.0	0.6	0.3
B	17.5	7.9	6.5	12.6	3.3	12.0	2.4	12.7	18.4	3.0	9.1	4.8	11.2	16.5	14.8	20.4	23.1	11.8	12.4	9.9	5.9	2.1
G	1.3		2.7	2.7	1.5	2.8	1.2	3.5	2.9	0.7	5.7	11.5	2.4		3.7	1.9		1.5	3.3	1.7	20.2	2.7
BK	3.0	3.2	23.0	17.0	11.1	16.6	3.2	8.7	10.4	14.0	3.4	9.6	3.6	2.4	7.4	14.4	8.5	12.8	3.3	10.8	1.6	2.4
Y	12.0	7.9	3.1	5.8	4.6	14.3	8.3	2.9	5.4	11.0	4.5	10.6	10.1	4.7	18.5	7.0	15.9	7.9	11.7	5.3	2.2	4.2
YR	2.1		0.8	0.6	2.5	0.9	0.6	6.4	0.7	3.7	1.1	3.8	3.0		2.5	0.5		3.0	4.6	4.6	5.0	1.5
BN	3.8	7.9	1.5	4.9	1.9	1.4	4.7	2.9	2.2	3.0	11.4	13.5	1.2	3.5	2.5	0.9	2.5	1.0	3.9	2.4	6.9	2.1
GY	7.7	3.2	8.4	5.8	1.2	2.8	2.4	2.3	6.8	4.9	8		2.4		4.9	1.4	2.5	4.1	3.3	1.2	2.9	0.3
P			0.4	1.3	0.3	1.4			0.7		2.3	1.0	0.6					1.0	1.3	0.2		
No basement	5.6	17.6	18.0	13.0	43.2	24.8	41.0	14.4	14.0	12.8	5.7	11.5	3.6	1.2		4.2	6.1	12.3	6.5	3.4	11.0	8.0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표 3. 하나의 層別에 쓰여진 色率

number of Color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urt	Penn.	Penn. (Mall)	Istanbul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1	12.3	20.4	19.3	14.8	28.8	24.5	38.4	13.7	14.0	10.7	8.4	7.5	5.1			9.7	8.3	11.6	3.4	8.2	8.1	12.0
2	62.9	61.0	76.8	66.9	48.4	60.9	49.1	68.6	75.3	74.2	69.0	77.4	66.0	45.9	50.7	48.8	55.0	59.9	43.5	65.3	27.2	33.8
3	22.0	16.7	3.5	15.3	19.9	9.8	11.6	15.0	8.5	14.5	19.0	11.8	25.6	45.9	43.8	31.0	30.0	21.5	35.6	21.4	38.1	36.4
4	2.6	1.9	0.4	2.6	1.6	3.6	0.6	2.0	2.0	0.6	3.6	3.3	0.7	5.5	4.1	8.0	6.7	4.6	11.7	2.0	17.0	11.2
5	0.2			0.5	1.3	1.0	0.3	0.7	0.2				2.6	2.7	1.4	2.5		2.0	4.1	3.1	7.1	5.3
6																		0.5	1.1		0.7	0.8
7																			0.6		1.8	0.5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표 4. 一色數만의 色率分布비율

Color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urt	Penn.	Penn. (Mall)	Istanbul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W	29.4	9.1	30.0	23.3	42.4	22.2	73.9	14.3	35.7	11.8	14.3	14.3										
R	17.6	81.8		6.7	22.2	4.4	4.9	23.7	8.9	23.5	42.8	28.6	37.5			28.6						
B	5.9		2.0	26.7	2.2	20.0	2.5	33.3		17.6	14.3		37.5			2.9						
G	17.6	9.1		3.3	2.2	2.2	0.8		7.1	5.9						17.1						
BK					1.1	6.7	1.6		14.3	11.8			12.5						8.5	15.8		
Y	23.6		46.0	3.3	24.4	26.7	8.2	14.3	21.5	5.9		14.3	12.5			22.9	100	59.6	15.8	12.5	30.4	60.0
YR				3.3	1.1		0.8	4.8		5.9	14.3										4.3	
BN	5.9		6.0	6.7	2.2	8.9	1.6	4.8	5.4											25.0	4.3	
GY			16.0	26.7		8.9	4.1	4.8	7.1	17.6										12.5	8.7	
P					2.2		1.6				14.3	14.2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표 5. 2色數碼의 色參配合과 比率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urt	Penn.	Penn. (Mail)	Istanbul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W	R	12.7	27.2	7.8	15.4	16.6	8.9	22.5	24.6	11.6	21.8	15.5	16.7	35.0	38.2	19.9	34.1	18.2	40.5	30.5	25.0	3.9	16.5
W	B	13.4	24.2	4.9	23.0	9.3	16.5	12.2	11.4	17.3	9.3	19.0	11.1	25.2	58.8	25.3	8.0	33.4	5.3	10.4	32.8	24.7	18.9
W	G	2.6	6.1	2.9	2.2	4.0	1.8	3.8	1.0	9.3	0.8	6.9	9.7	1.9		2.7	1.1		4.9	3.5	3.1	24.7	13.4
W	BK	30.6	6.1	27.3	16.2	21.1	16.5	16.7	26.6	36.5	23.7	17.2	18.1	7.8	3.0	11.6	15.9	12.1	21.0	28.9	26.5	10.3	19.7
W	Y	5.1	6.1	3.9	1.5	9.9	6.2	3.2	1.0	1.0	0.8		1.4				1.7	9.1	1.2			1.9	0.8
W	YR			0.5		1.3	0.9	0.6	1.0				2.8			2.7			2.5	0.4		1.3	
W	BN	5.1	18.2	4.4	4.4	7.9	1.8	14.7	3.8	0.7		13.9	6.9			2.7	2.8	3.0	2.5	5.4	3.1	3.9	2.3
W	GY	3.2	3.0	9.8	2.9	2.0	2.7	3.2	1.9	2.6	0.8	13.9		1.0								1.3	
W	P	1.9		0.5			0.9		1.0			1.7	1.4							0.8	1.6		0.8
R	B	3.8		0.5	0.7	1.3			3.8	0.3		1.7		1.9		2.7	4.0	3.0	0.8	0.8			0.8
R	G	1.9			2.2		0.9				1.7		1.4				1.7		0.4	0.4		1.3	1.6
R	BK	1.9			2.2	2.0	1.8		3.8	3.3	5.9		5.6	8.7		8.1	2.8		0.8	0.8			1.6
R	Y	1.9	6.1			2.0	8.0	1.3		0.3	2.5	1.7	4	5.8		5.4	1.7	6.1	3.3	2.7	3.1	3.9	7.9
R	YR					1.3	0.9				3.4		1.4	1.9								1.6	3.9
R	BN												5.6							0.8			
R	GY			1.5	0.7		0.9			1.0	0.8			1.0		5.4							
R	P																						
B	G	0.6					0.9	1.3			0.8			1.0						0.4			
B	BK			1.5	1.5	1.3	0.9	1.3	4.8	0.3	2.5									0.4		1.3	
B	Y	7.0		2.5	0.7	2.6	2.7		4.8	3.6				1.9			9.1	2.9	2.3			1.3	3.1
B	YR							0.6					1.4	1.0					0.8			1.3	
B	BN			0.5							3.4			1.0		2.7						2.6	
B	GY			1.5	2.9		0.9			0.7	0.8			1.0		2.7							
B	P									0.3				1.0									
G	BK				1.5			1.9	1.0		0.8	1.7										1.3	
G	Y			0.5	1.5		1.8		1.0	1.0			4.1				8.0		0.8		1.6		3.9
G	YR					0.7					0.8			1.4									
G	BN					0.7			1.9					1.4								2.6	0.8
G	GY			0.5																		1.3	
G	P					0.7																	4.7
BK	Y	5.7		21.6	8.8	9.3	10.7	12.2	1.9	9.6	14.4	1.7	4.1	1.9		5.4	12.5	3.0	10.7	5.4		1.3	
BK	YR					4.0			1.9		2.5									0.8			2.4
BK	BN			1.0	0.7	0.7	2.7		1.0				1.4				2.3			1.5		3.9	
BK	GY			1.5	2.2	1.3	0.9	3.2		0.3	0.8							3.0			1.6	2.6	
BK	P				2.2																		
Y	YR												1.0							0.4			
Y	BN	2.6	3.0	1.0	0.7	0.7	8.9	1.3		0.3		1.7			2.7	3.4			0.4	2.3			0.8
Y	GY			2.9	1.5	0.7					1.7	3.4							0.4	1.1			
Y	P																		0.4	0.4			
YR	BN				1.5			2.9															
YR	GY			1.0	1.5																		
BN	GY						0.9																
Total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단위 %)

표 6. 3 色數値의 色彩配合과 비율

Cities			London (Oxford)	London (Piccadilly)	Paris	Amsterdam	Stockholm	Wien	Rome	Athene	Basel	Frankfurt	Penn.	Penn.(Mall)	Istanbul	New Delhi	Teheran	Hongkong	Bangkok	Taipei	Nagasaki	Tokyo	Busan	Seoul	
W	R	B	13.0	11.1	44.5	51.7	6.5	21.9	10.8	26.5	4.8	26.2	50.0	9.1	42.5	82.5	50.0	53.5	38.8	23.2	31.3	27.9	17.4	44.2	
W	R	G	1.3	11.1			8.1		5.4		8.8		6.3		5.0	2.9		7.1		11.6	5.8		9.3	14.5	
W	R	BK	28.5	33.4	11.1	3.2	6.5		13.5	17.4	23.6	30.6	6.3	18.2	10.0	5.9	18.8	13.4	11.1	18.2	37.5	33.3	5.6	20.3	
W	R	Y	7.8				6.5	5.6		8.7	2.9		6.3		10.0		13.1	2.7	5.6	7.0	4.0		1.9	15.0	
W	R	YR																							
W	R	BN	1.3			3.2				4.3			25.0					0.9		1.2	0.9				
W	R	P				6.5		5.6																	
W	B	G	1.3		11.1		1.6	11.1												1.2	0.4		10.2	0.7	
W	B	BK	7.8			6.5		16.7	5.4	8.7	8.8				5.0	2.9	3.1	1.7		1.2	1.4		7.4	2.2	
W	B	Y	11.7	11.1	11.1		61.2		2.7	4.3		4.3			5.0		3.1	2.7	22.2				4.8	1.9	0.7
W	B	YR							5.4																
W	B	BN	1.3	11.1				5.6	2.7									0.9							
W	B	GY				3.2											3.1							2.8	
W	G	BK				3.2	1.6		8.1		2.9									1.2	1.4		5.6	3.6	
W	G	Y										4.3		18.2			3.1	0.9			0.4		11.1	0.7	
W	G	YR		11.1				5.6						9.1										5.6	0.7
W	G	BN								4.3															
W	G	GY	1.3			3.2																0.4		0.9	
W	BK	Y	13.0			3.2	1.6	5.6	13.5		23.6							2.7	5.6	12.8	0.4	4.8		5.1	
W	BK	YR				3.2	1.6	5.6	2.7	4.3											0.9	4.8		0.7	
W	BK	BN							19.0	4.3	2.9			27.2								1.8	4.8		
W	BK	GY					1.6													1.2	0.4				
W	Y	BN	3.9															1.7			1.4			0.7	
W	Y	GY								4.3													4.8		
W	Y	P																			0.9				
W	YR	P										6.2													
W	BN	GY			11.1				8.1															0.9	
R	B	G																						0.9	
R	B	BK																		1.2	0.4			0.9	
R	B	Y	1.3			9.7					2.9	4.3			10.0	2.9	6.3	3.6	5.6	3.6	1.4	4.8		1.5	
R	B	YR													2.5									2.8	
R	B	BN										4.3													
R	G	BK										8.7													
R	G	Y										4.3								1.2	1.8		1.9	1.5	
R	BK	Y	6.5	11.1		3.2	1.6	11.1	2.7			8.7		9.1	10.0	2.9	9.4	3.6	11.1	12.8	3.2				
R	BK	YR																						0.9	
R	BK	BN																0.9							
R	Y	BN								4.3								0.9							
B	G	BK																						1.9	
B	G	Y																						0.9	
B	BK	Y									8.8	4.3						2.7							
B	BK	YR								4.3															
B	Y	YR																		1.2					
B	GY	P			11.1		1.6			4.3															
G	BK	KR																						0.9	
G	BK	GY																						0.7	
BK	Y	YR												9.1										0.7	
BK	Y	BN																				0.4			
BK	Y	GY					5.6															0.4			

3. 調査結果와 考察

3-1 使用色數와 Facade의 관계

Facade의 看板이나 裝置物에서 Rome을 비롯한 Stockholm, Vien, Paris에서는 單色빈도가 20%를 上廻하고 있다. Sign의 字劃이나 畵劃만을 Facade에 부착시킨다는 경우는 建物の 순수한 Facade기능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이것을 逆으로 考察하면 建物の 個性만으로도 sign의 정보전달기능에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論理에는 타의에 의한 法規의 制約이 있다. 요컨대 이런 都市는 건물 자체가 街區의 계속된 view를 文化遺産으로 昇華시킬만한 價値를 그들이 是認할 수 있는 次元이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빈약한 建物の 街區에서 Facade를 看板이나 장치물로 거의 cover하여 sign화된 건물상태이지만 연속된 view를 다른측면에서 살리고 있는 肯定物인 機能도 있기 때문에 看板의 存在는 必要惡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 街區의 活動機能과는 대등하면서도 建物이 빈약한 서울의 街路에서 유럽의 街路처럼 字劃이나 畵劃을 따르려는 것은 性急한 主張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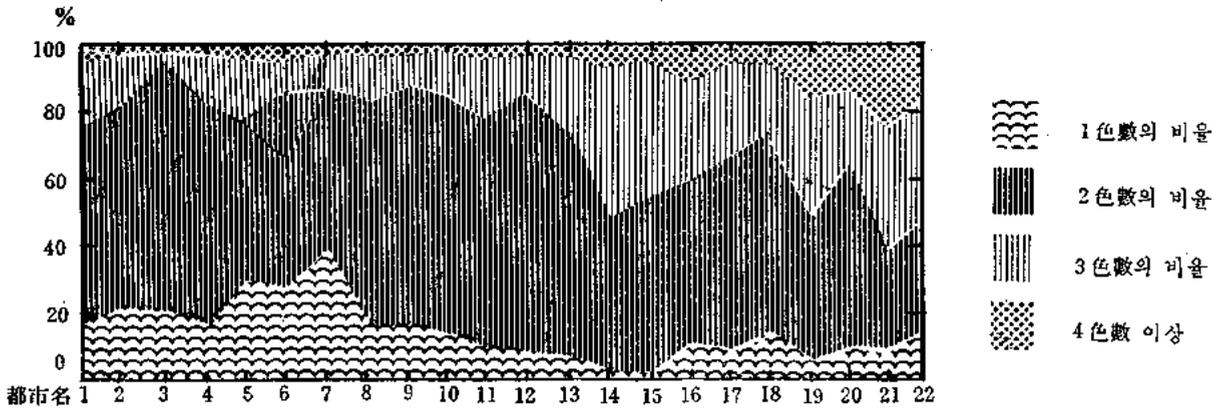


표 8. 都市別의 色數비교

3-2 主要(빈도가 높은)色彩와 Facade

Wien과 Frankfrut를 제외하고는 白色系가 30% 線이상을 점하는데 이는 주로 裝置物이나 看板의 바탕 色彩이다.

두번째 色彩빈도의 크기로는, 地理的으로 東西洋의 境界이면서 유럽쪽에 位置하는 Istanbul에서 中東을 거쳐 서울에 이르기까지 赤色系統이 분포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釜山은 예외로 綠色계통이 4위이고 靑色계통이 2위이다. 世界 어느 都市에서나 靑色계통은 交通信號燈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예로, 色數의 경우를 보자 東京의 1色數(8.2%)는 서울(12.0%)의 경우보다 낮으나, 그 반면 2色數까지는 72.3%로써, 서울의 45%나, 釜山의 35%보다 높다. 유럽都市는 2色數까지의 平均이 80% 線임을 볼때 單色主張(字劃, 畵劃)의 성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色數까지를 보자. 유럽은 3色數까지가 95% 이상이다. 환언하면 Facade의 장치물에는 3色數가 上限線이라는 것이다. 通行人의 視界에는 3色數의 경우도 建物 Facade 자체의 基調色과 아울러 이미 4色數가 되어 있다. 移動하는 視界에 展開되는 인접 Facade의 다른 色彩와 하늘, 도로, 그리고 자동차, 사람의 복장색등이 부단히 곁들여 새롭게 하여줌으로 裝置物의 色彩는 3色數를 配色의 限界點으로 하여도 정보전달의 기능이나 시각적 효과에서도 지장이 없다고 본다.

다음은 4色數를 考察한다. 서울 11.2%, 釜山 17%, 長崎 11.7%, 東京 2%이다. 유럽의 경우는 Wien 3.8%가 최상이고, 기타 도시는 2% 内外임을 본다. 이상, 色數의 考察에 대해 표 8에서 유럽과 中東, 그리고 東南亞, 東北亞의 비교가 용이할 것이다.

빈약하다. 유럽의 경우, 두번째로 色彩빈도가 많은 것은 黑色系統이다. 이것은 Facade에 직접부착되는 것으로서의 sign(字劃, 畵劃)만의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Facade와 sign 양자의 面積比에서 基調色에 調和될 수 있다는 것과 sign으로서의 기능에 최대 공약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黑色系統으로 해석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유럽의 Facade의 둔중한 基調色에는 기타의 色彩로 調和시키려는 企圖는 그들의 傳統文化의 保存上에 저항을 느끼기 때문이라

본다.

黑色系統에서의 예외는 Stockholm인데 그 이유는 조사街區가 新街路이기 때문이다. SAS 航空機의 내부와 여승무원의 유니폼이 찬란한 黃色系統인 것은 인상적이다 表 2에서 보다시피 Stockholm에는 黃色系統의 빈도가 두번째로 높다.

이상을 大別하면 中東 以東은 白色+赤色系統이고 유럽은 白色+黑色系統이 主導的인 色彩이고 여기에 각각 한두가지의 色彩가 가하여져서 看板과 裝置物의 色彩配合를 이루고 있고, 다시 基調色과 의 total的인 調和를 찾고있다. 여기서 말하는 基調色은 Facade를 뜻하고 위의 考察은 色彩의 使用빈도와 色彩에 대한 넓이를 제외한 計量이다. 그러므로 Facade에서의 느낌은 위의 數値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워, 調査區間의 1街路 100m單位에서 Facade와 看板의 넓이를 百分率로 한 것을 실었다(표

표 9.

區分	Facade (m ²)	看 板 (m ²)	看板/Facade ×100 (%)
都市			
鍾 路	1055.0	205.7	19.5
春 川	778.0	259.9	33.4
長 崎	927.2	171.6	18.5
臺 北	1237.7	193.9	15.7
香 港	3530.1	365.8	9.7
London	2010.0	177.9	8.9
Basel	1622.9	67.6	6.2

10). 論題에서 벗어나는 것 같으나 香港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看板이 많은 街路를 調査한 것인데 그 비는 9.7%뿐이다. 그 이유는 高層建物街이므로 Facade面積이 넓어서 看板面積과의 百分率이 낮은 것이다.

이러한 모순점의 발견으로 Facade의 合理的인 視高를 設定하고(이미 되어 있었다) 그 높이 내에서 百分率을 算出한 것이 표 10이다.

一連의 研究에서 얻어진 中間結果는 이 facade對 看板의 面積 비율이 20%이내 일때가 東洋에서는

표 10.

區分	Facade (m ²)	看 板 (m ²)	看板/Facade ×100 (%)
都市			
鍾 路	697.71	142.66	20.45
長 崎	611.72	154.86	25.32
臺 北	558.00	116.67	20.90
香 港	550.87	337.83	61.32
Basel	591.00	63.66	10.77

適正線이고 그것이 30%線을 상회할 때 우리는 看板의 정글이라고 느끼게 된다.

4. 結 言

지극히 流動적인 Facade의 色彩에서도 地域的인 흐름의 경향과, 하나의 看板에 쓰이는 色彩는 3色數가 上限線임을 考察의 中間結果에서 알았다. 그러나 이러한 調査研究에서의 試圖는 中극적인 秩序가 아니라 變化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는 可能性을 지닌 未完結의 秩序인 것이다. 時間的인 變化가 空間的으로 나타나는 事象은 環境과 個體사이에 움직이는 일종의 作用과 反作用의 連續인 것이다. 特히 個의 看板이나 Facade의 꾸밈이 街路環境과의 調和라는 上位的인 期待는 당연한 것이겠으나, 그 兩者의 深淵을 메우려는 體系의 積立은 앞으로 수년간은 잔재주의 범주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이 研究는 筆者의 研究室員 廉亨民, 閔泳鎮, 鞠重爽, 梁東禾君 등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감사를 표한다.

關 聯 文 獻

1.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明洞, 小公洞, 永登浦, 平澤) 金眞一 1970. 7. 漢陽大論文集
2.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千戶洞) 金眞一 1971. 11. 大韓建築學會誌
3.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鍾路) 金眞一 1971. 1. 大韓建築學會誌
4. 商店街看板의 配色研究(東豆川長崎) 金眞一 1972. 5. 大韓建築士協會誌
5. 商店街看板의 Module 分布性向 金眞一 1972. 5. 大韓建築學會誌
6.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東豆川) 金眞一 1972. 6. 韓美技術協力會誌
7.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春川) 金眞一 1972. 8. 漢陽大論文集
8. 都市空間에 演出하는 傳達狀態(長崎) 金眞一 1972. 10. 大韓建築士協會誌
9. 安仲里 購買施設(平澤郡) 金眞一 1972. 12. 韓美技術協力會誌
10. 商街建物 Facade에서 看板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建築計劃的研究 金眞一 1973. 6. 大韓建築學會誌
11. 商街景觀에서 外裝의 Flux에 대한 考察 金眞一 1973. 12. 大韓造景學會誌
12. 商街景觀에 대한 考察(Arcade를 中心으로) 金眞一 1974. 6. 大韓建築學會誌
13. 商街建物 Facade의 Flux現象(明洞) 金眞一 1974. 12. 大韓造景學會
14. 色彩學入門 尹一柱 民音社
15. 色彩, 久保田浩資, 白水社

國產木材表面의 色度와 明度分布의 調査

Measurements of Surface Chromaticities and Luminous Reflectances of Timbers in Korea

尹 一 柱
成均館大教授

1. 序 言

機能的인 配色과 調和된 環境計劃을 위하여서는 材料 또는 素材의 色彩分布의 파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本調査는 國內生産의 木材의 色度과 視感反射率(明度)을 測定하고 그 分布狀態를 綜合하므로써 하나의 資料로 提示하는데 목적이 있다. 木材의 퇴색에 따른 明度低下狀態도 아울러 考察하였다.

2. 測定時期, 測定器具 및 色度計算

測定期間은 1974年 11~12月이며, 使用測定器具는 MURAKAMI COLOR LAB. Colorimeter, Model CM-51로서, 3 필터 測定值 A, G, B 에서 3 刺戟值 X, Y, Z 에의 計算은 아래의 式⁽¹⁾

$$X=0.8 A+0.18 B$$

$$Y=1.00 \times G$$

$$Z=1.18 \times B$$

로 하고, 그것으로 다시 色度 x, y 를 算出하였다.

3. 試 料

韓國産 木材 48種에 對하여 各其 크기 $9 \text{ cm} \times 30 \text{ cm}$, 두께 1.2 cm 로 裁斷한 것을 앞뒤 兩面을 다듬고, 裏面을 他板材에 密着시켜 表面을 45° 경사로 室內氣候(陰影部)에 露出, 5年 경과한 것의 表裏兩面을 試料面으로 하였다.

4. 測定結果의 考察

표 1.은 試料木材의 表(faded) 裏(unfaded) 兩面의 色度와 視感反射率로서 反射率(明度) 順으로 配列한 것이다. 이것으로 퇴색전후의 色度, 明度差를 大略 알 수 있다.

그림 1은 그것을 色度座標로 플롯트한 것으로서 퇴색에 따른 chromaticness의 變化를 알 수 있다. 즉, 퇴색과 더불어 채도(순도)가 높아지며 多少 赤色쪽으로 기울어짐과 동시에 비슷한 色으로 짐작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各試料의 未퇴색의 視感反射率의 順位와 퇴색에 따른 材料別 明度低下의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材種에 따라 明度の 差가 많지만 老化後에는 그 差가 적어짐(시감반사율 25% 內外)을 알 수 있다.

표 1. 木材表面의 色度分布

(Chromaticities of surface of Timbers)

Nomenclature	unfaded surface			faded surface		
	x	y	Y	x	y	Y
찰 죽 나무 <i>Cedrela sinensis</i>	0.360	0.364	0.605	0.408	0.381	0.320
소 태 나무 <i>Picrasma ailan- thoides</i>	0.402	0.404	0.565	0.363	0.330	0.280
귀 롱 나무 <i>Prunus padus</i>	0.371	0.342	0.35	0.388	0.370	0.335
비 드 나무 <i>Salix koreansis</i>	0.372	0.379	0.530	0.403	0.389	0.310
절 나무 <i>Abies holophylla</i>	0.368	0.372	0.500	0.431	0.365	0.190
풍 개 나무 <i>Celtis fessoensis</i>	0.379	0.374	0.500	0.407	0.392	0.300
종 비 나무 <i>Picea koraiensis</i>	0.398	0.384	0.480	0.433	0.380	0.210
분 비 나무 <i>Abies nephrolepis</i>	0.390	0.376	0.475	0.429	0.723	0.220
물 푸 레 나무 <i>Fraxinus rhyrachophylla</i>	0.390	0.354	0.470	0.439	0.361	0.265
당 비 들 <i>Populus simonii</i>	0.378	0.372	0.455	0.406	0.378	0.300
팽 나무 <i>Celtis sinensis var. japonica</i>	0.358	0.391	0.450	0.404	0.375	0.300
향 나무 <i>Sabina chinensis</i>	0.394	0.363	0.430	0.420	0.388	0.250
서 나무 <i>Carpinus laxiflora</i>	0.369	0.359	0.420	0.400	0.373	0.310
진 갈 나무 <i>Quercus mongolica</i>	0.393	0.357	0.420	0.420	0.368	0.205
문 배 나무 <i>Pyrus seoulensis</i>	0.368	0.360	0.415	0.385	0.360	0.250
고 로 쇠 나무 <i>Acer mono</i>	0.385	0.367	0.385	0.425	0.375	0.255
스 무 나무 <i>Hemipteleia Davidii</i>	0.408	0.381	0.385	0.416	0.374	0.210
개 서 나무 <i>Carpinus Tschonoskii</i>	0.371	0.370	0.380	0.386	0.360	0.360
굴 참 나무 <i>Quercus Valiabilis</i>	0.382	0.376	0.375	0.373	0.397	0.235
단 풍 나무 <i>Acer formosum var. coreanum</i>	0.364	0.354	0.370	0.403	0.380	0.270
플 라 타 너 스 <i>Platanus orientalis</i>	0.390	0.352	0.370	0.400	0.382	0.300
이 갈 나무 <i>Larix olgensis var. coreana</i>	0.391	0.395	0.370	0.422	0.371	0.190
밤 나무 <i>Castanea crenata</i>	0.365	0.356	0.360	0.427	0.419	0.290
복 강 나무 <i>Acer mandshur- icum</i>	0.388	0.366	0.360	0.437	0.369	0.225
산 오 리 나무 <i>Scizhopepon biyoniaefolia</i>	0.390	0.374	0.355	0.420	0.376	0.240
개 락 달 나무 <i>Betula chnensis</i>	0.370	0.360	0.355	0.397	0.385	0.350
자 작 나무 <i>Betula platyphylla</i>	0.401	0.389	0.350	0.408	0.381	0.300
층 층 나무 <i>Cornus controversa</i>	0.375	0.373	0.350	0.418	0.382	0.225
호 개 나무 <i>Hovenia dulcis</i>	0.388	0.370	0.350	0.411	0.375	0.290
산 말 나무 <i>Dendropenthamia japonica typia</i>	0.391	0.379	0.340	0.415	0.387	0.265
가 래 나무 <i>Juglans mandsh- urica</i>	0.446	0.327	0.340	0.410	0.366	0.280
찰 피 나무 <i>Tilia mandshurica</i>	0.381	0.391	0.325	0.400	0.367	0.250
갈 참 나무 <i>Quercus aliena</i>	0.361	0.353	0.320	0.390	0.377	0.200
상 수 리 나무 <i>Quercus acutissima</i>	0.390	0.370	0.310	0.393	0.371	0.300
갓 나무 <i>Pinus konaensis</i>	0.403	0.389	0.310	0.458	0.384	0.230
졸 할 나무 <i>Quercus serrata</i>	0.382	0.359	0.310	0.420	0.376	0.240
개 살 구 나무 <i>Prunus mandshu- rica</i>	0.403	0.368	0.295	0.410	0.366	0.230
귀 엽 나무 <i>Gleditschia japoni- ca var. Roraiensis</i>	0.437	0.349	0.290	0.416	0.377	0.290
오 리 나무 <i>Alnus japonica</i>	0.398	0.365	0.290	0.409	0.377	0.280
죽 동 백 <i>Styrax obassia</i>	0.411	0.370	0.290	0.422	0.382	0.230
벗 나무 <i>Prunus serrulata</i>	0.405	0.384	0.280	0.401	0.367	0.240
박 달 나무 <i>Betula schmidtii</i>	0.397	0.360	0.280	0.398	0.384	0.270
황 백 나무 <i>Phellodendron amurense</i>	0.356	0.379	0.260	0.389	0.374	0.280
진 나무 <i>Acer Ginnala</i>	0.406	0.353	0.260	0.405	0.365	0.260
개 오 동 나무 <i>Catalpa ovata</i>	0.403	0.345	0.250	0.443	0.368	0.160
오 동 나무 <i>Paulownia coreana</i>	0.376	0.345	0.240	0.429	0.367	0.170
느 림 나무 <i>Ulmus Davidiana var. japonica</i>	0.403	0.376	0.220	0.403	0.376	0.220
다 림 나무 <i>Maackia amurensis</i>	0.442	0.387	0.160	0.415	0.368	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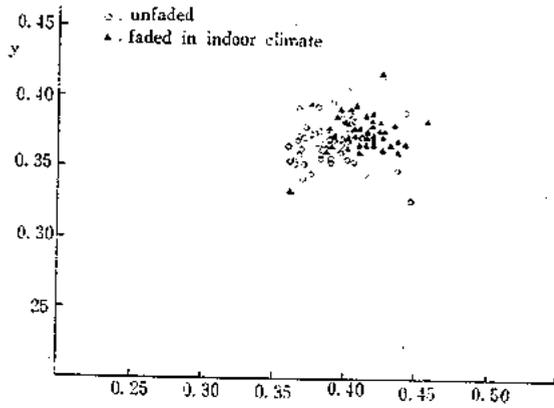


그림 1. 木材表面의 色度分布
(Range of chromaticities of ti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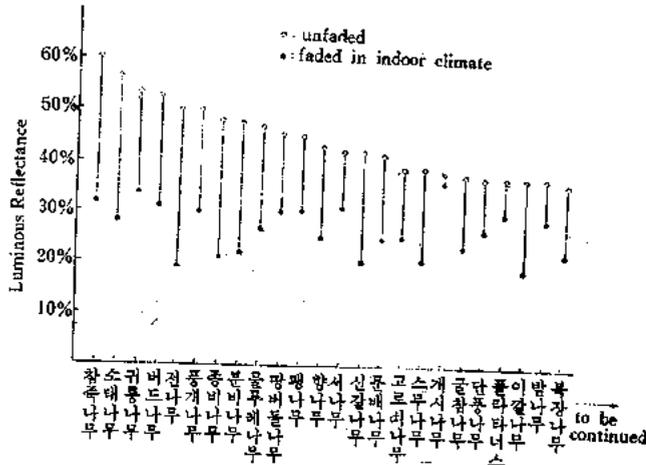


그림 2-1. 木材表面의 明度分布와 퇴색변화 (1)
(Luminous reflectance of timb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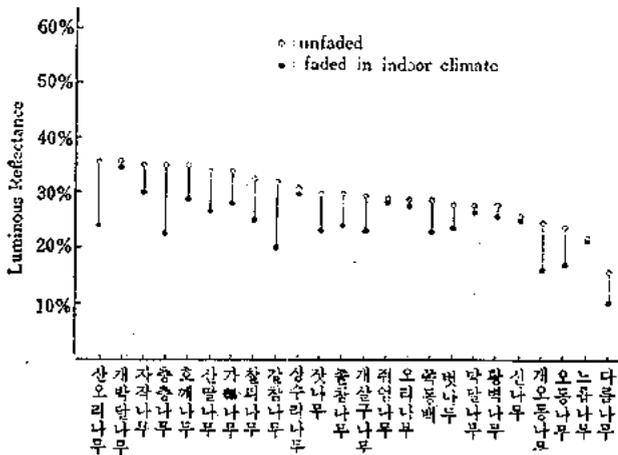


그림 2-2. 木材表面의 明度分布와 퇴색변화 (2)
(Luminous reflectance of timbers)

參 考 文 獻

1. 色彩科學ハンドブック, 南江堂, 東京(1962) pp.181-182.
2. JIS 標準色票, 日本規格協會, 東京(1971).
3. W. Faulkner; Architecture and Color,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1972).

追記: 本調査報告은 拙論 “國產建築材料表面의 色度 分布調査”에서 抜擢한 것임.

本調査에 있어 적지 않은 試料를 제공해 주신 同學 이장복 教授에게 끝으로 나마 謝意를 表합니다.

'75 第11回 現代建築作家展
展示作品集

版型 25×25 CM A-트紙

價格 部 1,000원

連絡處: 韓國建築家協會 72-4613

現代建築 石造壁의 合理的 디자인에 관한 研究

李 廷 德
高大教授·工博

I. 序

돌(石)은 人類建築史에 가장 기본적 역할을 한 建築材이다. 古代 「이집트」, 「크레테」 및 古典的 「그리스」 建築을 비롯 「페루」의 「잉카」帝國의 壁 그리고 東洋古蹟의 代表的 城堡의 構體와 宮闕, 佛寺의 基壇·礎石, 韓半島 最古인 高句麗巨石古墳의 石造闕八天障등 먼 古代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미더움고, 튼튼하고, 生命力이 길고 강한 재료로서 사용되어 왔다. 비록 지역적으로 產出石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強韌한 花崗石의 섬세한 사용등 意匠上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돌 자체가 갖는 素朴性과 信賴感 때문에 建築造覽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

한편, 돌은 그 天然의 性질상 여러가지의 趣向에 따른 意匠을 可能하게 하는 特性때문에 엄격한 建築規範 속에서도 變化를 얻을 수 있었고 氣候·地震等 地域的 특수 여건에 기술적 適應이 可能하였으며 各種 使用部位에 따른 構造 및 意匠上의 역할에 隨時로 副應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石造意匠의 현대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地域의 古來의 石造樣式의 構法的要因이 지역적 與件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라면, 또 그 意匠의 趣向이 民族性 一般에서 즐겨 사용해 온 것이 라면 이것들은 그 지역이나 민족의 傳統的 樣式으로서 현대건축 디자인의 중요한 資料 또는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石造遺構들 속에 이어오고 있는 전통적 특징은 韓半島 地域性과 우리의 民族的 藝術性의 所望이라는 점에서 현대건축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韓國的 意匠追求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건축에 있어서의 石造壁은 비단 우리의 전통적 意匠手法만이 아니고 우리의 趣向에 맞는 한 얼마든지 폭넓은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어떤 意匠에 어떤 構法이 적용되더라도 그것이 돌이 갖는 本然의 意匠性이나 物性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와같은 관점에서 石造壁의 디자인에 기본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종합함으로써 石造壁意匠의 合理的 追求의 자료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II. 石造壁 外觀의 種類

石造壁의 쌓기는 外觀上 크게 두가지로 分類된다 그 하나는 組積造로서의 石造의 安定性表現을 主調로 한 디자인이고, 다른 하나는 組積造中에서 石造에서만 가능한 大膽한 立體的 展開를 誇示하는 형식이다. 이 두가지 系統의 대표적 例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 그림에서 安定性을 主調로 한 디자인을 「水平安定主調型」이라 하고 立體的 展開方式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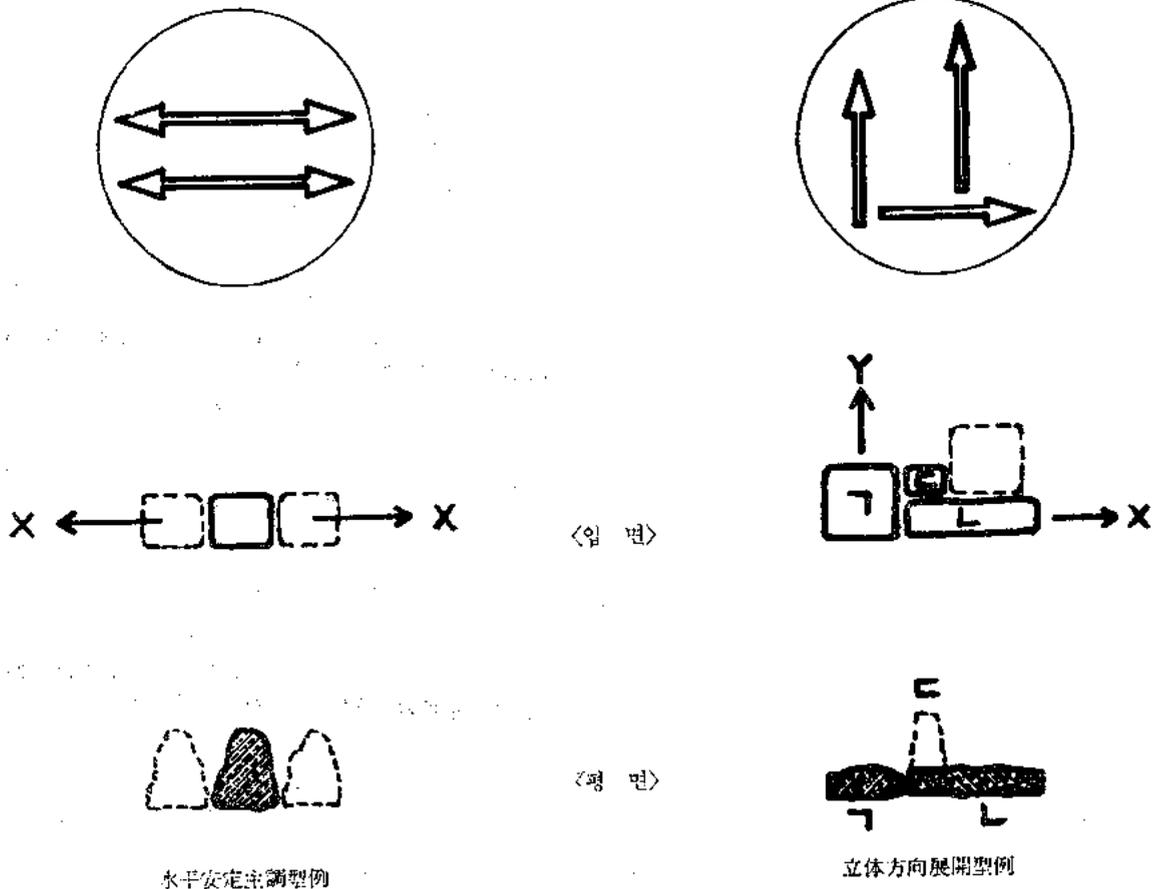


그림 1 돌쌓기 2系統

속하는 디자인을 「立體方向展開型」이라고 呼稱한 것은 石造壁의 여러 가지 形式을 모두 이 두 系統으로 包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上記한 바와 같이 이 두 系統의 意匠上 완전히 對比되는 性格을 各呼稱속에 表現하기 위해서이다. 一般構造學에서의 組積돌눈쌓기系의 바른층쌓기와 바른층막쌓기는 水平安定主調型에 속하고 調和돌눈쌓기系의 막쌓기, 또는 완자쌓기는 立體方向展開型에 속한다.

그림 1에서 보던 水平安定主調型은 水평돌눈 方

向으로 돌을 잇대어 한꺼씩 完成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傳統的 四塊石 쌓기나 그리스 건축의 opus incertum*(막돌을 줄눈에 맞추어 쌓은 것. 매개의 높이는 다름.)이나 isodomum**(막돌을 每개가 같은 높이로 쌓은 것)

* Morris Hicky Morgan, *Vitruvius—The Ten Books on Architecture* (New York: Dover Pub., Inc., 1963), p. 51.

** *Ibid.*, p. 52.

등과 같이 規則性反復에 의해 靜的이고 素朴하며 安定된 感を 자아내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立體方向展開型은 水平方向(그림에서 X) 뿐만 아니라 同時에 鉛直方向(그림에서 Y)으로도 面을 채워가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림에서 돌「ㄱ」, 「ㄴ」, 「ㄷ」은 이 디자인을 위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 「ㄱ」은 鉛直方向으로 올라가는(即, 윗쪽으로 壁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 「ㄴ」은 水平方向으로 뻗어가는(即, 옆으로 벽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ㄷ」은 「ㄱ」과 「ㄴ」이 이와같이 X, Y 方向으로 展開되기 위해 石塊의 두께가 그림의 평면에서 보는 바와같이 충분하게 못하게 됨을 補強하여 이웃 「ㄱ」, 「ㄴ」 등의 石群의 結合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近代 우리나라의 洋風石造建築에 이 例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立體方向展開型에 속하는 形式은 이밖에도 各種막쌓기가 있으니 佛國寺基壇石造, 韓式住宅의 石造담의 호박돌막쌓기, 「그리스」 건축의 opus reticulatum*(斜線줄눈 쌓기의 일종)이 그 例이다.

이 형식은 素朴한 石質表面에 變化性反復 또는 斜線줄눈에 의한 立體的 動的 構成美를 加味함으로써 은근한 멋을 자아내는 형식이다.

Ⅱ. 石材의 種類와 크기

石材는 生産되는 종류에 따라 建築의 규모와 구조, 그리고 細部裝飾에 영향을 주어 古典建築樣式에서 地域的 特性을 나타내는 主要 요소가 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石材는 原岩石類의 花崗石·斑石 및 各種 火成岩系와 堆積石類의 石灰石, 大理石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前者는 強하여 조개기 힘들며

後者는 잘 조개어지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西洋建築에서 보면 花崗石類系의 硬岩을 사용한 건축에서는 장식이 없고 엄숙한 外壁造形이 많고 석회석·대리석 등 堆積石類의 軟岩을 사용한 건축에서는 장식이 많고 화려한 外벽의 디자인이 盛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前者의 類로는 「프랑스」의 硬石産地에 세워진 Coutances 大寺院의 장엄함을 들 수 있고 後者의 類로는 石灰石地方의 Rheims 大寺院의 화려함, 大理石地方 「그리스」의 神殿群의 技巧性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石材는 비교적 強度가 높은 花崗石이 주로 사용되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비록 建築構體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各種塔婆·石窟岩·佛國寺石階 등의 아름다운 造形과 浮彫 등의 섬세함은 우리 先人들의 놀라운 意志와 技巧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古建築에 石材를 사용한 것은 주로 礎石·基壇, 그리고 一部外壁과 담장에 국한되어 있지만 各 使用部位에 따라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意匠性을 構法에 加味한 것은 注目할 점이다.

古建築에서 보면 地面에 가까울수록 큰 돌을 사용하고 그 쌓기방식도 水平安定性을 主調로 하고 上部로 올라감에 따라 數段階로 나뉘어 돌의 크기가 차츰 작아진다. 이를테면 基壇→下壁石(壁礎石) 및 기둥礎石壁→石(四塊石등)→벽돌(또는 磚石)과 같은 구조에서 基壇石은 가장 크고 水平方向치수가 매우 크게 되어 있고 차츰 위로 올라가면서 크기가 작아지고 壁石에 이르러서는 四塊石 혹은 호박돌과 같이 小形石材로 되어 그 운반시공의 容易性, 力學的合理性, 視覺的輕量感을 갖춘다. 그리고 磚石은 다시 그 위에 水平安定性을 갖고 쌓아 올리게 된다 한편 돌의 크기는 같은 壁面에서 同一크기로 築

韓國



(A B C D B A C)

變化性統一

日本



(A A A A A A A)

規則性統一

그림 2 韓國과 日本의 壁用돌크기의 組合比較

造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움고 아름다움게 보이며 同一 크기로 하는 경우는 人工的 아름다움과 딱딱함 긴장감 등을 느끼게 한다. 古建築에서 보면 一般的으로 韓國古建築에서는 前者를 주로 사용하였고 日本古建築에서는 後者를 즐겨 사용하였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壁構成石材의 크기는 극히 다양스러우며 다만 各개의 높이를 一定치수로 유지한다거나 돌 表面 마무리의 정도를 통일시켜서 壁全體의 「패턴」의 統一性을 이루는 소위 變化性統一의 意匠技法이라 할 수 있고 日本의 것은 돌의 크기 뿐만아니라 모든 디자인 요소가 統一된 樣로 羅列되어 이른바 規則性統一의 技法을 썼다고 볼 수 있다.

IV. 石材의 形態

壁體를 구성하는 個個의 石材의 形態는 앞에 말한 돌쌓기의 形式에 따라 달라지는데 壁體디자인에 있어서 돌쌓기의 形式을 決定한 後에도 그 形式아래 細部的으로 돌나누기(石割)를 해야 한다. 이때 돌나누기가 얼마만큼 보기 좋게 되었는가가 그 壁體 意匠의 成敗를 가름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는 돌自體가 갖는 天然的性質에 맞는 범위안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 即, 壓縮力에는 강하지만 組積하면 橫力에 약하고, 충격에 깨어지기 쉬우며, 비교적 무겁다고 하는 점을 勘案하여 壁構成材인 돌 하나하나의 크기·형상·座位(位置)·座勢(어떻게 놓였는가)를 결정하면서 돌나누기 디자인이 되어야 비로서 安定된 造形美와 生命力있는 構造美를 갖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各國古典의 관찰과 일반 구조적 이론을 바탕으로 考察하여 石造壁 돌나누기 디자인상 반드시 지켜야 할 事項을 다음과 같이 整理하여 보았다.

1. 모든 돌은 어느 것이나 세워쌓아서는 아니된다. 即, 벽을 구성한 모든 돌은 各各 가로치수(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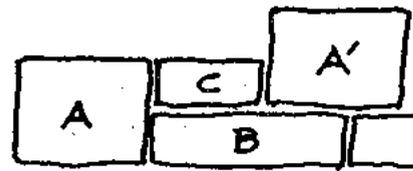


그림 3 整層막쌓기 기본 「패턴」

平方向치수)가 세로치수(鉛直方向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특히 막쌓기 또는 整層막쌓기에서 돌움돌(riser; 그림 3에서 A)은 上向展開의 역할이 쓰이므로 자칫 세워 놓게 되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모든 돌은 어느 쌓기形式의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銳角의 귀를 가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돌의 物理的 性質상 충격과 剪斷에 약하기 때문에 들뜸질·운반·設置 때 깨어지기 쉬우며, 完工後에도 耐力上 또는 外的衝擊에 약하기 때문이며 또한 視覺上으로도 일반적인 돌의 形態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보아 좋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A,B,C의 構成石은 모두 銳角을 갖지 않으면서 「斜線줄눈의 變化」를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비하여 A'와 C'는 銳角을 갖는 날카로운 모양을 하고, B'는 銳角은 없으나 다음 項에 記述하는 바와 같이 壁構成材로서 忌하는 ㄱ字型이 되어 있어 不良하다.

3. 모든 돌은 ㄱ字型을 피하여야 한다. 이것은 돌의 加工과 施工이 힘들 뿐아니라 돌이 內應力이나 충격에 대하여 모두가 凹部에서 깨어지기 쉬우기 때문이다. 그러나 窓臺石과 같이 開口部 補強등 특수 역할을 하는 경우는 例外라고 할 수 있는데(그림 5 참조) 이 경우에는 ㄱ型의 한 쪽은 극히 짧게 하는 것이 구조상 有利할 뿐아니라 原石材크기가 大形化되지 않아서 좋다.

ㄱ型에서 한쪽이 짧은 경우는 그림 6에서 橫壓力 xd_2 만이 돌이 꺾인부분에 加해진다고 볼 때 d_2 인 경우가 d_1 인 경우보다 有利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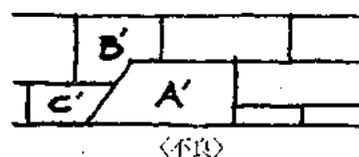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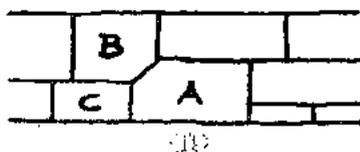


그림 4 돌나누기 良否比較

* 大塚常雄, 建築の各部デザイン (東京: 理工學社, 1969), p.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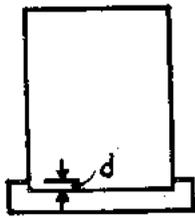


그림 5 T형 돌의 사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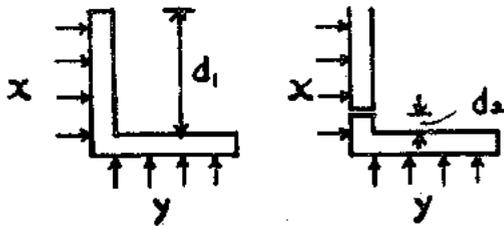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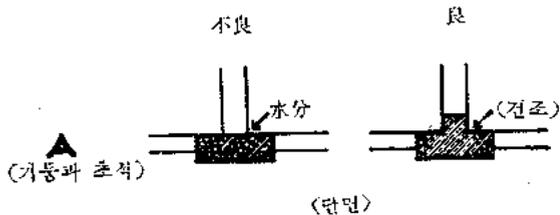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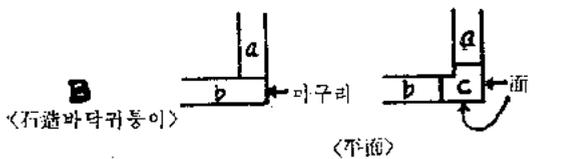


그림 6 T형 돌의 2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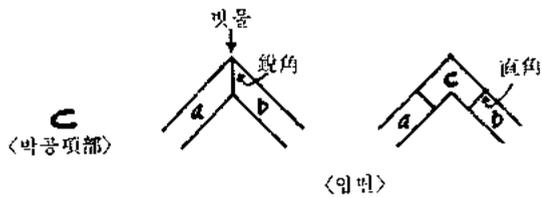
A (기둥과 초석)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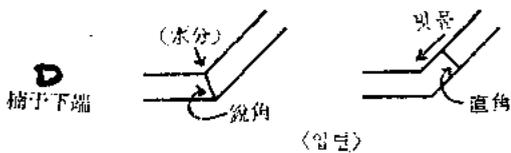
B (石造바닥귀퉁이)

(平面)



C (박공頂部)

(입면)



D (楯子下端)

(입면)

그림 7 石材接合部の 良否比較

4. 大中小의 세가지 돌의 크기를 갖는 들쭉기에서는 3개종류의 돌의 층의 비가 大:中:小=3:2:1일 경우 가장 보기좋은 패턴으로 된다. 특히 그림 3에서 A,B,C의 층의 비가 A:B:C=3:2:1로 되는 경우 가장 보기에 좋다고 전해지고 있다*.
5. 두 개의 다른 돌이 맞닿는 接合部는 그 돌의

部位에 따른 기능상의 역할을 감안하여 돌나누기를 하여야 한다. 그림 12는 一般現代建築에 사용되는 各種部位에 있어서의 例로서 그 良否의 비교를 한 것이다. 그림에서 A組는 P.C 또는 石造·木造등의 기둥과 礎石 接合부를 略示한 것인데 右側의 그림과 같은 方法이 適正한 것으로서 바닥面의 水分의 침투에 의한 기둥下端部の 風化, 또는 먼지와 같은 地表雜物類의 凝集에 따른 더러움 등에 不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B는 石階段·石造플랫폼·테라스 갓돌래 등의 端部모퉁이에서의 例인데 部材 b의 마무리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c材를 사용함으로써 外觀上 a와 b의 연결이 「面」으로 이어지는(즉 갓돌래 頂部가 面으로 구성되는) 자연스러운 接合의 sequence를 갖는다.

한편 이 平面圖를 石造壁의 T字로 꺾어진 모서리 부분의 평면이라고 볼때 屋內모서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통줄눈을 c材의 要領으로 모서리돌을 T字로 最上部(또는 最上部에 가까운 곳)에 돌으로써 方止하면 視覺的으로도 結束感을 갖게 하여 좋다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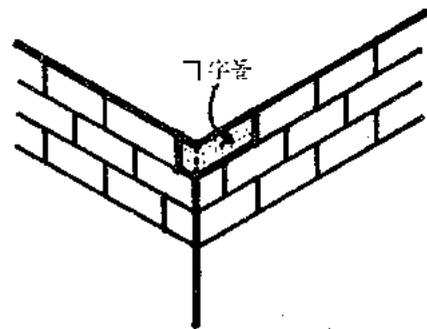


그림 8 T字 모서리돌의 例(室內仰視圖)

그림 7에서 C와 D는 ① 各부재가 銳角을 가지면 쉬우게 風化乃至 破損되기 쉬우므로 各 右側에 그러진 要領으로 接合시켜야 한다는 점과, ② 雨水나 水分이 침투되기 쉬운 곳에서는 接合줄눈이 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에 留意해야 한다는 것을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原理는 風雨에 露出되는 곳의 모든 石造物——이를테면 現代의 街路上의 諸施設(street furniture)까지에도 適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W.B. McKay, *Building Construction*(London: Longmans Green & Co., 1971), p. 48.

V. 壁의 質感(돌의 表面과 쌓기줄눈)

벽의 質感은 벽을 구성하는 돌의 표면의 마무리 상태와 각 돌을 쌓는 방식에 따른 줄눈의 패턴·굵기·단면상태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타난다. 이 점이야말로 石造壁이 다른 材料에 비하여 意匠의 多樣性을 풍부하게 하여 주고 따라서 作家의 意向이나 地域의 特殊性, 또는 民族的 趣向등이 造形上에 表現될 수 있는 可能性을 주는 것이라 하겠다.

돌의 표면은 큰혹두기와 같이 매우 凹凸이 심한 경우로부터 세밀한 잔다듬 내지 극단적으로는 물갈기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와같은 여러 종류의 用法은 使用部位와 石質, 또 作家나 建築主의 意向·經濟문제 등에 따라 선택되겠으나 일반적으로는 石築·石崖와 같이 大地의 側壓을 막는 境外壁은 큰 혹 두기가 自然스럽고, 建築基壇이나 外壁部는 사람이 접근하는 곳이므로 작은 혹두기 또는 잔다듬이 좋으며 더욱 여러 사람이 近接하는 現代都市의 都心部에 자리잡는 건축은 煤煙·먼지등에 의한 汚染을 防止하는 利點이 있는 물갈기로 함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前述한 바와 같이 돌의 用法은 民族的 建築 趣向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間或 우리나라 傳統 樣式을 追求코져 하는 경우에 바로 이 돌의 표면과 줄눈의 技法에 留意해야 할 것이다. 本論文의 序頭에 論述한 바와 같이 우리의 先祖들은 지나친 野性的 粗惡性이나 지나친 人工的 技巧性을 싫어하여 모든 造形美術分野가 그러했듯이 中庸의인 素朴하고 은근한 멋을 追求하였기 때문에 그 結果 특히 人間尺度에 조화되지 않기 쉬운 大建築의 造形에서도 매우 「휴머니즘」이 풍부할뿐 아니라 해학적인 표현에까지 이르고 있다.

石造壁 質感意匠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예를 들면 山地坵地造成을 위하여 쌓아올린 佛國寺基壇石을 비롯 각 古都의 城堡·城門 등 비교적 大形 築造物下壁部長台石用 巨石들은 日本의 諸 城堡의 超尺度의으로 巨大한 野性的 下壁基石(一邊이 7m 以上の 것도 있음) 등에 비하여 크기에 있어서 人間尺度에 알맞을 뿐 아니라 形狀도 날카롭지 않고 따라서 줄눈도 가늘고 일매지게 되어 있으며 표면도 혹두기의 정도가 거처를 가지는 정도까지만 이르고 있다. 이와 反對의 傾向으로서 人工的 技巧

性에 있어서는 日本石造樣式에서 흔히 보는 「江戸切」·「二面切」·「谷切」·「龜甲切」 등의 여러가지 同大의 「切石」들과 같이 지나친 人工性을 追求하지 않고 알맞은 정도의 다듬돌로하고 크기(또는 줄눈 간격)도 同一하게 맞추지 않음으로써 自然스런 아름다운 質感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石造壁의 줄눈은 壁面質感形成의 주요 요소이다. 쌓기 방식에 따른 구성문양, 줄눈의 굵기와 굵기의 變化여부(一様性), 줄눈의 斷面, 줄눈의 색체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쌓기 방식에 의한 구성문양은 前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줄눈자체에 관해 고찰한다.

줄눈의 굵기와 굵기의 變化는 壁面디자인에 영향을 많이 준다. 줄눈의 굵기는 石質에 따라 多少 다를 수 있어서 軟岩일수록 가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花崗岩은 6mm 정도가 최소인데 대하여 石灰石 등은 3mm 까지 좁힐 수가 있다*.

이 줄눈의 치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張起仁先生과 日本의 堀紫朗氏는 다같이 6mm~7mm를 일반적 줄눈 두께로 보고 있으나 英國의 W.B. McKay氏는 그의 構造册에서 마름돌쌓기의 줄눈 두께는 3mm라고 斷定的으로 말하고 있고** 특히 줄눈의 最大두께는 各各 다음과 같이 差異가 있음을 본다.

張起仁 著 건축구조학——막쌓기등에서 15mm ~20mm

堀紫朗 著 建築構造學——稀貴하게 10mm~12mm***

Architectural Graphic Standards——四角石막쌓기에서 13mm(1/2")~25mm(1")****

W.B. McKay 著 Building Construction——막돌쌓기에서 5cm 넘는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줄눈 굵기에 대한 觀點의 差異는 石造壁의 디자인 自由度와, 그에 따른 多樣性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겠으며 다음과 같은 줄눈성격의 分類를 통하여 이와같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에서 A는 野性的 巨石쌓기에서 보게 되는 날카로운 줄눈이다. 日本의 古城의 石崖에서는 이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筆者가 直接 日本에서 調査해

* Charles George Ramsey & Harold Reeve Sleeper, *Architectural Graphic Standards*(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71), p. 100.

** W.B. McKay, *op. cit.*, p. 61.

*** 堀紫朗, 建築構造學(東京:丸善株式會社, 1965), p.65.

**** Charles George Ramsey & Harold Reeve Sleeper, *op. cit.*, p. 100.

***** W.B. McKay, *op. cit.*, p.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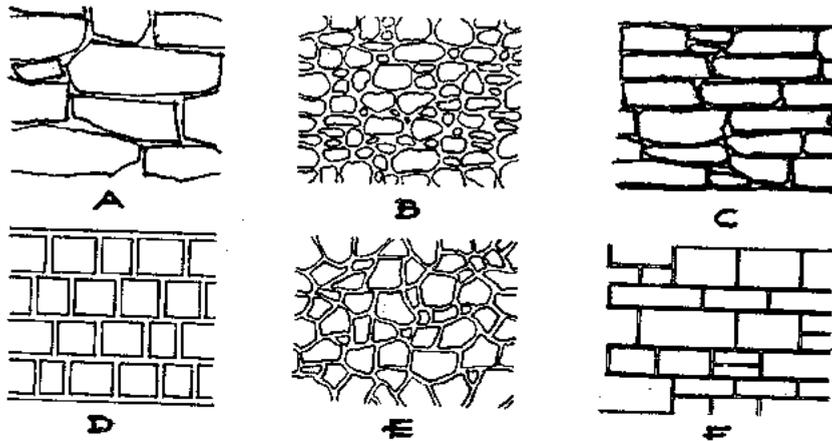


그림 9 돌쌓기줄눈의 종류

본 바에 의하면 大阪城에서는 길이가 7m 높이가 3m 정도의 巨石과 더불어 이러한 쌓기方式이 사용되었다(그 巨石들의 운반은 어떻게 하였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不可思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쌓기 方法은 큰 암석사이에 작은 돌을 박음으로써 地震에 의해 어느 方向으로 운동이 생겨도 잘 적응하게 되어 있고* 또한 애초부터 줄눈이 두께가 달라서龜裂이 간 것같이 하여 둠으로써 地震後에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려 한 것 같다. 이 형식은 地震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줄눈의 날카로움이 우리의 눈에는 거슬리는 意匠이 되어 있다.

B의 쌓기형식도 A와 같이 줄눈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돌의 크기가 작고, 형상이 원만한 막돌로서 부드럽고 소박한 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民家 등 庶民建築에 愛用되었다.

C의 형식은 整層막돌쌓기(Rough-faced random walling, built to course)의 一種으로서 매우 현대 감각에 맞는 壁實感을 造成한다. 특히 돌자체의 原狀을 유지하며 돌의 크기는 알맞고 크기의 多樣스런 變化를 水平줄눈의 基調에 맞추어 쌓음으로써 力學的·視覺的 安定感이 있고 人工的인 딱딱함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멋이 있고 醜증이 나지 않는다. 이 형식에서 줄눈의 굵기도 A,B와 같은 큰 變化와 D,E,F와 같은 人工的 劃一性의 中間的인 자연스러운 若干의 太細變化로서 視覺上 조용하고 動的인 리듬과 더불어 安定感을 느끼게 한다.

와D E는 줄눈의 굵기가 均一한 例인데 D는 四

角形의 크고 작은 돌을 整層으로 쌓아 水平安定性을 主調로 安靜的 패턴인데 反하여 E는 無作爲로 立體方向으로 展開된 動的인 구성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줄눈의 굵기가 人爲的으로 均一하게 함으로써 自然스런 自然性보다는 秩序를 부여하려는 人間的 意圖가 더 強하게 느껴진다. 이 方式은 東西古典에 모두 發見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四塊石쌓기는 D의 例이고 C의 例는 樂善齊와 같은 高級

邸宅의 石壁에서 발견된다.

F의 경우는 돌을 극단적으로 다듬어 四邊이 整然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극히 가늘고 均一 두께의 줄눈으로 쌓아올린 例인데 이 壁디자인에서는 清潔感과 安定感을 느끼게 된다.

V. 結 論

돌은 建築外裝材中에서 디자인 自由度가 극히 높고 가장 歷史가 오래며 앞으로 계속해서 愛用될 一級材라 할 수 있다. 특히 현대건축이 金屬·유리·P.C.材와 같은 機械的 材料를 사용해갈수록 돌은 木材와 더불어 自然材로서 우리에게 더욱 貴重한 것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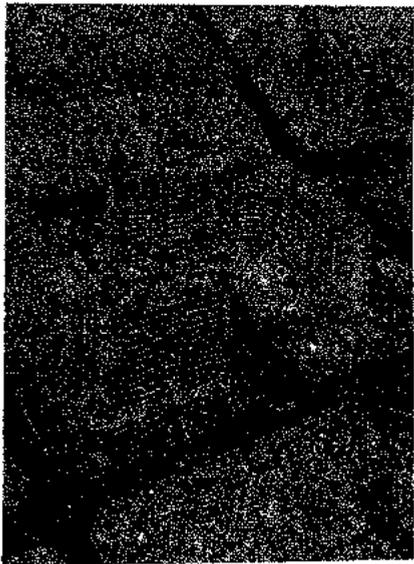
그러나 돌과 木材는 그 디자인에 있어서 用法을 바탕으로 한 法則性을 無視할 수 없다. 그것은 이 材料에 대한 디자인 自由度의 無限性에도 불구하고 이들 本然의 物性의 絕對性 때문이다. 이 研究에서는 이 점에 留意하여 石造壁의 美를 追求하는 디자인 過程에서 지켜야 될 事項들을 綜合整理함으로써 그 適正 디자인의 方向을 提示하여 본 것이다.

* Paul Jacques Grillo, *What is Design*(London Frederick Wrane & Company, Ltd., 1971), p. 57.

** 筆者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 자리잡은 古石壁이 우리나라의 四塊石쌓기와 돌의 크기·표면처리·쌓기方式이 거의 同一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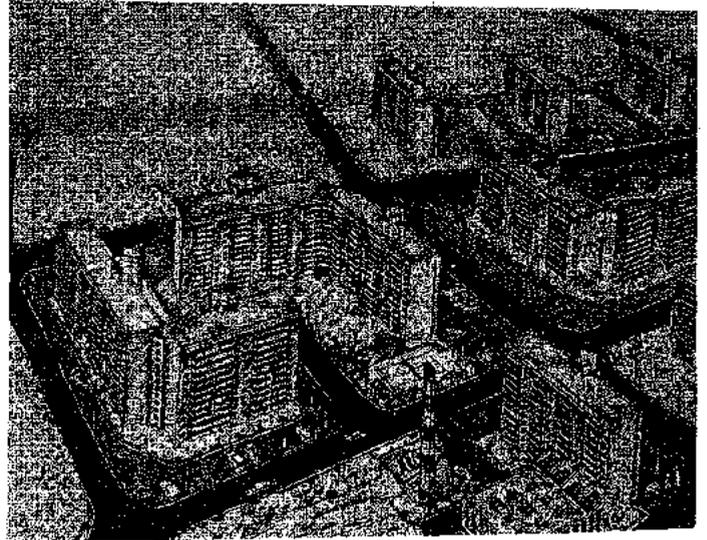
姜明求

中央大学校芸大教授



우리나라 아파트 평면의 形成過程을 지켜보며

서울에서 부산에 걸쳐 既히 設計된 10坪 未滿에서 80余坪의 맨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280余坪의 平面을 蒐集하여 우리
나라 아파트의 平面 形成区種을 研究하는데 鉛筆 이가 되면
多幸으로 역이면서



解放后 우리나라 아파트의 始初는 自由黨時節 三清洞에 있던 所謂 国会議員 아파트이다.

建築學을 專功하던 터이라 學生時節에 初步的이나마 東京의 아파트를 實地로 見學도 하고 또 短期間이나 마 살어도 본 經驗과 眼目으로 2国会議員 아파트를 가보니 그것은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릴 따름이지 實은 解放后 邑人들의 舍宿所를 急改造한 不良住宅群에 不遇하였다. 간장 단지와 슬가마가 無秩序하게 廊下에 널려져 있었고 심지어 住所의 臭氣까지 차있던 記憶이난다.

그래도 地方出身 国会議員 아파트이니 僥倖이지 一般庶民들은 겨우 敵産집 身勢로 當時만해도 아파트라고는 꿈도 못꾸던 時節이었다. 얼마后 鍾岩洞에 中央産業 아파트가 民間建設 아파트로 처음 試圖 되었으나 初步的이고 小規模였다.

1960年 5-16이나고 當時 住宅公社 理事長 張東雲氏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意慾的이고 本格的인 아파트가 計劃되고 麻浦아파트가 建立되었다.

當時에는 高層으로 計劃되었으나 建設部의 反對로 5층으로 줄었다. 그 아파트는 余裕있는 配置와 어린이 놀이터에 彫刻과 噴水도 곁들인 人間味있는 住居 環境으로 好評과 自負心을 얻었다.

그러나 當時 麻浦아파트도 市民들에게는 새로운 居住經驗이었기에 入住하고 하루도 못가서 水洗式便所가 막히고 부엌 排水口가 넘치는 웃지 못할 騷動까지 일어났던 일이 생각된다. 그것은 西歐 여러 나라들과

는 달리 公共 社會生活과 文化的都市生活의 經驗에 익숙치 못하던 解放과 苦難과 革命的 時節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特記할만한 일은 麻浦 아파트의 建設과 生活經驗은 우리나라 아파트生活, 高層 住居性의 可能性과 아파트의 設計 建設의 貴重한 試金石의 役割이 된것이라 하겠다.

그후부터 漸次 조심스레 各處에서 아파트가 建立되기 시작하였고 서울에서 지은 여의도 中産層 아파트나 住宅公社가 지은 아파트는 비록 麻浦의 精誠어린 零團氣만은 못하나 그래도 住居環境은 좋은 便이었다.

그러나 그 余勢인 양 不良地區(所謂 杆子村地區) 再開 發事業으로 지은 庶民아파트는 不足한 予算과 性急한 竣功欲으로 建物(와우아파트事件으로 立証)은 勿論이며 都市空間의 破壞와 그 周圍環境도 엉망이 되었다. 그러나 이일 역시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方向設定에 對한 좋은 參考와 教訓이 되기도 하였다.

드디어 1973년에는 서울工大 住宅問題研究會에서 시민아파트에 對한 實態研究調査가 學生들에 의하여 實施되어 14개 아파트村을 直接 家庭訪問 調査한 結果가 報告되었다. 調査對象이된 420余家口의 應答者들은 그들 아파트 生活經驗에 對한 不便 不安 不滿들이 처음 數字로 正確하게 나타났다. 그들 應答者中 約50%는 階段이 家口數에 比하여 비좁고, 外部階段에서는 危險마저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부엌도 좁고 不便하다가 63% 濯濯도 부엌에서 해야만 된다는

不平이 83% 壁이나 天障의 防水處理가 잘 안되어 비만 오면 考慮되지 않아 옆집 아래 윗집의 말소리가 밤이면 물이 집 안으로 샌다가 66% 防音이 그대로 들린다가 85%. 어린이 老人들의 놀이터와 休息處가 없어 복도에서 쉬고 논다가 52%나 된다. 이 외에도 벽장(收納場所)이 없어 面積도 많이 차지하고 移徙때 마다 거주장스럽고 破損의 念慮마저 있는 옷장 家具에 依存하게 됨으로 그렇치 않아도 비좁은 서민아파트의 面積은 점점 비좁아만 진다는 不平 不滿 이러한 入住者들의 潜在的인 不平들은 實上은 우리들 建築士에게는 좋은 助言으로 받아 들여야 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다 近來에 와서는 예레베터 機戒소리 空調機室에서의 振動과 搖音의 防止, 또는 上層에서의 室, 便所의 排水소리 最上層의 耐寒 斷熱材 등에 대한 配慮는 勿論이고 計剛原論的 構造體의 檢討 또는 窓의 높이, 失足憂慮의 危險防止나 盜難防止, 베란다의 安全度와 高所恐怖証에 이르기까지의 生活心理가 參酌된 設計圖의 모든 研究인 卽 單位平面은 勿論이고, 各棟別의 平面型과 斷面計劃, 住居團地로서의 全体配慮, 나아가 自然과 外部景觀을 包含한 住居生活에서 人間性的 復活을 위한 住居群과 커뮤니티의 이르기까지 모든 構成의 複雜한 問題點이 남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안 住 公社 서울시等 共公 機關에서의 數 많은 아파트建設은 勿論, 民間住宅會社들에서도 이에 못지 않게 많은 아파트를 建設해왔다. 특히 그들중에서도 三益住宅은 아파트建設에만 專念하여 現在까지 4,450世帶 延157,528坪이나 서울, 釜山等地에 建設하였으며 世帶單位面積도 6坪에서 78坪차리 變遷에 이르기 까지 多樣한 設計와 아파트만의 專門建設의 經驗과 実績을 土臺로 遜色없는 아파트를 깊이있게 研究하며 建設하고 있다. 이러듯 數 많은 建設된 아파트들을 西歐여러나라 아파트와 比較해 보면 역시 内部居住性과 外部空間이라는 點으로 보아 缺點도 있고 아직 研究改良해야 할 問題도 남아있어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近間에 와서는 이러한 모든 피나는 努力과 經驗의 보람으로 우리나라 아파트의 設計와 建設技術이 이란으로 또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까지 進出하게 되었다.

특히 1月20日字 新聞報道에 의하면 建設部長官의 今年度 住宅建設計劃이 發表되었으니 그內容은 政府 및 公共部門에서 74,000尺 民間部門에서 146,000尺 計 220,000尺의 住宅建設計劃이고 그中 公共部門 74,000尺分은 零細庶民을 위한 賃貸아파트 또는 中產以下 小規模住宅에 置重한다는 鼓舞的인 消息이다.

이러한 不足住宅 充當을 위한 政府의 努力에 뒤지지 않게 우리 建築士들도 그-翼을 擔當한다는 뜻에서 아파트의 平面集을 連載할까 한다.

이 아파트平面들은 모두 여러 建築士들이 作成한

것 만을 蒐集하기 시작하여 現在 280余種 10坪에서

80余坪에 이르는 平面들로서 事實은 棟別平面 配置까지 蒐集하였으나 紙面數關係도 있어 干先 單位平面만을 실이기로 하였다.

이중에는 잘되어있는 平面은 參考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或間 장피한것도 섞여 있으나 그 잘 잘못은 모두 우리 建築士들의 발자취였으며 자라가는 過程으로서 여러분들의 批評과 參考와 研究資料는 될 것으로 確信한다.

蒐集된 平面들을 可能的 限 所在地와 設計한 建築士를 明記하겠으며 不得已 作家不明인것은 記入치 못하게 되었다.

또한 各平面에는 特異한것에 限하여 筆者의 主觀的인 小評을 용서바란다. 이 平面은 整理上 小面積의 아파트 부터 차례로 連載할 予定이다.

끝으로 이 平面 蒐集에 많은 協助를 해 주신 서울시 沈斗漢 建築指導課長에게 感謝드리며 앞으로 여러 建築士들의 보다 좋은 아파트設計計劃에 이 平面集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追記

이 아파트 平面集을 連載하면서 一方 單行本으로 出版 計劃中임으로 筆者가 미처 蒐集못한 여러 建築士의 좋은 아파트의 平面(但, 實施設計나 既竣功된 分)을 下記 住宅에 郵送해 주시면 平面集 刊行時 掲載코자 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協力を 부탁드립니다.

121-00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165-1

강 명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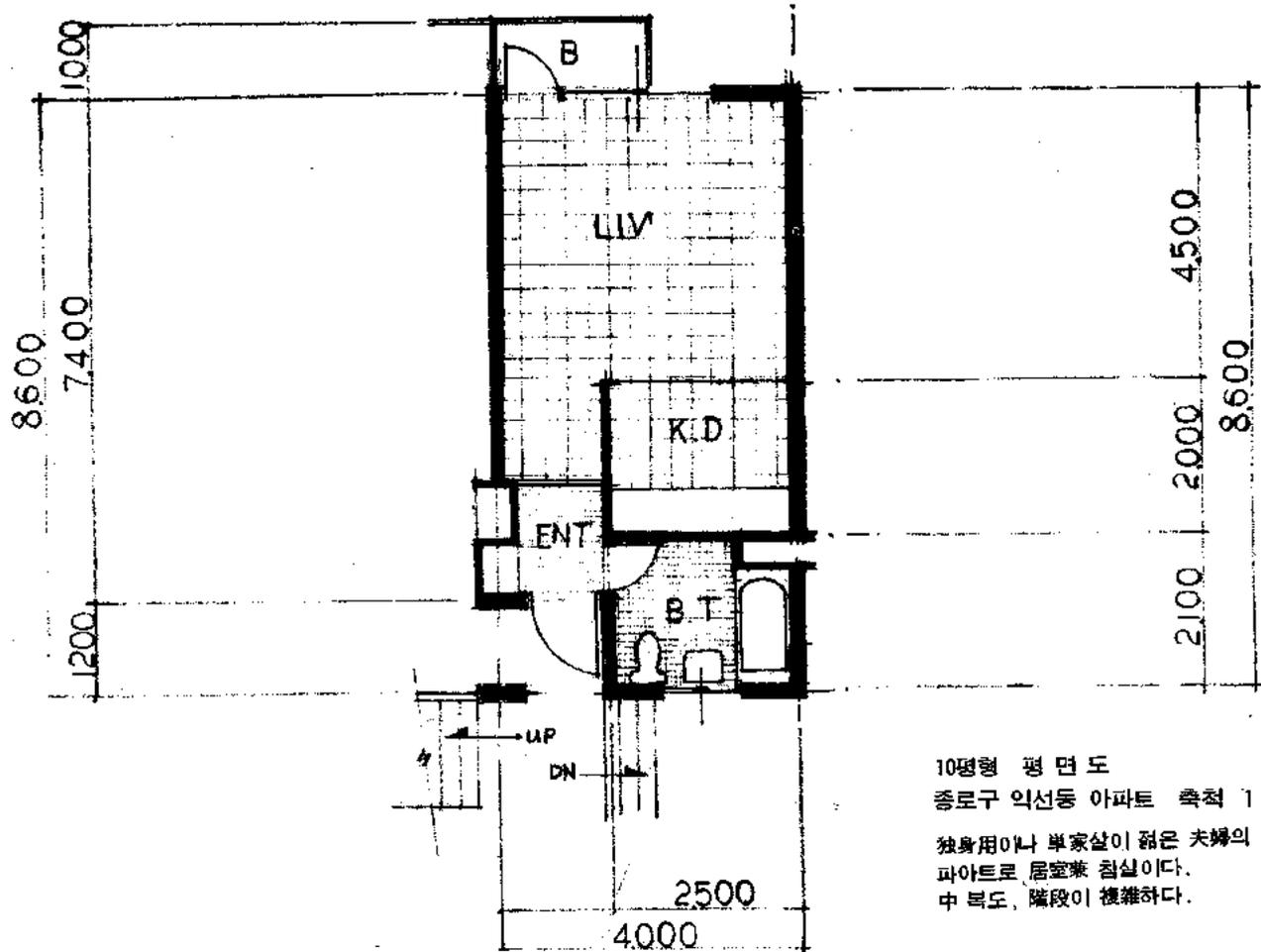
〈新刊〉

建築計劃決定方法

著者 漢陽大學教授, 工學博士 金 眞 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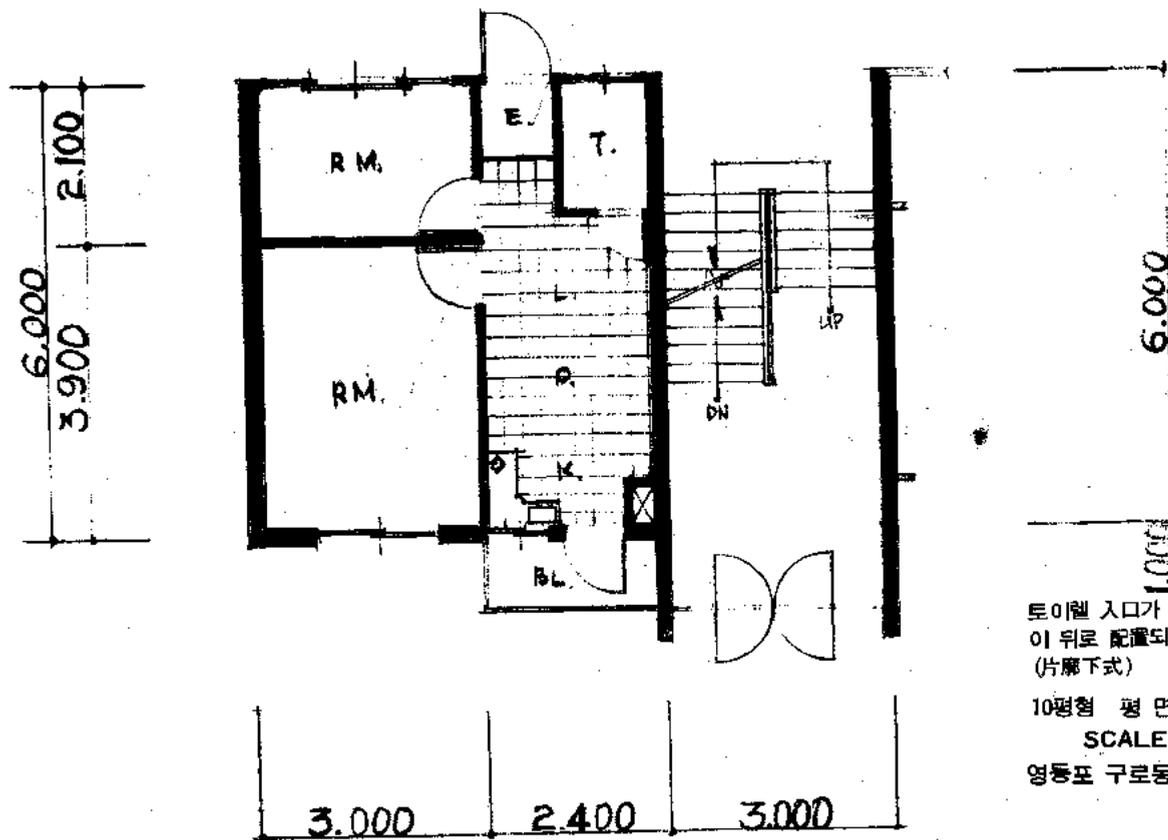
總版 良友堂 74-4292 23-2707, 2708

菊版 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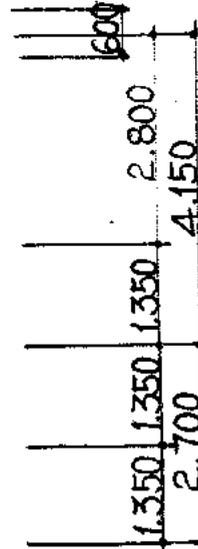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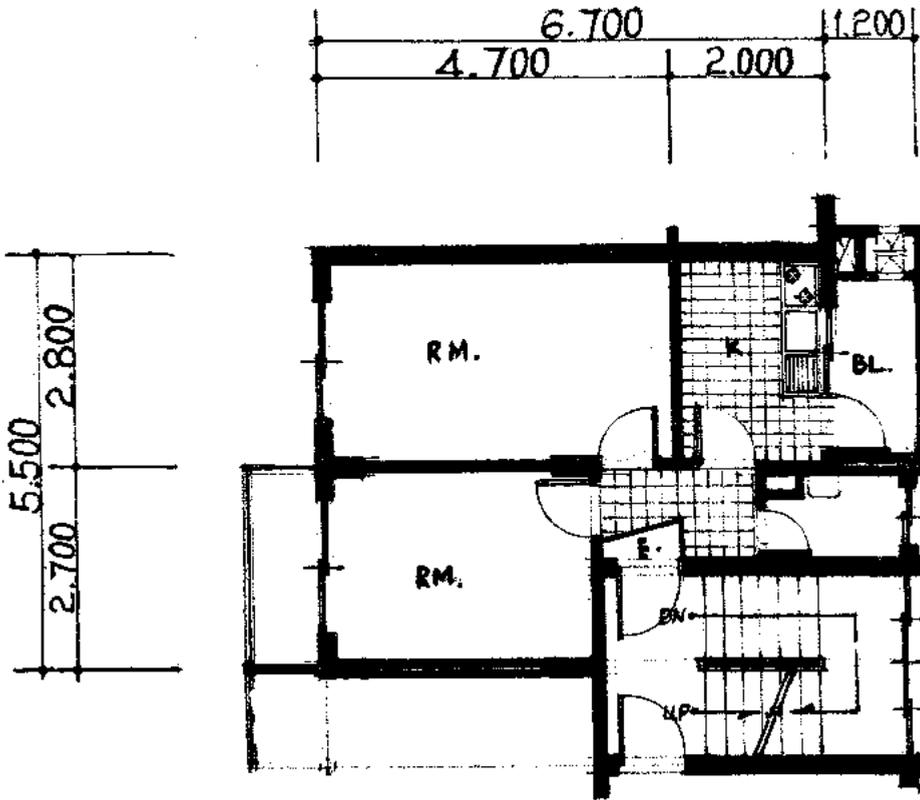
10명형 평면도
중로구 익선동 아파트 축척 1 : 100

독身用이나 単家살이 젊은 夫婦의 아
파아트로 居室兼 침실이다.
中 복도, 階段이 複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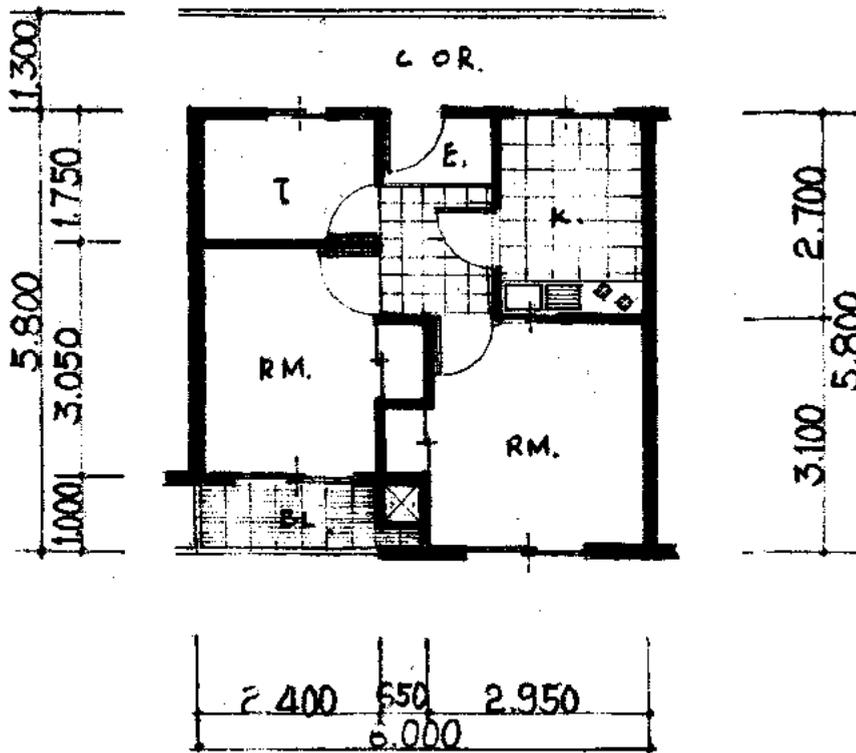


트াই틀 入口가 玄關쪽으로 나고 廁房
이 위로 配置되었드라면
(片廊下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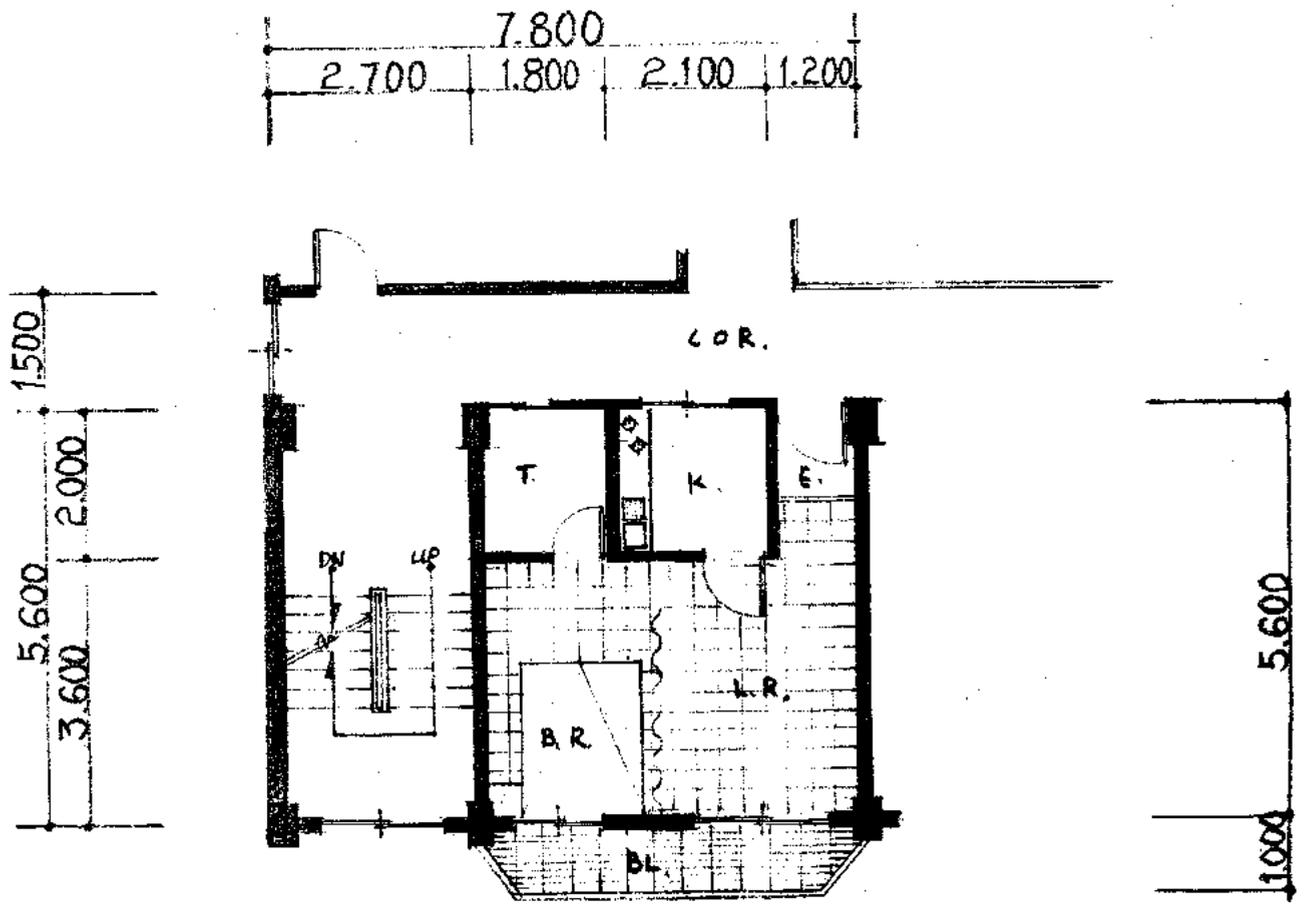
10명형 평면도
SCALE 1 : 100.
영동포 구로동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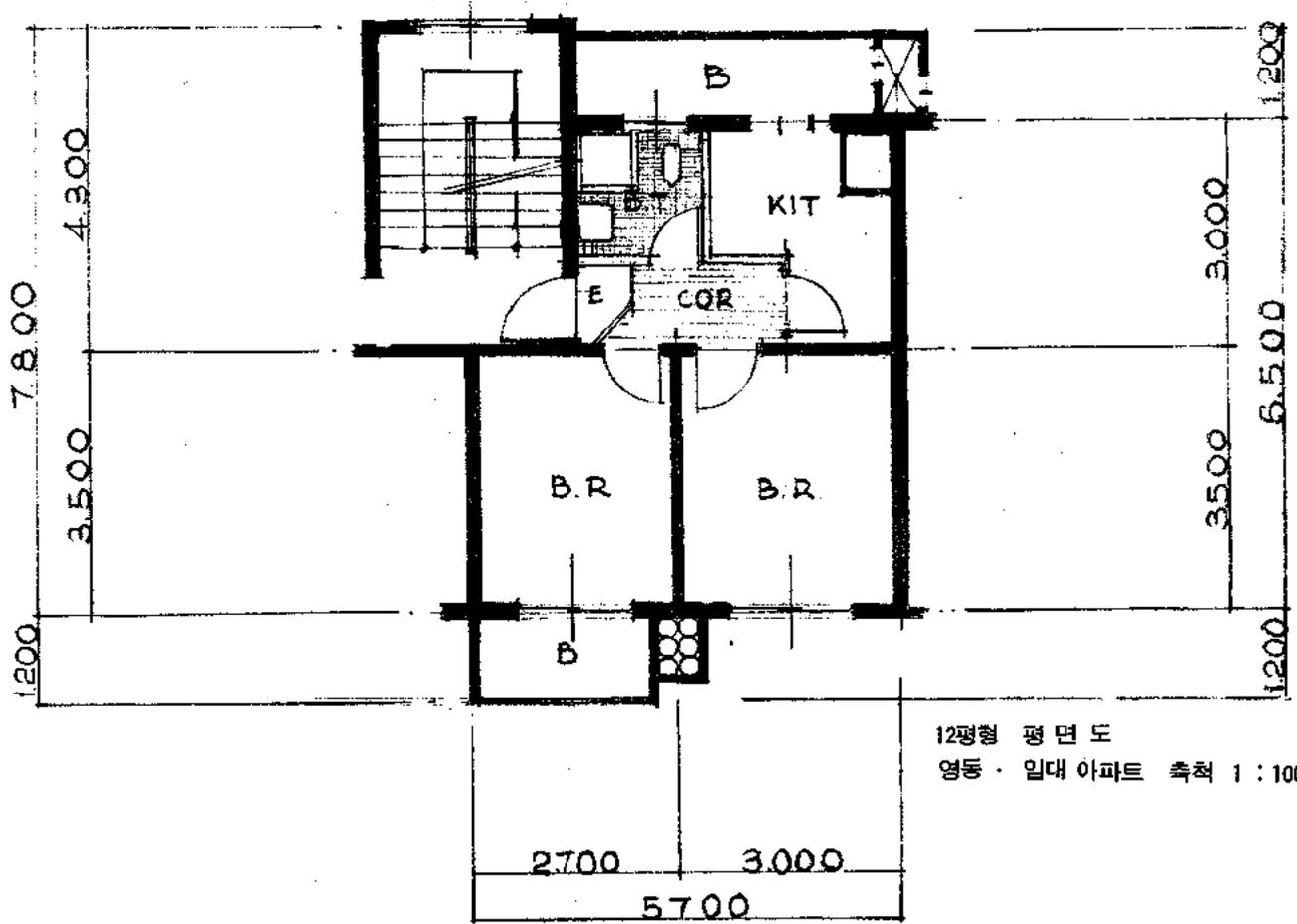
家具配置가 考慮되었더라면
 11평형 평면도
 SCALE 1 : 100
 한국트러스티빌 사원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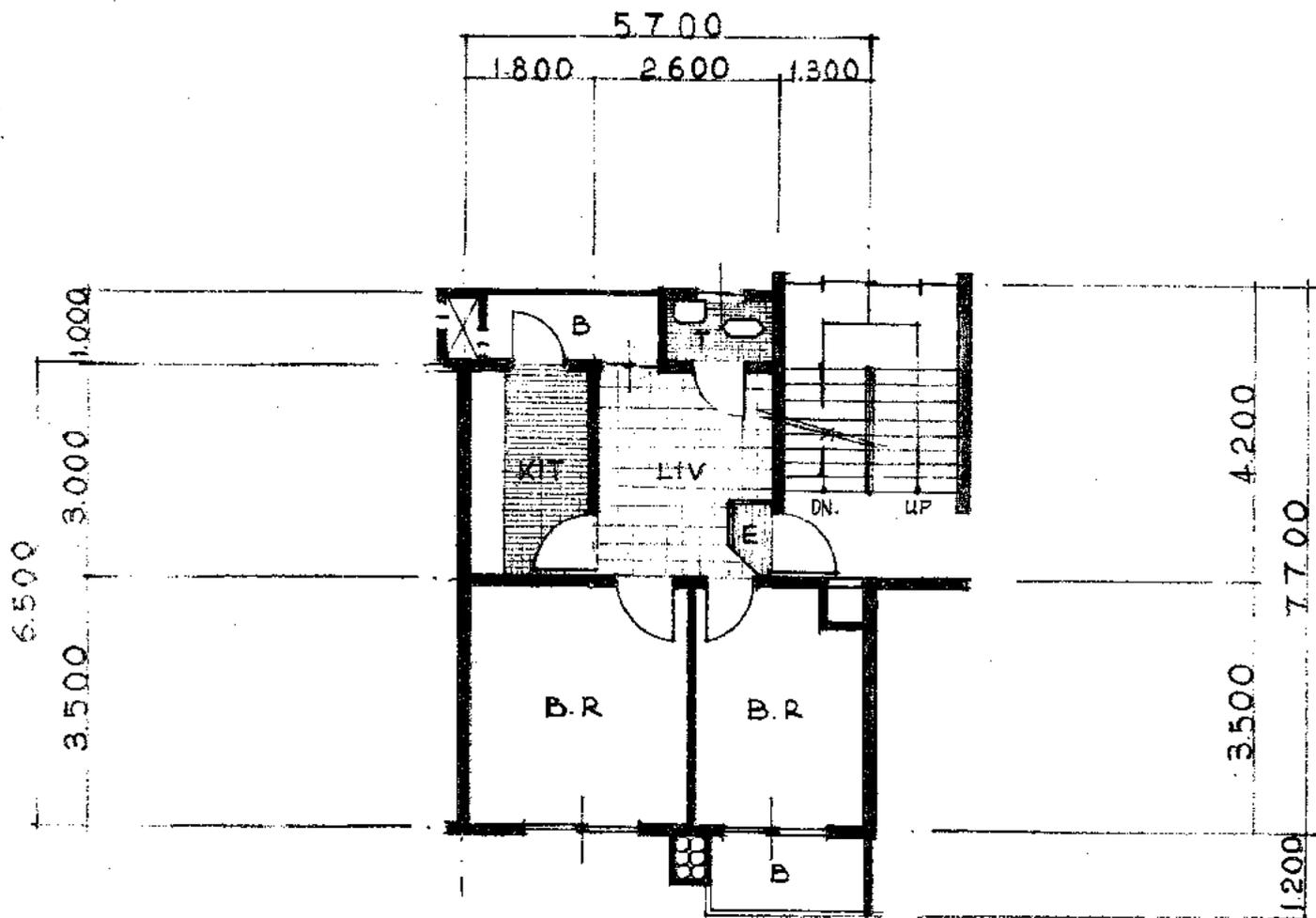
11평형 평면도
 SCALE 1 : 100
 공무원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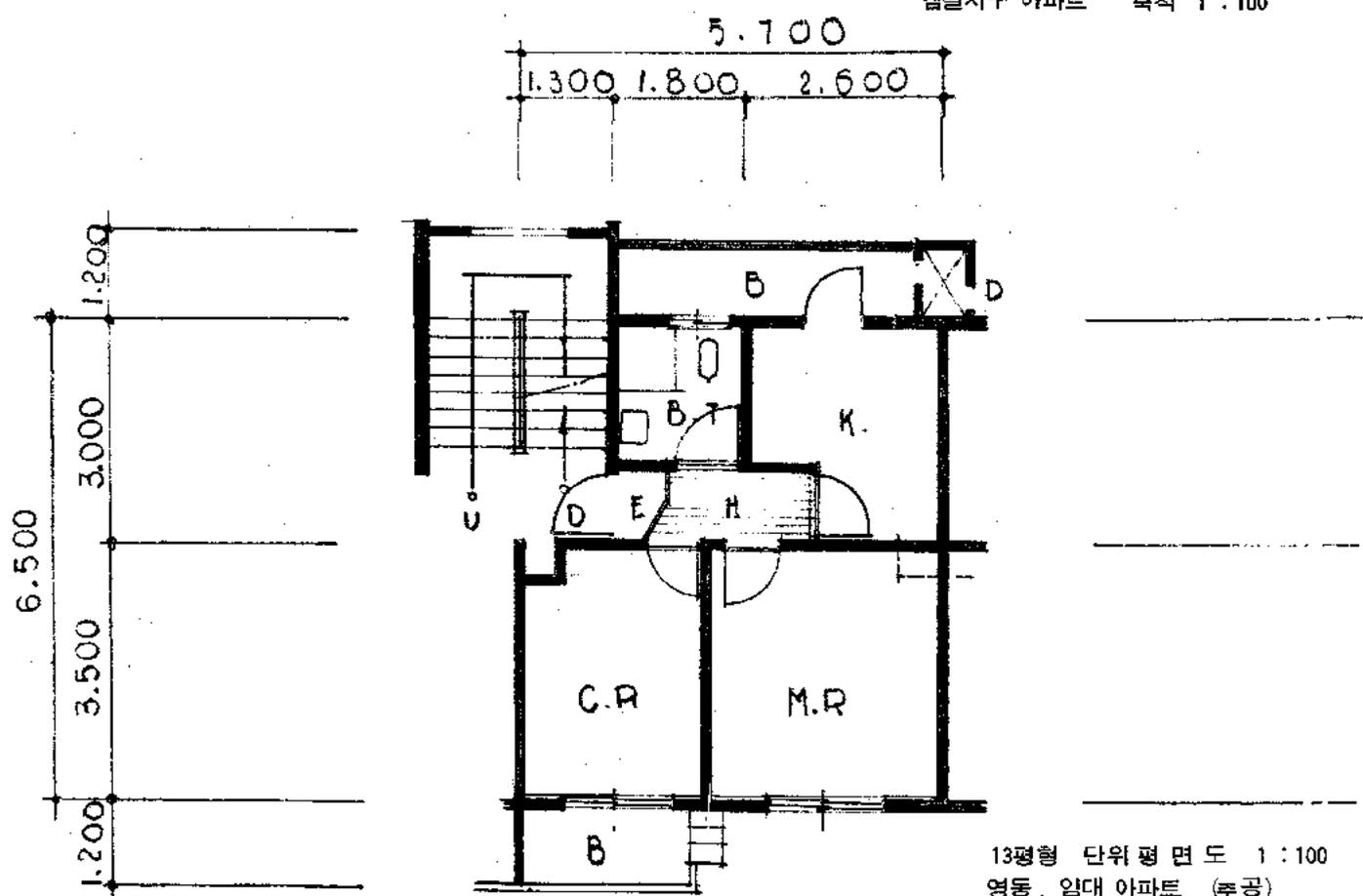
11평형 평면도
SCALE 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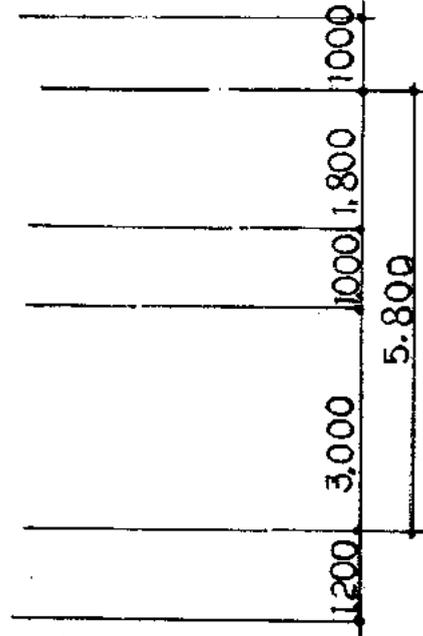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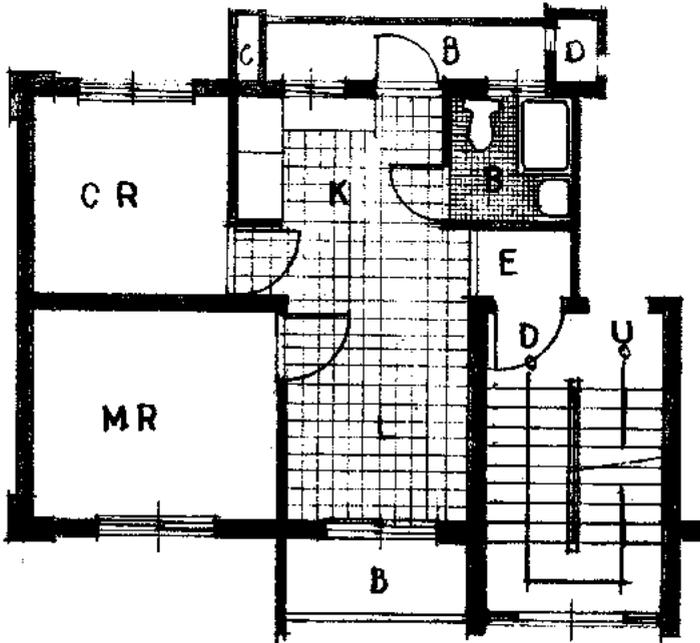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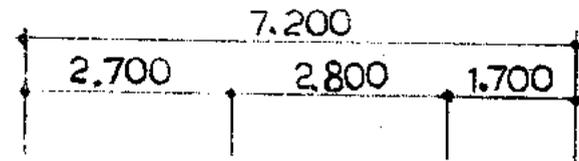
12평형 평면도
영동 · 임대 아파트 축척 1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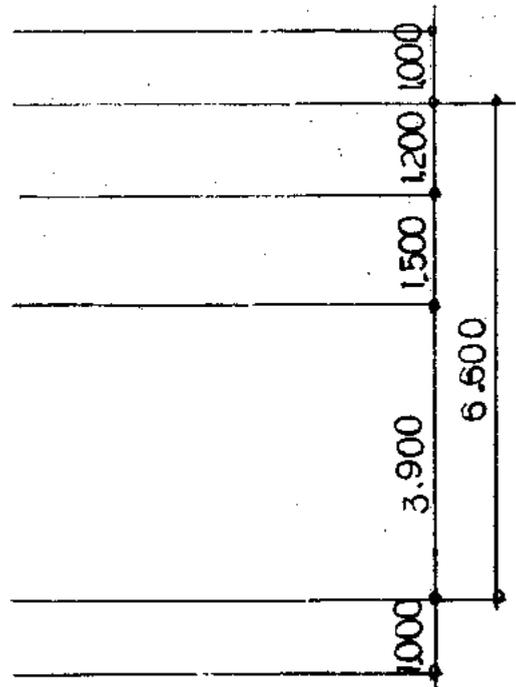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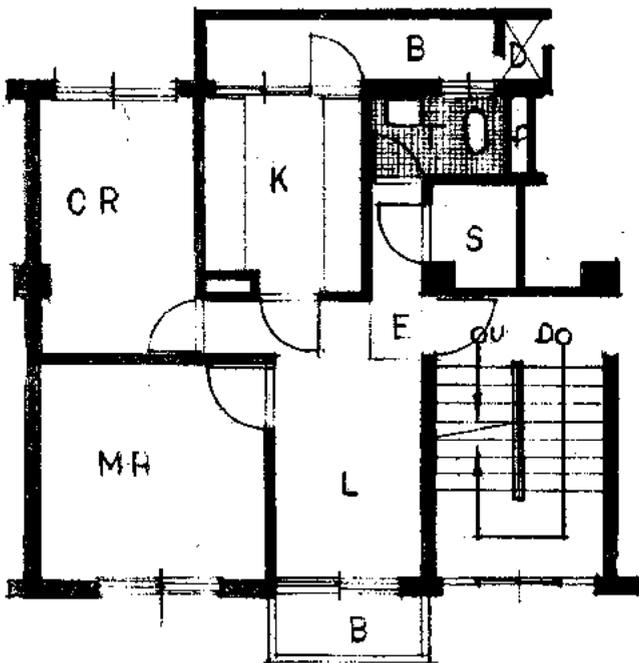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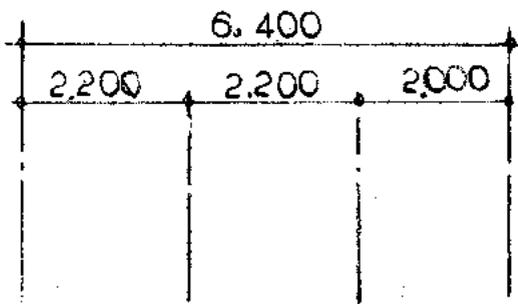
13평형 평면도
잠실지구 아파트 축척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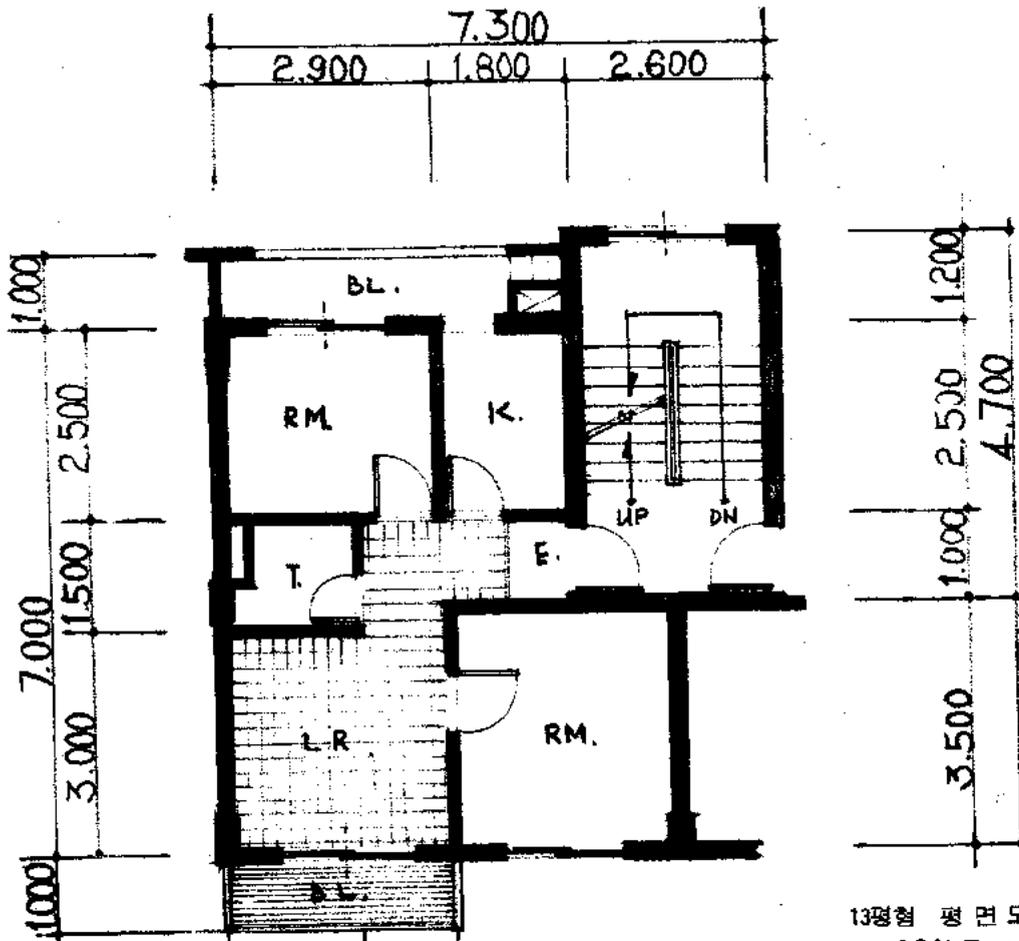
13평형 단위평면도 1:100
영동, 임대 아파트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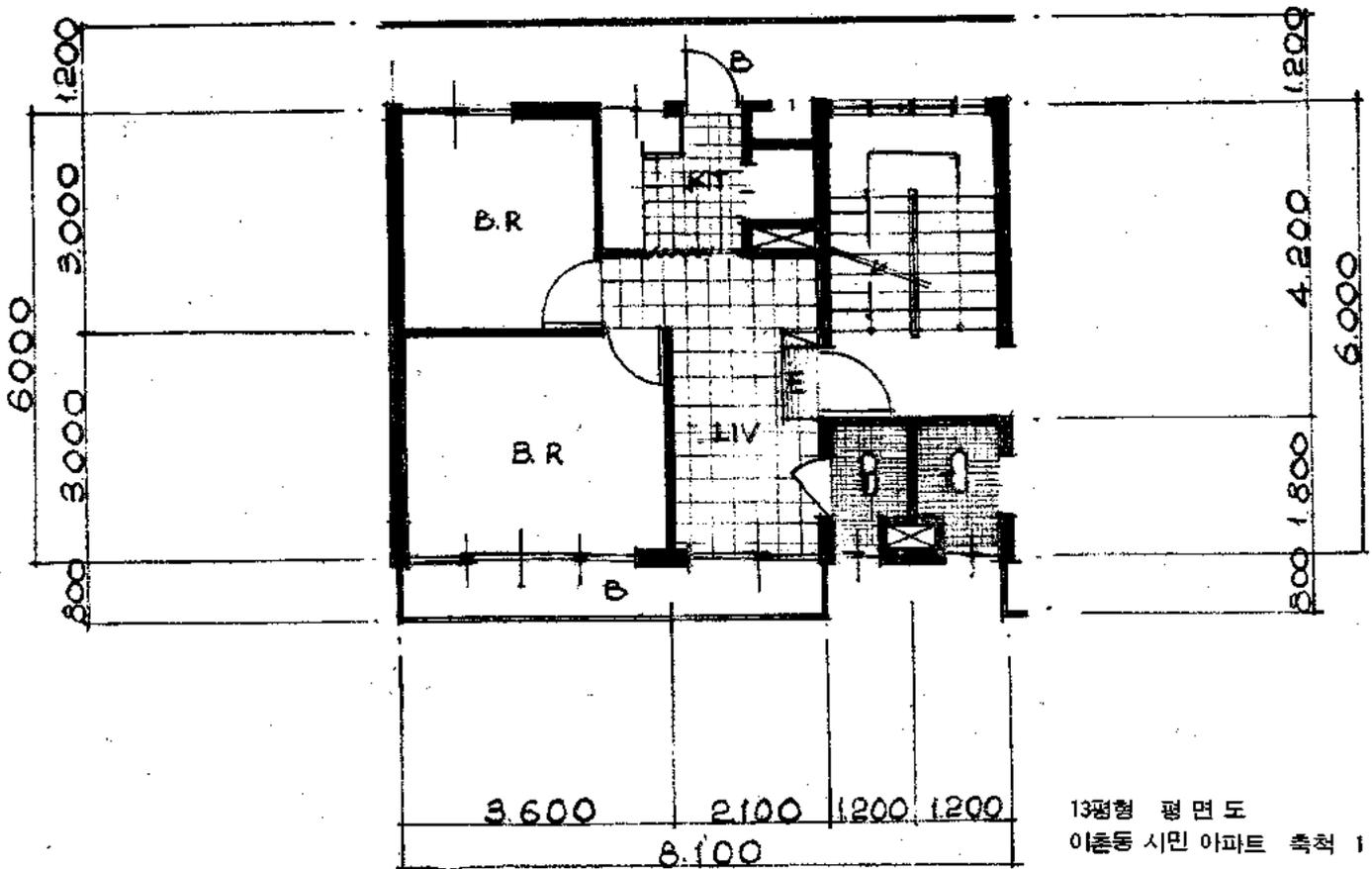
13평형 단위 평면도 1:100
영등포구 화곡동 서민아파트



13평형 단위 평면도 1:100
공업단지 중업원 아파트



13평형 평면도
SCALE 1 : 100
오신교역 종업원 아파트



13평형 평면도
이랜드 시민 아파트 층호 1 : 100

住宅建設促進法中改正法律

대통령 박정희

197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최규하
서리 김재규
국무위원 김재규
건설부장관

● 法律第2 853 號

住宅建設促進法중改正法律

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條 (住宅建設計劃樹立 등) ①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發하는 바에 따라 住宅에 관한 基本政策, 長期建設計劃 및 年次別 計劃을 樹立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建設部長官은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年次別計劃에 따라 每年 國民住宅의 建設計劃 및 資金運用指針을 作成하여 經濟企劃院長官과 財務部長官의 協議를 거쳐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및 韓國住宅銀行에 示達하여야 한다.

③ 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大統領令이 發하는 바에 따라 住宅建設計劃을 樹立하여 每年 4月 30日까지 建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第2條 第3號의 事業主体는 住宅建設長 短期計劃을 効率的으로 樹立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發하는 바에 따라 每年 住宅에 관한 調査를 實施하여야 한다.

⑤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事業主体의 범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6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住宅銀行이 國民住宅債券을 發行하고자 할 때에는 第3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樹立된 長期建設計劃에 맞추어 發行額數를 定하되,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13條 第1項 중 “第3條”를 “第3條 第2項”으로 한다.

第17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條의 2 (土地收用法의 準用) ① 事業主体 (第2條 第3號의 기타의 事業者를 제외한다)가 國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土地나 土地에 定着한 物件 및 그 土地나 物件에 관한 所有權 이외의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 등을 收用·사용함에 있어서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準用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收用法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 인정으로 본다. 다만, 裁決申請은 土地收用法 第17條 및 同法 第25條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事業計劃의 承認을 함에 있어서 承認 받은 住宅建設事業期間내에 할 수 있다.

第18條의 題目 “(事業計劃의 承認)”을 “(事業計劃의 承認 및 建築許可 등)”으로 하고, 同條 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 第4項 및 第5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① 事業主体가 國民住宅을 建設하거나 國民住宅을 建設하기 위한 土地造成事業을 하고자 할 때

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事業計劃을 作成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事業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建設部長官이 정하는 경미한 事業計劃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事業主体(國家 및 大韓住宅公社를 제외한다)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고자 할 때에는 管轄市長(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를 經由하여 이를 申請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事業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建築法 第5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協議 또는 承認과 都市計劃法 第4條·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承認 또는 認可 및 同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建設部長官이 國家 또는 大韓住宅公社인 事業主体에 대하여 第1項의 承認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部·處·廳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 (分讓價格 등의 承認) 事業主体는 國民住宅의 分讓價格 또는 家賃을 당해 國民住宅의 建設에 所要된 實費를 基準으로 정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24條第2項중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削除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 (監督) ① 建設部長官은 事業主体가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 免許 또는 承認의 取消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①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事業主體가 이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경우에는 工事의 中止 등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31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建設部長官·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法에 의한 免許 또는 承認을 받은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에 출입하여 필요한 檢査 및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第38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에 第4號 및 第5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거나 承認받은 價格을 초과하여 分讓 또는 賃貸한 者

4. 第30條 내지 第32條의 命令에 違反한 者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檢査 및 質問에 不応한 者

第6條第5項중 “第4項”을 “第1項 내지 第4項”으로 한다.

第7條第2項, 第16條第2項, 第17條第2項, 第18條第2項, 第19條第2項, 第31條第2項 및 第34條第2項중 “前項”을 각각 “第1項”으로 한다.

第17條第3項, 第18條第3項, 第19條第3項 및 第24條第3項중 “前項”을 각각 “第2項”으로 한다.

第17條第4項 및 第19條第4項중 “前項”을 각각 “第3項”으로 한다.

第13條第5項중 “前項”을 “第4項”으로 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경과措置) 이法 施行전에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承認을 申請한 者에 대하여는 同條 第5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에너지 소비절약표어

에너지는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들껴서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外화지를 막아내자.
너도나도 걸기운, 절약되고 건강준다.

海外建設促進法

◎ 法律第 2,855 號

海外建設促進法

第 1 條 (目 的) 이 법은 海外建設을 促進하여 海外建設을 振興하고 海外建設工事的 適正한 施工을 기하게 함으로써 國際收支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海外建設工事”라 함은 海外에서 兪注되는 土木·建築 기타 工事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것을 말한다.
2. “海外建設用役”이라 함은 海外建設工事的 調査·計劃·設計·監理·諮問 기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用役을 말한다.
3. “海外建設業”이라 함은 “都給·下都給” 기타 名稱 如何에 불구하고 海外建設工事 또는 海外建設用役(이하 “海外工事”라 한다)을 都給받는 營業을 말한다.

第 3 條 (他法과의 關係) 海外建設業에 關하여 이 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建設業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條 (海外建設業의 免許) ① 海外建設業을 營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營業의 種類別로 建設部長官의 免許를 받아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建設業法에 의하여 建設業免許를 받는 者
2. 技術用役有成法의 規定에 의한 技術用役業 登錄을 받은 者 및 建築士法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登錄을 한 者
3. 海外建設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

③ 建設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한 때에는 이를 官報에 公告하여야 한다.

④ 政府投資機關 豫算會計法의 適用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機關은 第 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海外建設業을 할 수 있다.

第 5 條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 第 4 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이 될 技術能力·資本金(個人인 경우에는 財産을 말한다. 이하 같다)·施設·裝備 또는 工事実績등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6 條 (受注擔當會社의 設立)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또는 第 4 條第 2 項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가 單獨 또는 共同으로 出資하여 海外工事의 受注(工事의 施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業務만을 擔當하는 法人(이하 “受注擔當會社”라 한다)을 設立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할 수 있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受注擔當會社에 對한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은 第 5 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建設部長官은 受注擔當會社에 對하여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 기타 支援을 할 수 있다.

第 7 條 (手数料)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免許 手数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 8 條 (海外建設業者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을 수 없다. 法人에 있어서는 그 任員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또한 같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申請日 現在 계속하여 3 年 이상 國內에 居住하지 아니한 者. 다만 業

務上一時的으로 海外에出張한 期間은 国内居住期間으로 본다.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9條第2號 내지 第7號의 事由로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되고 그 取消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完了되거나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國家保安法·反共法 또는 刑法 第87條 내지 第104條의 2의 罪를 犯하여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者로서 刑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裁判의 失效宣告를 받지 아니한 者

② 海外建設業者가 第1項의 事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免許의 效力은 喪失한다.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事由에 해당하는 때에는 1月이 내에 그 任員을 改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第9條 (海外工事의 都給許可) ①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都給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海外建設業者가 外國에서 海外工事를 都給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時急을 요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의 許可를 받아 海外工事를 都給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한 在外公館長은 建設部長官에게 遲滯없이 보고하여 追認을 얻어야 한다.

第10條 (許可의 통지)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工事의 都給을 許可 또는 追認한 때에는 遲滯없이 이를 관계 기관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통지를 받은 관계機關의 長은 필요 한 協助나 支援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海外工事都給許可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追認을 받을 수 없다.

1. 政府機關·公共團體 또는 外國機關으로부터 出入停止處分을 받고 解除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부실한 事由가 있는 者
2. 第19條第4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날로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工事의 都給許可取消處分을 받은 후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第12條 (新規 海外市場開拓者에 대한 都給許可의

優先) 海外建設業者가 새로운 海外市場을 開拓하여 당해 地域의 海外建設振興에 寄與한 功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地域에서의 海外工事의 都給을 다른 海外建設業者에 優先하여 許可할 수 있다.

第13條 (海外工事受注活動計劃의 申告)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事를 受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受注活動計劃을 미리 建設部長官과 당해 地域의 大韓民國在外公館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4條 (調整命令) ① 建設部長官은 同一한 海外工事に 대하여 2人 이상의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에 受注競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이나, 勸告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勸告 또는 命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機關의 意見을 들을 수 있다.

第15條 (合作施工 등의 勸告)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의 國際競爭力의 強化와 大規模工事의 受注 및 施工을 위하여 海外建設業者 2人 이상의 合作을 勸告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作施工을 하는 海外建設業者에 대하여는 第6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6條 (進出地域 또는 工事都給의 制限) ①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 相互間의 過當競爭의 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家別 또는 地域別로 進出業者의 數를 制限할 수 있다.

② 建設部長官은 海外工事의 健全한 施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海外建設業者가 都給받을 수 있는 一件工事의 限度額과 重複하여 都給 또는 施工할 수 있는 總限度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制限할 수 있다.

第17條 (海外建設獎勵補助金の 交付) 正府는 海外建設을 獎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新規市場開拓費, 海外市場調査費, 海外에 증시시킬 要員의 訓練費 등의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算의 범위내에서 補助할 수 있다.

第18條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支援) 海外建設業者에 대한 正府支援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事項의 外에는 海外建設業者를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業者로 본다.

第19條 (海外建設業의 免許取消 또는 營業停止)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停止処分을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基準에 未達하게 된 때
2. 詐偽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때
3. 海外工事의 粗雜施工·遲延·부당한 勞賃拂拂로 顯著하게 國威를 損傷시킨 때
4. 落札후 正當한 事由없이 契約을 포기한 때
5. 海外工事都給許可없이 海外工事を 受注한 때
6. 海外工事都給許可를 받고 正當한 事由없이 入札에 不參與으로써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進出에 支障을 招來한 때
7.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때
8. 正當한 事由없이 다른 海外建設業者의 海外工事都給을 방해한 때
9. 海外建設業의 免許를 받은 후 3年 이내에 海外工事都給実績이 없거나 계속하여 3年 이상 海外工事を 都給받지 아니한 때

第20條 (海外工事의 都給許可의 取消) 建設部長官은 海外建設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1. 海外建設業의 免許가 取消된 때
2. 詐偽 또는 不正한 方法으로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때

第21條 (施工 및 經營實態의 調査 등) ①建設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海外建設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財産 등 關係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으며,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經營實態 또는 海外工事의 施工狀況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 및 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報告義務) 海外建設業者가 海外工사를 受注하거나 施工하는 경우에는 그 受注活動 및 施工狀況에 關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23條 (海外建設設計圖의 樹立) 建設部長官은 每年 海外建設市場을 調査하여 翌年度 海外建設設計圖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24條 (免許取消된 海外建設業者의 계속工事) ①第8條第2項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免許의 效力이 喪失되거나 免許가 取消된者 또는 그 包括承繼를 한 者는 그 喪失 또는 取消 전에 締結한 都給契約에 의한 海外工사에 한하여

계속 施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工사를 계속하는 者는 당해 工사를 完成할 때까지 海外建設業者로 본다.

第25條 (罰 則) 海外建設業者가 故意 또는 業務上 重大한 過失로 海外工사를 粗雜하게 하여 工事의 竣工 또는 完成후 당해 工事의 瑕疵補修期間 내에 目的物에 重大한 損壞가 생긴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26條 (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海外建設業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建設業을 營爲한 者
2. 海外工事都給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外工사를 都給받는 者
3. 不正한 手段으로 海外建設業의 免許 또는 海外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者
4.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한 者

第27條 (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命令에 違反하거나 調査를 拒否·방해 또는 忌避한 者
2. 第13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보고義務를 태만히 하거나 欺偽로 報告한 者
3.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요구하는 資料를 欺偽로 作成하거나 不応한 者

第28條 (報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自然人的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自然人的 業務에 關하여 第25條 내지 第2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自然人에 대하여도 해당 各本條의 罰金刑을 科할 수 있다.

附 則

- ①(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建設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법에 의한 海外建設業의 免許와 당해 工事의 都給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에 행한 行爲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建設業法의 종전 의 規定에 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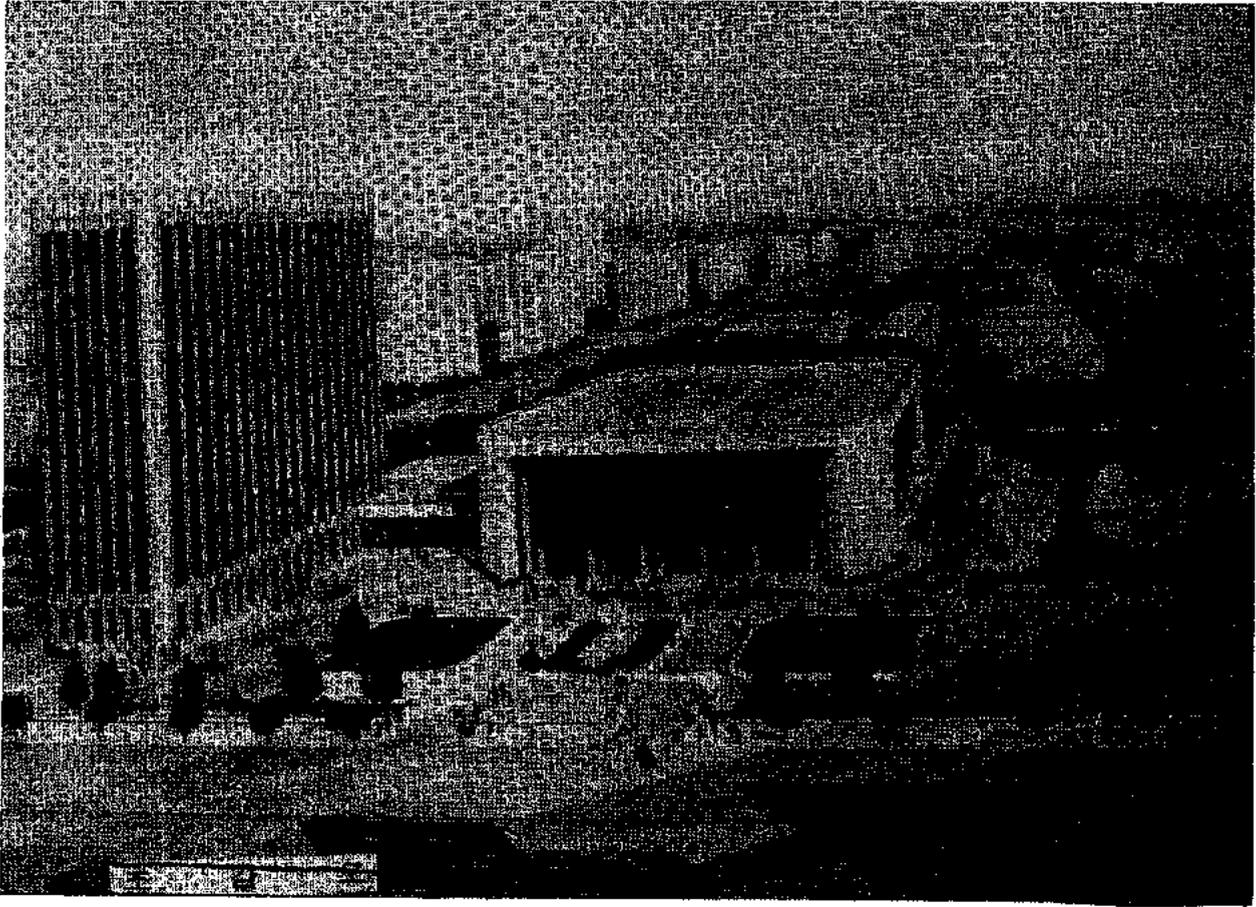
證卷去來所 懸賞應募作品

審査委員名單：

- 주 원 경제과학 심의회 상임위원
- 김 희 춘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 김 정 수 연세 대학교 건축과 교수
- 함 성 권 한양대학교 건축과 교수
- 김 수 근 국민대학교 조형학 부장
- 이 상 순 철도청 건설국장
- 오 희 영 청와대 조경담당 비서관
- 이 정 덕 고려대학교 건축과 교수
- 강 명 구 중앙대학교 예대 교수
- 윤 도 근 홍익대학교 건축과 교수

應募者：

- 이 승 우 綜合建築研究所
- 오 동 석 新潮建築研究所
- 나 상 기 弘益大學
- 이 호 진 三元社建築研究所
- 원 정 수 一洋建築研究所
- 윤 승 중 元都市建築研究所



조 감 도

이 승 우

설 계 개요

● 규 모

총 층 수 : 거래소 및 시장 지하 1층, 지하 5층
 증권회사 및 유관기관 지하 2층, 지상 14층

주차시설 : 옥내주차 30대 옥외주차 약 100대

● 면 적

대지면적 : 27,033³M² (8,192명)

건축면적 : 6,915⁸M² (2,095명)

연 면 적 : 거래소 및 시장 : 19,734²M²
 (5,980³명)

증권회사 및 유관기관 : 19,167⁵M²
 (5,808³명)

연결부 (강당, 식당등) : 2,130¹M²
 (645¹명)

계 : 4,0322⁷M²
 (12,434³명)

● 건 폐 율 : 25.5⁸% · 용 적 율 : 151.7⁹%



배치도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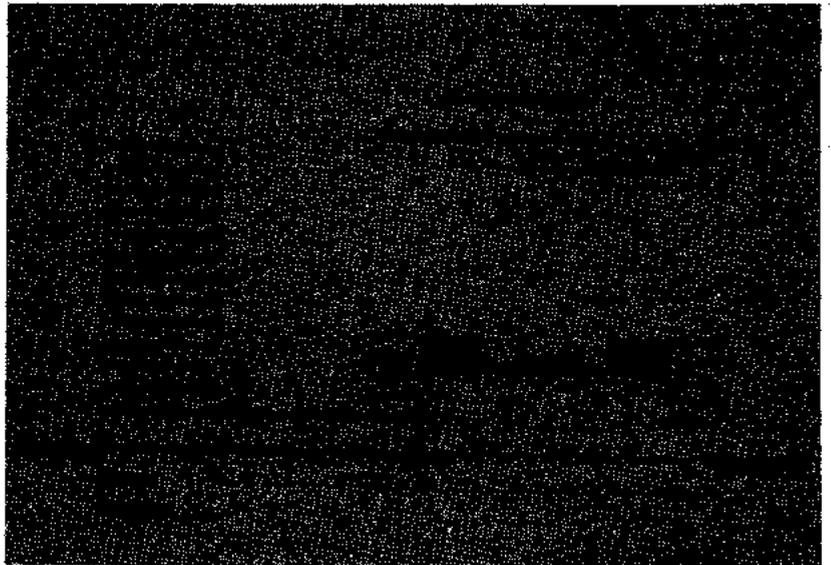
●**주요미감** : 외부, 퇴강석판 부치기, 케스트
 알미늄판 부치기에 발색 알미늄
 커튼월, 열선흡수유리 끼우기
 현관 로비 : 대리석 바
 닥, 벽, 특수천정
 일반사무실 : 비닐타일바
 닥 내부, 페인트벽, 흡음텍스천
 정
 시 장 : 특수바닥재,
 방음벽, 특수천정

●**구 조** : 철골철근, 콘크리트구조 ; 콘크
 리트 파월 및 케이슨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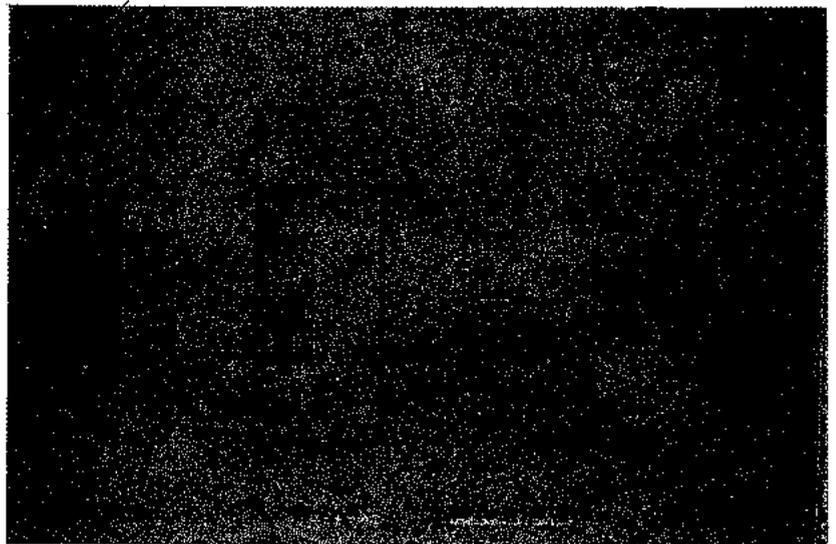
●**설 비** : 공기조화설비, 위생설비, 전기
 설비, 엘리베이터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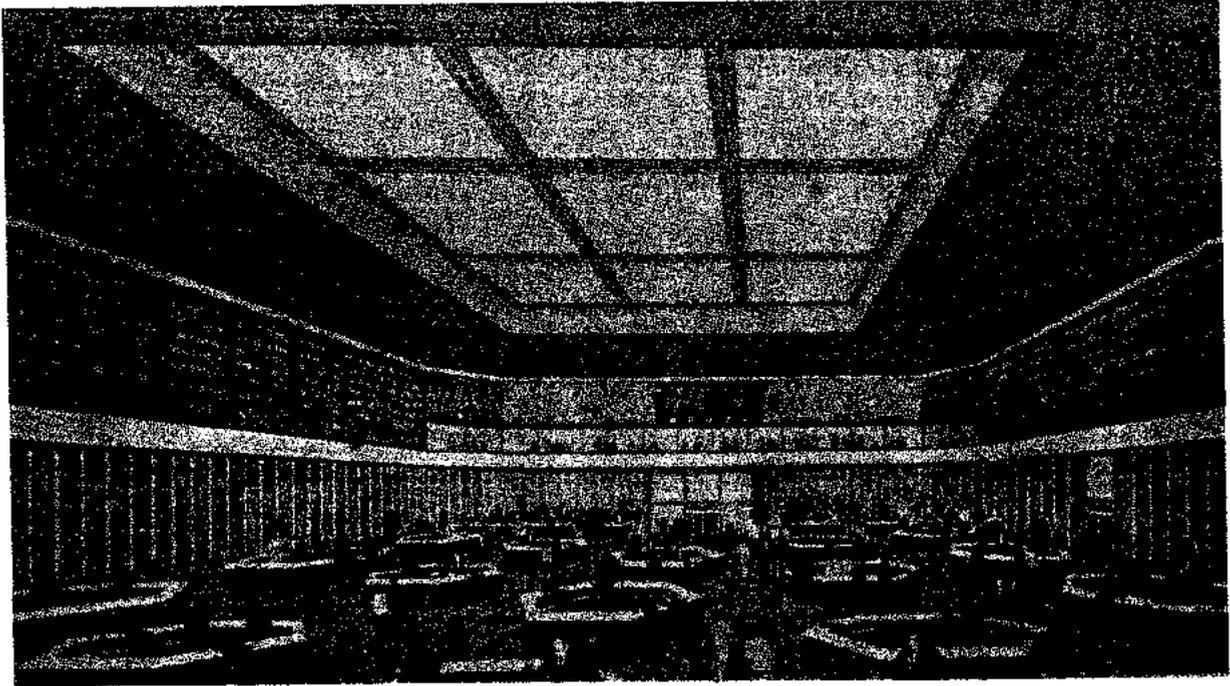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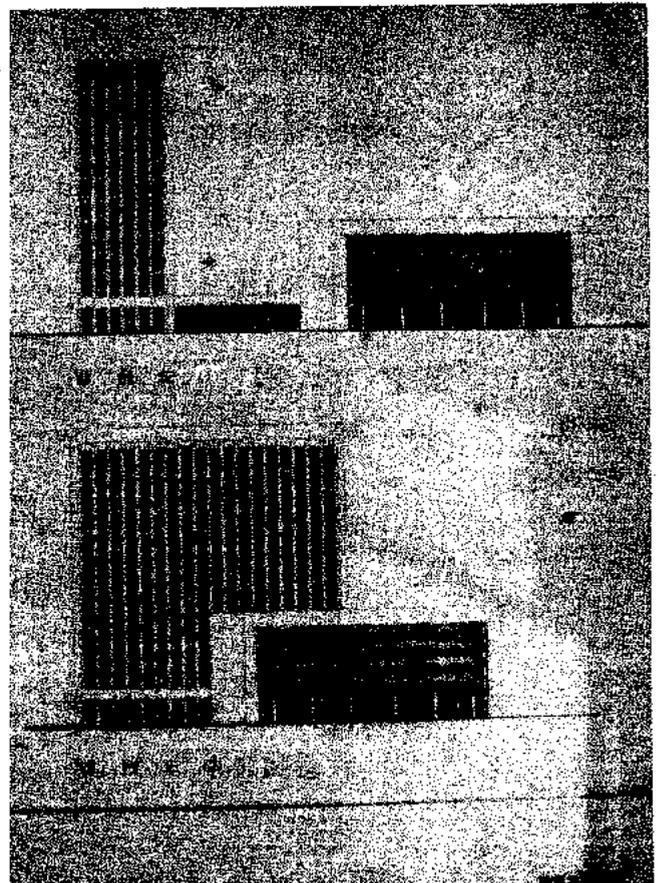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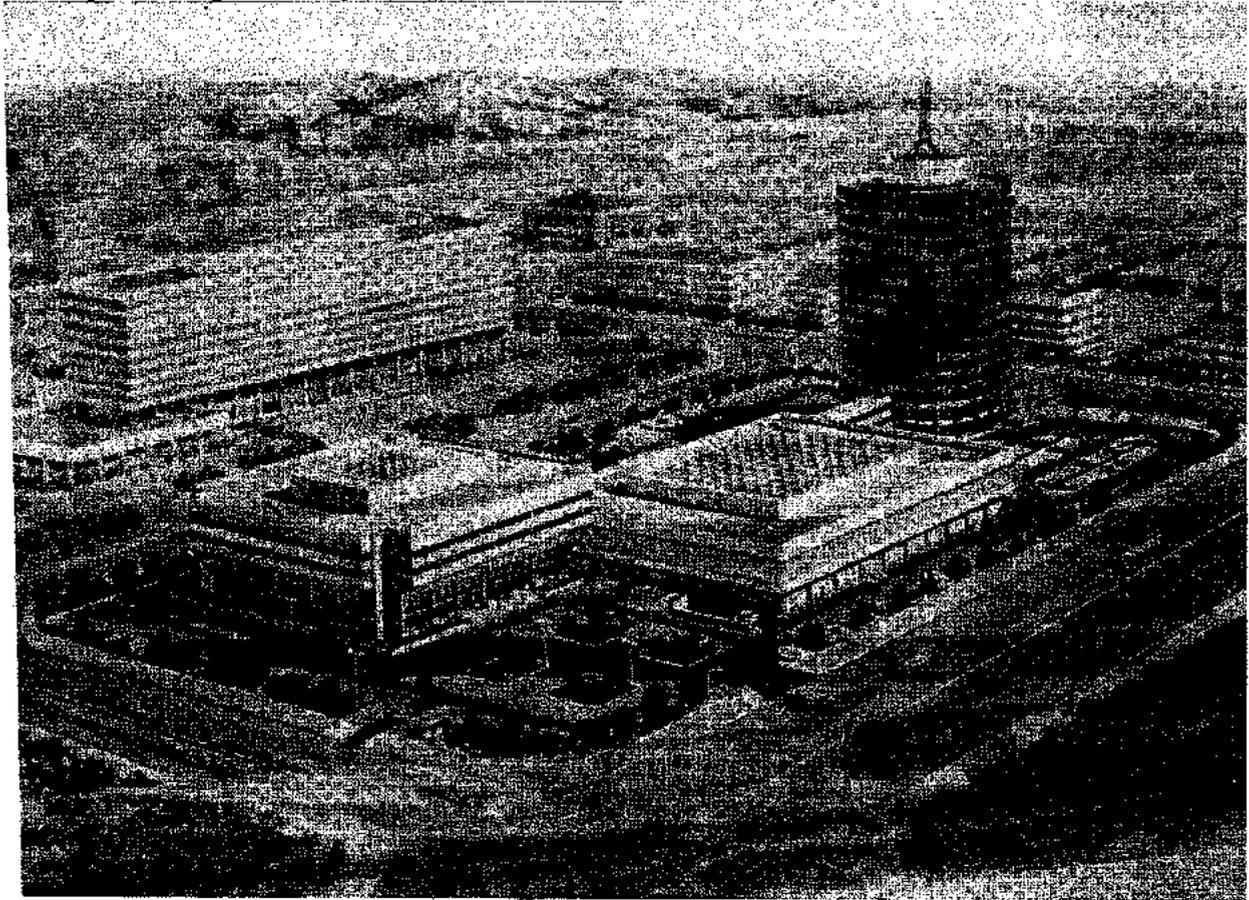




실내투시도



입면도 1·2



조 감 도

요 용 석

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6

대지면적 : 8,192평

구 조 :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

구성의규모 • 증권거래소 및 유관회사 사무부동

: 지하 1층 지상 5층

• 시장동

: 지하 1층 지상 3층

• 증권회사 및 유관회사 현업부동

: 지하 2층, 지상 15층

건 폐 율 : 2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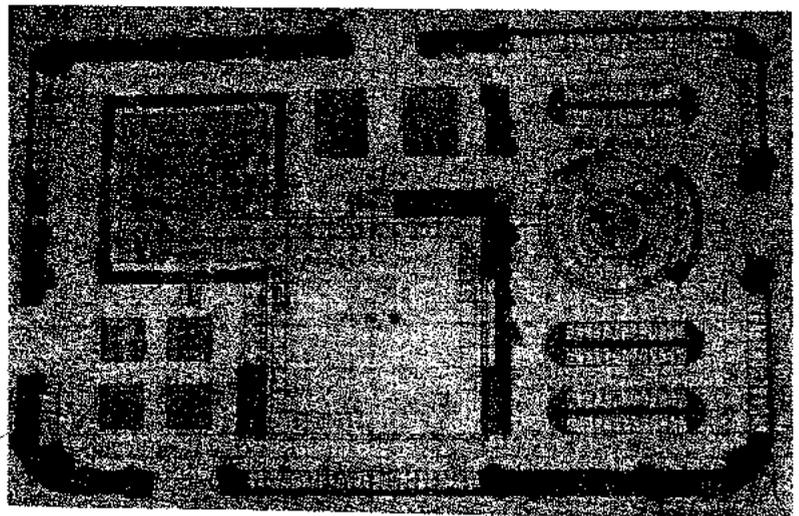
용 적 율 : 126.42%

기준층높이 :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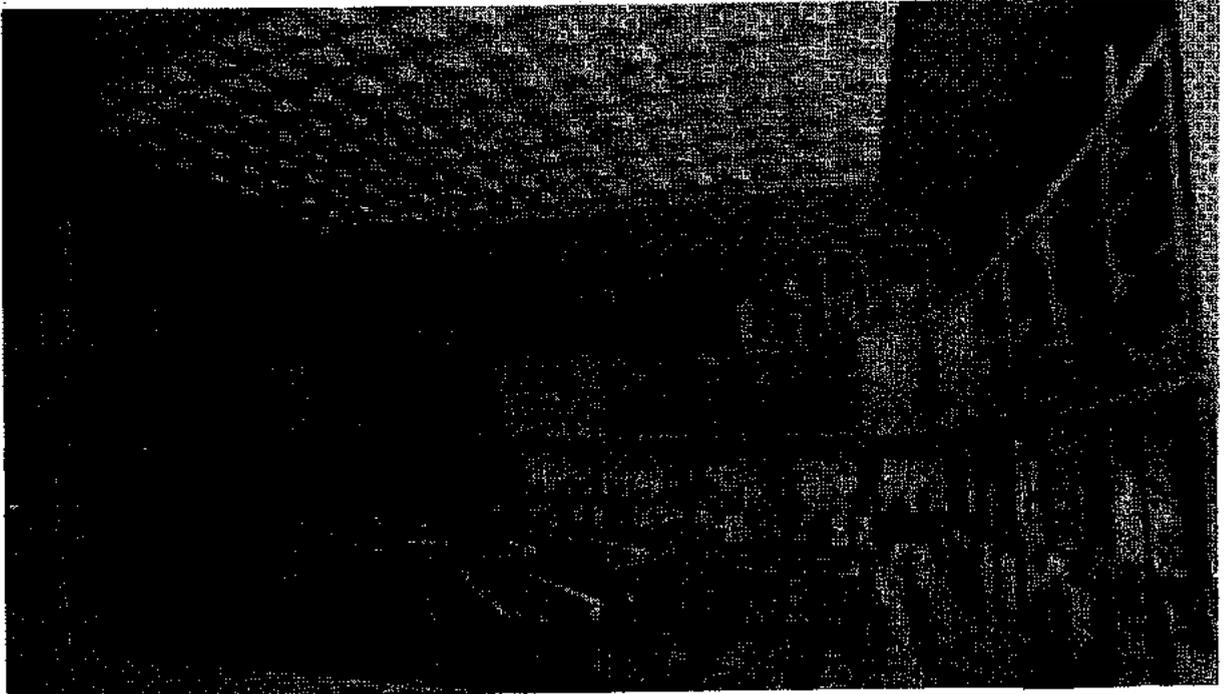
기준층천정높이 : 2.50%

건물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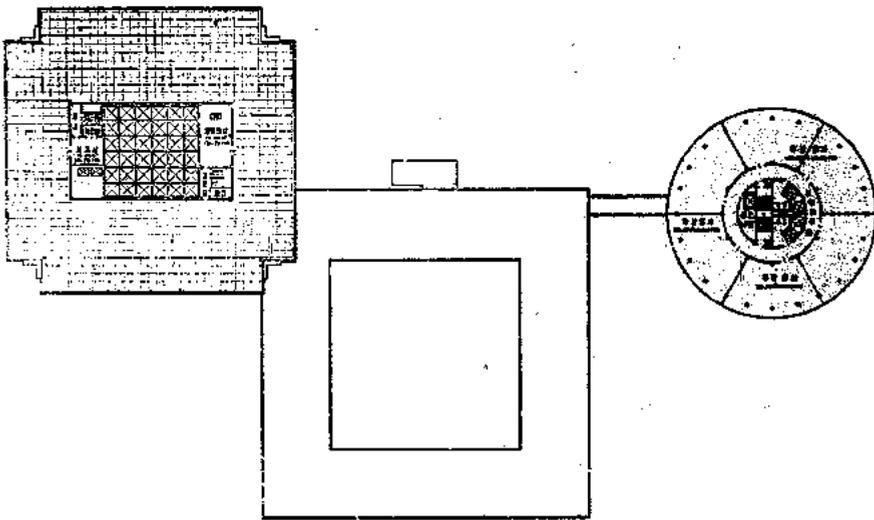
(옥탑층제외) 53.3M



조원계획도



실내투시도



기준층평면도

중단면도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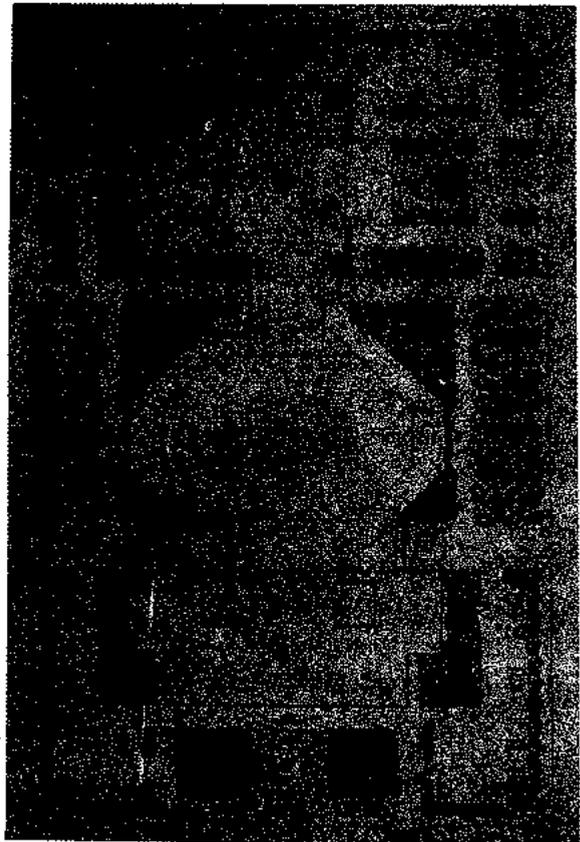
나 상 기

설 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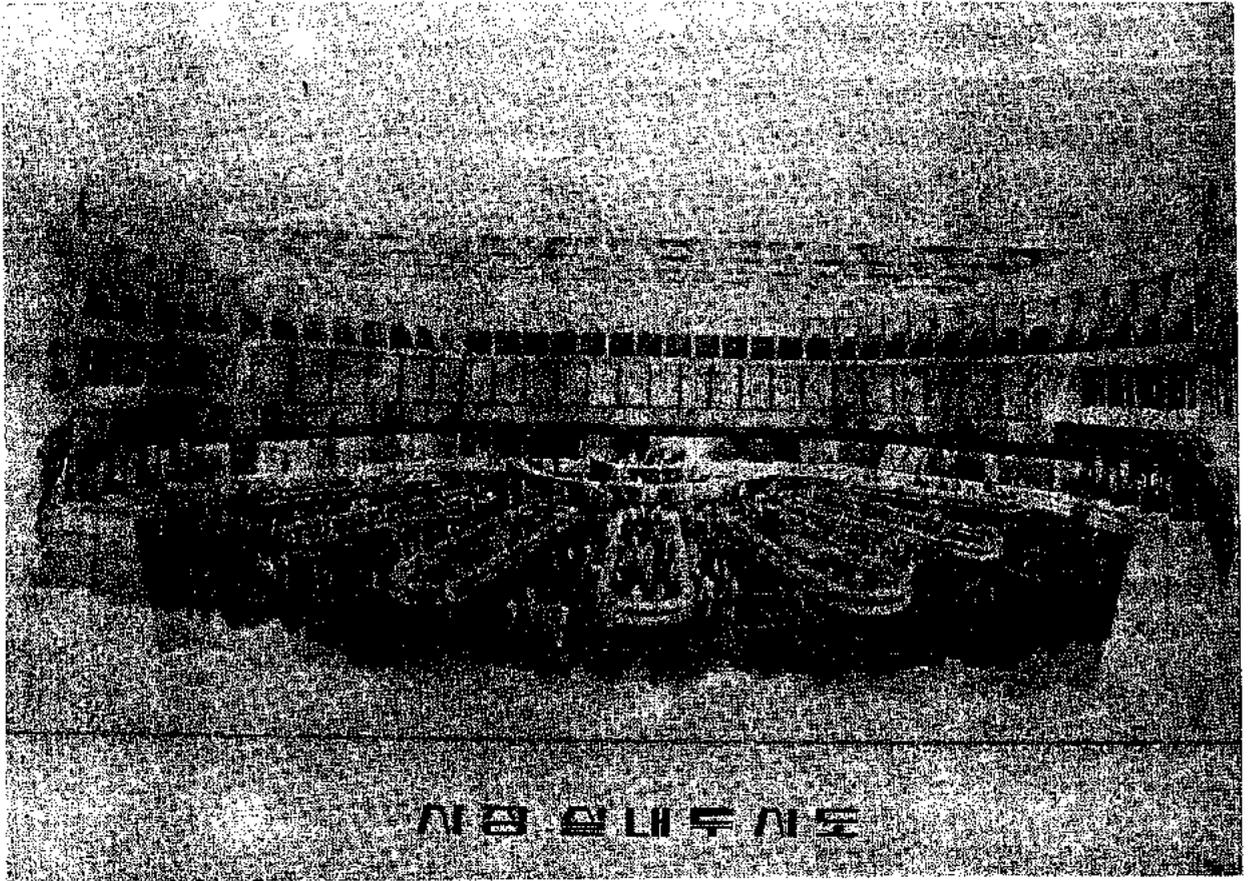
1. 대지면적 : 8,192평
2. 건축면적 : 2,907²평
3. 연 면 적 : 12,451²평
4. 층 수 : 지하 2층 지상 11층
5.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철골조
(시장부분)
6. 건 폐 율 : 35.38%
7. 용 적 율 : 151.98%

계 획개요

1. 기능별 동선 분리 (거래소, 시장, 증권회사)
2. 자연 채광 및 자연 환기의 100%활용 (특수실제외)
3. 경제적 구조로 인한 시공의 간편성과 공기의 단속
4. 유지 관리의 용이
5. 국산자재의 100%사용
6. 증권회사 (54개)간의 동등한 공간 배분
7. 완벽한 재해 방지 설비
8. 현대화된 E. D. P. S 및 통신시설, 기송관 설비



조원계획도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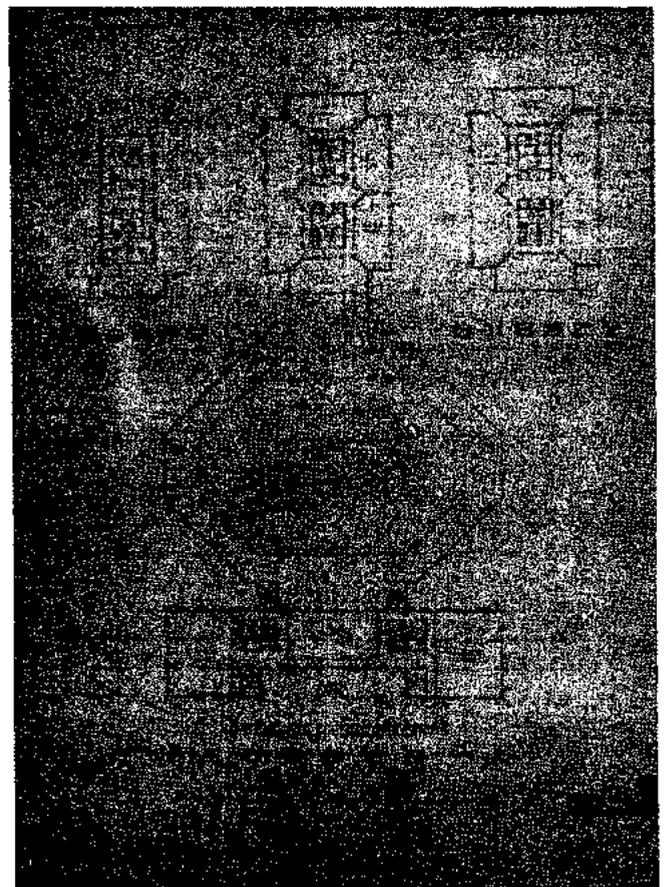
설비 개요

냉난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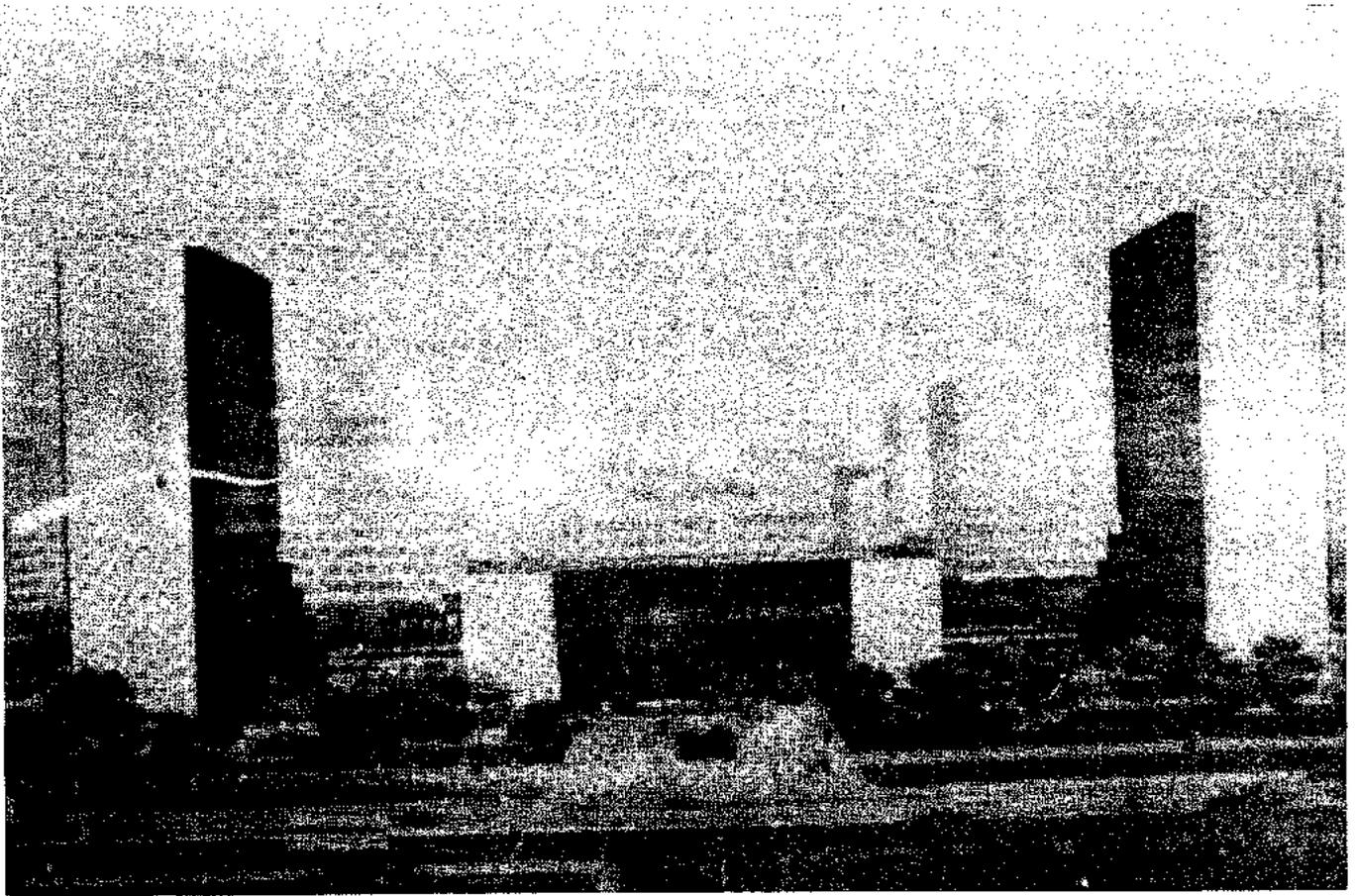
1. OFFICE 부분 : FAN COIL UNIT+ALL AIR SYSTEM
2. 시장, 강당, 금고부분 : ALL AIR SYSTEM
3. 식당, 은행부분: ALL AIR SYSTEM+CONVECTOR
4. E. D. P. S부분 : PACKAGED AIRCONDITI
ONER

소 화 설 비

1. 지하 기계 및 전기실 : Co₂설비
2. 지하주차장 : AIR FOAM 설비
3. 11층 : 스프링 롤라 설비
4. 3층이상부분 : 방수구설치
5. 건물전체 옥내 소화전 설치
6. 배연 설치 비
7. 옥외 소화전 설치 옥외 소화전



기준층평면도



조감도

이 호 진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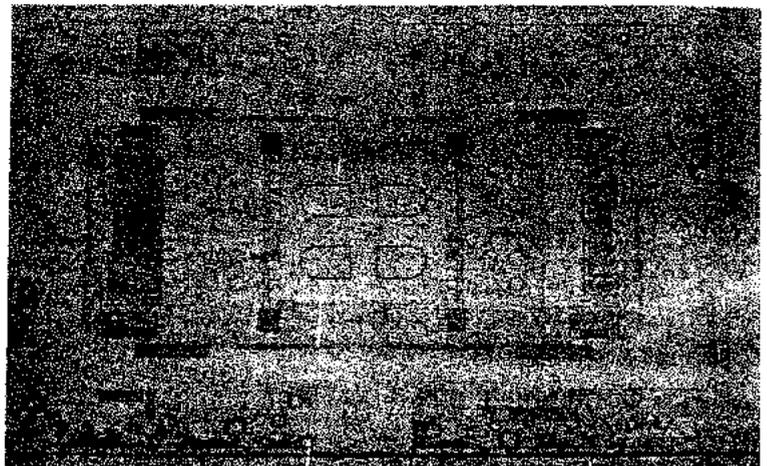
대지면적 : 27,033[㎡]M²

연면적 : 41,483[㎡]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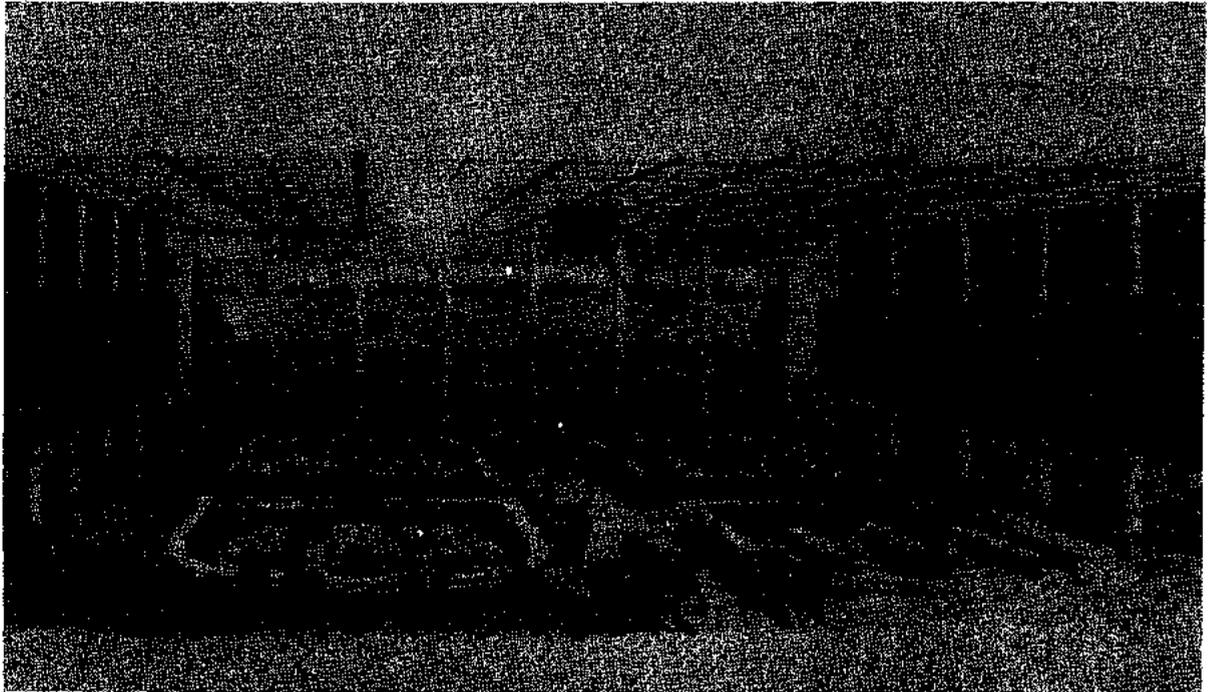
건축면적 : 8,341[㎡]M²

건폐율 :

용적율 : 153^㉔%



배치도 및 1층평면도



실내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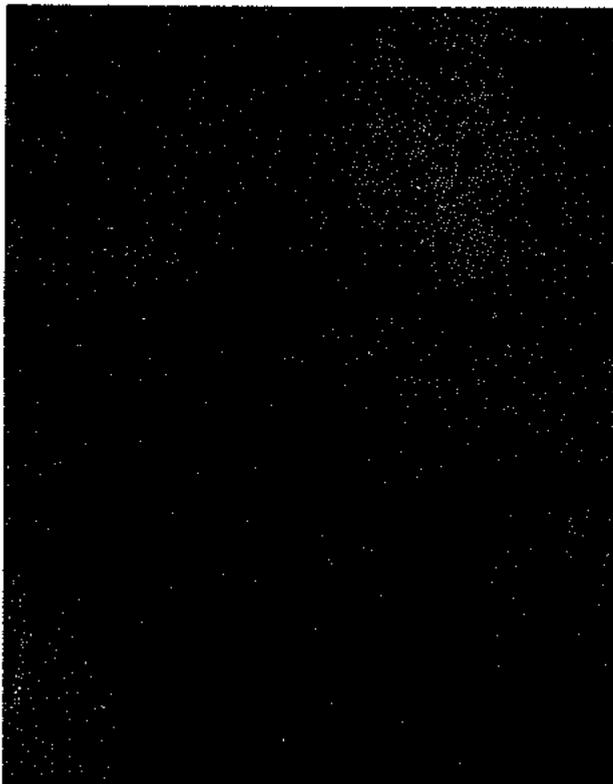
등별내용 : 거래소 등 : 거래소, 유관기관사무소
 시장 등 : 시장, 시장부속실
 유관기관 등 : 유관기관현업, 증권회사

계획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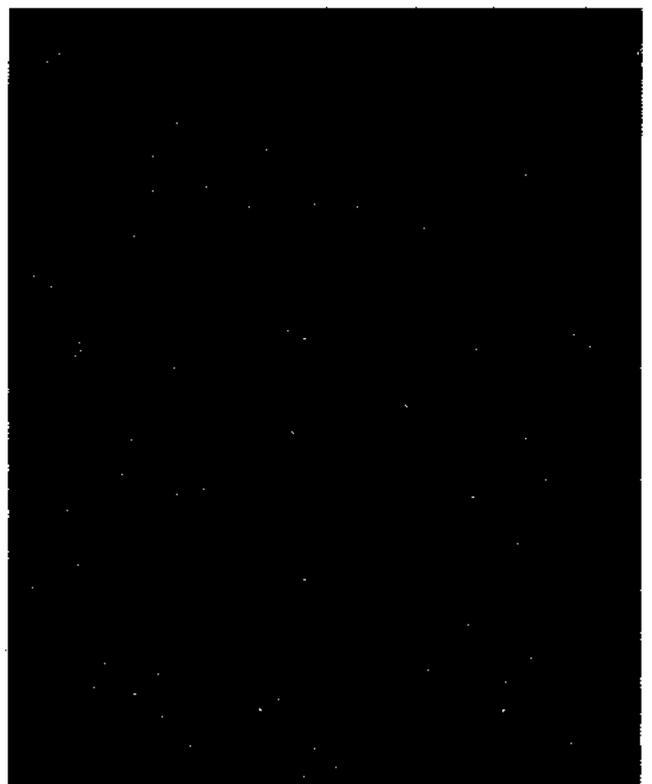
한국 유일한 증권센터로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 및 이미지 부각

여의도 미래 도시전판에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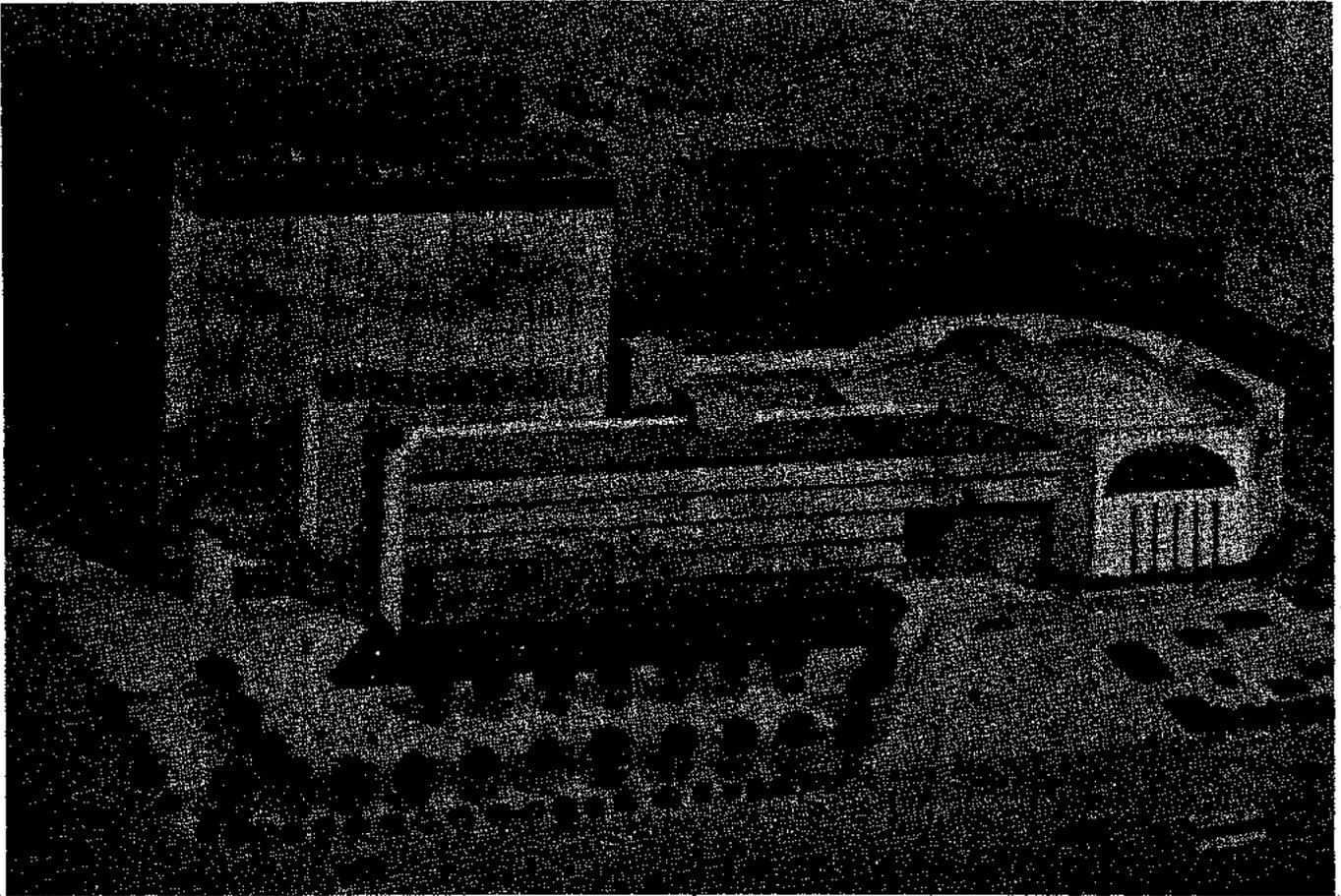
거래소, 시장, 유관기관의 기능에 따른 엄격한 분리 및 효율적인 연결
 거래 변화에 따른 기능 배분의 융통성
 증권협회 건물군과의 유기적인 연결
 현대적 조형미와 단일 매스감 구현
 쾌적한 육의환경조성, 자연채광, 통풍 일조의 최대이용
 시공 및 유지관리의 경제성 및 편리성



중단면도



기준층평면도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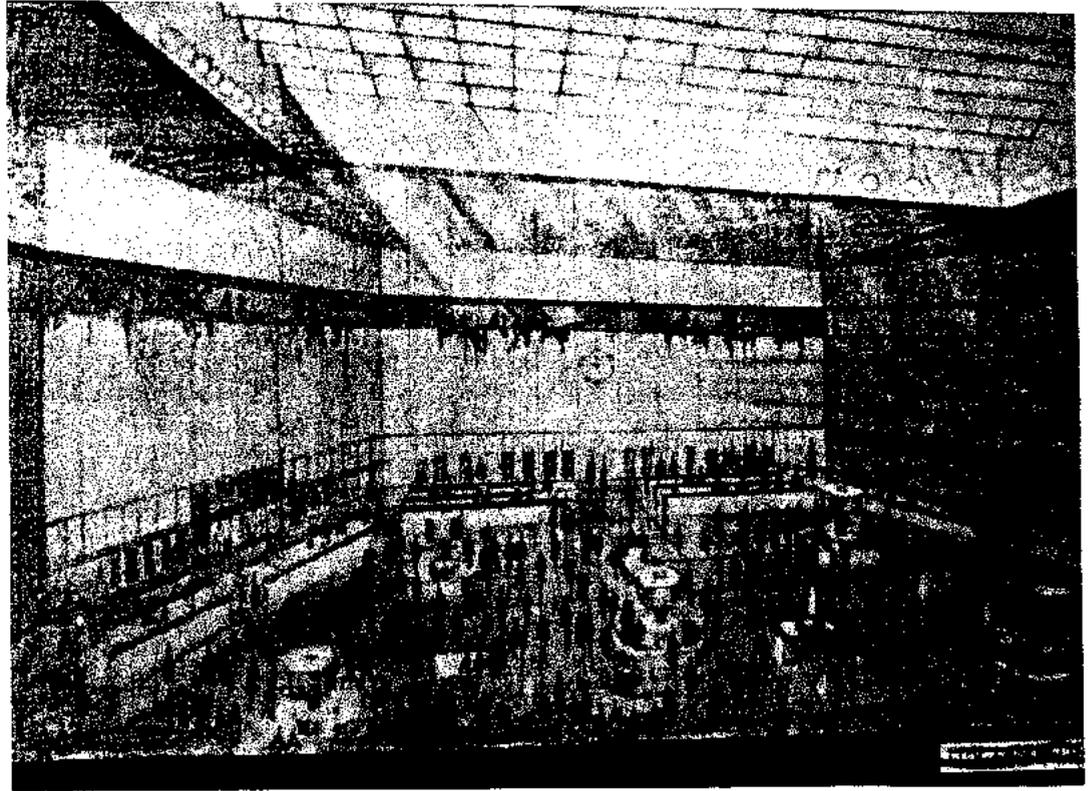
원 정 수

건 물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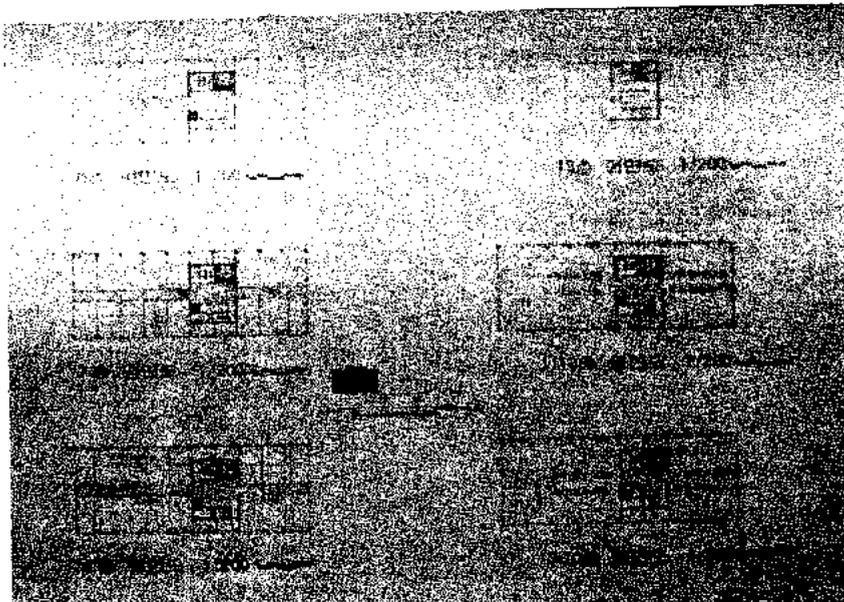
건축면적 : 3,675평
 건 폐 율 : 38.8%
 건물높이 : 52.7M
 연 면 적 : 12,510평
 용 적 율 : 153%
 층 수 : 지상 13층 지하 1층
 층 고 : 3.9M
 천 정 고 : 3.0M
 설비모듈 : 3.0×3.0
 구조모듈 : 13.5×6.0
 구 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장재료 : 발색 알미늄 커튼월 + PPG그라스
 : 중원회사, 거레스
 : 화 강 석 :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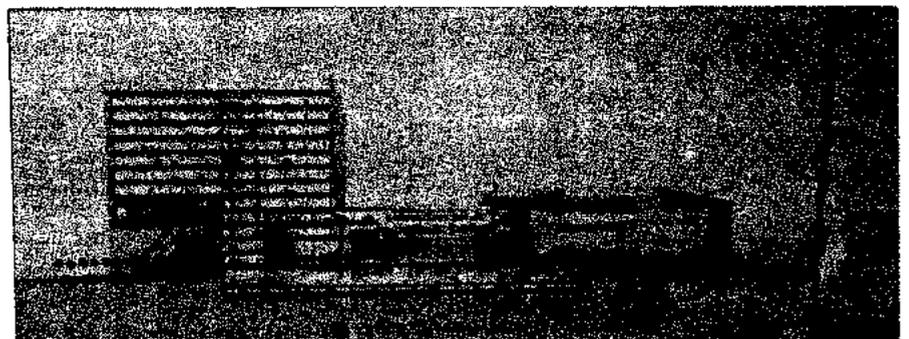
조원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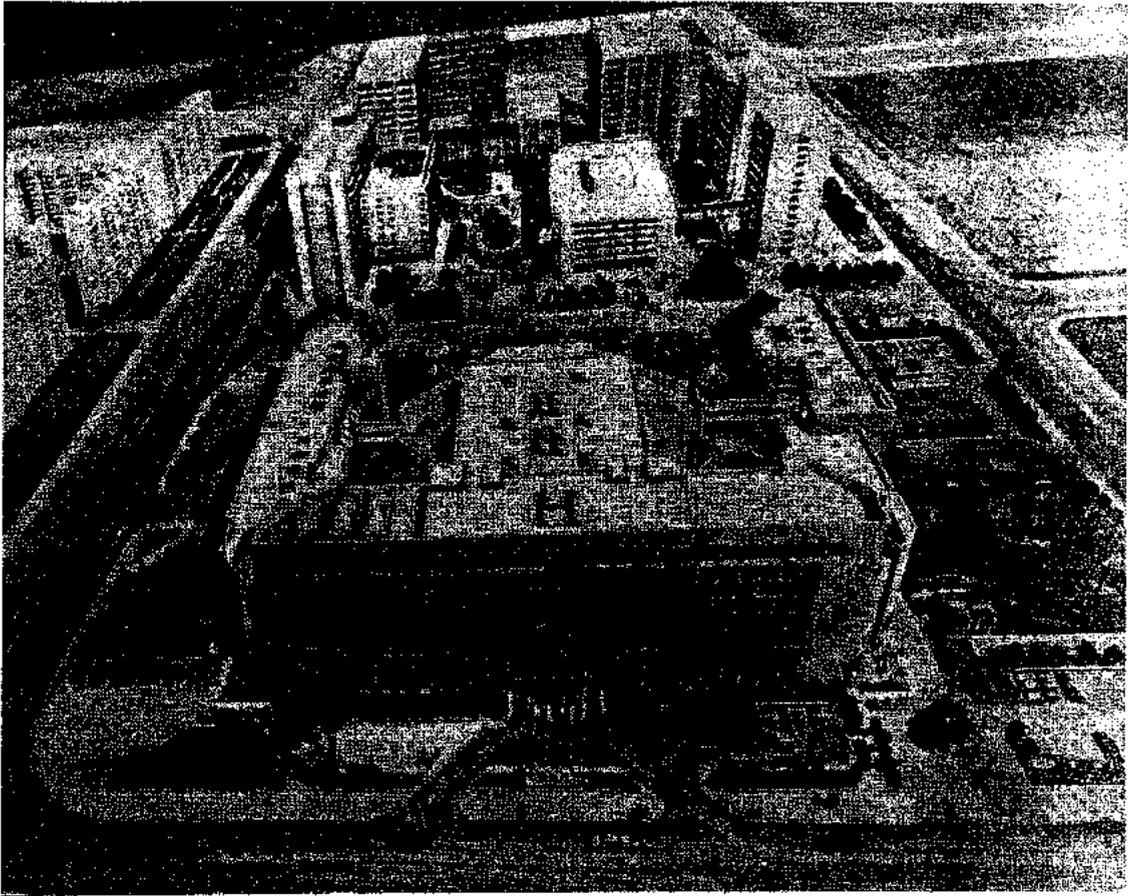
실내투시도



6-1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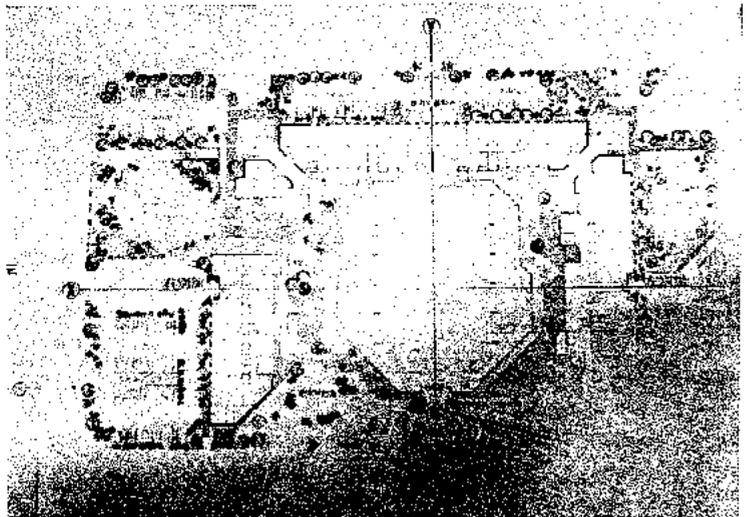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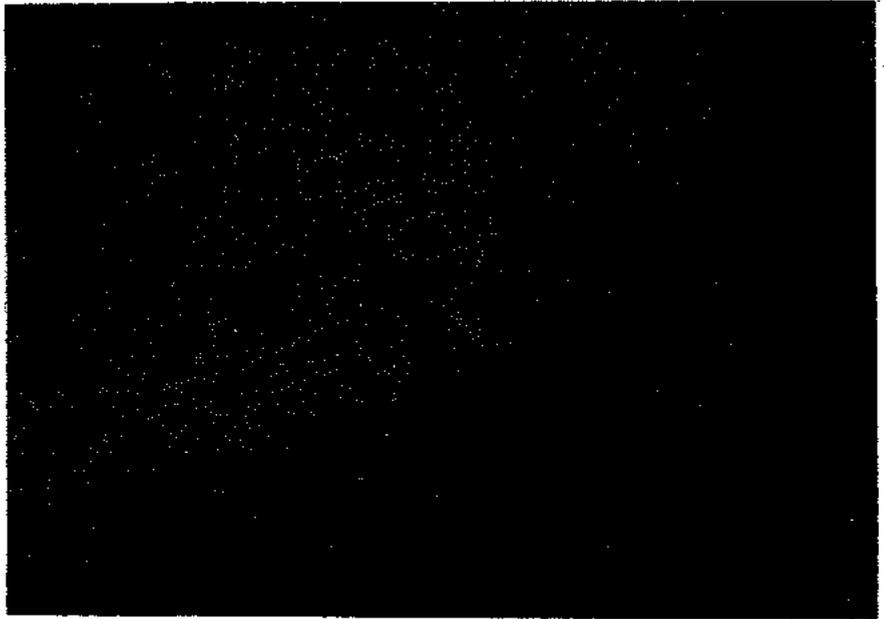


조 감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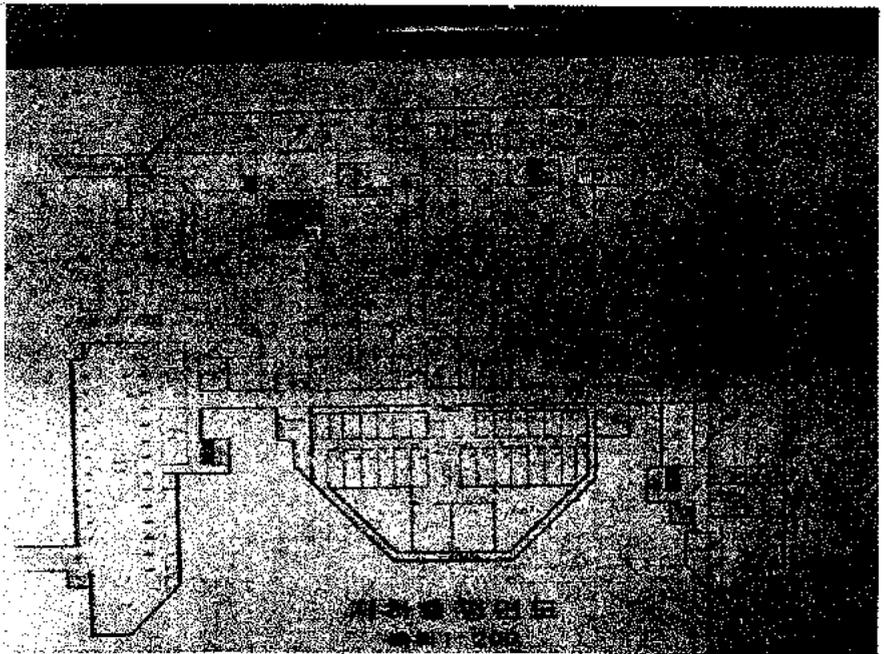
010 110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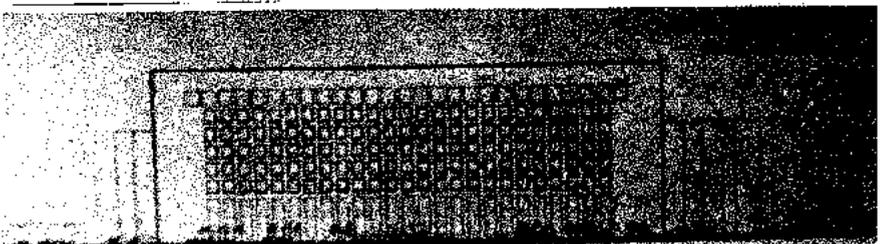
배치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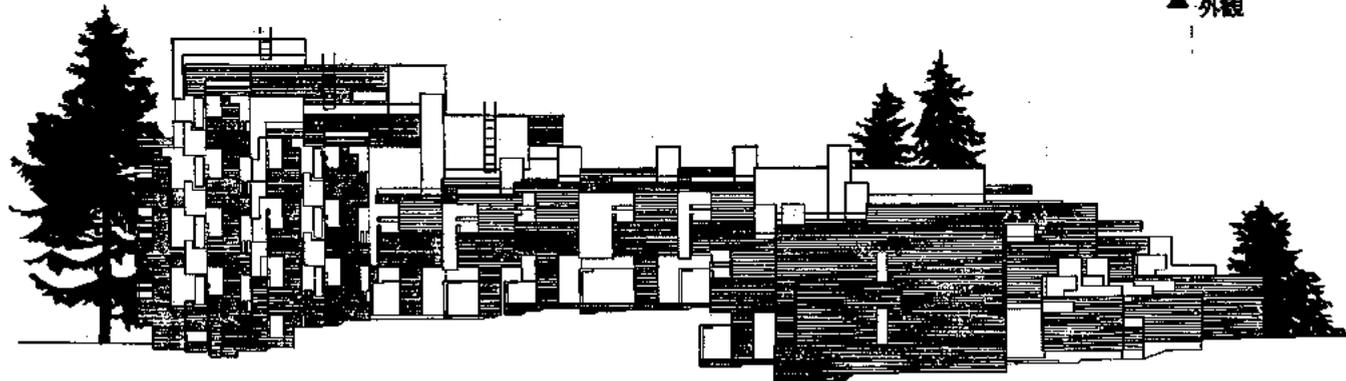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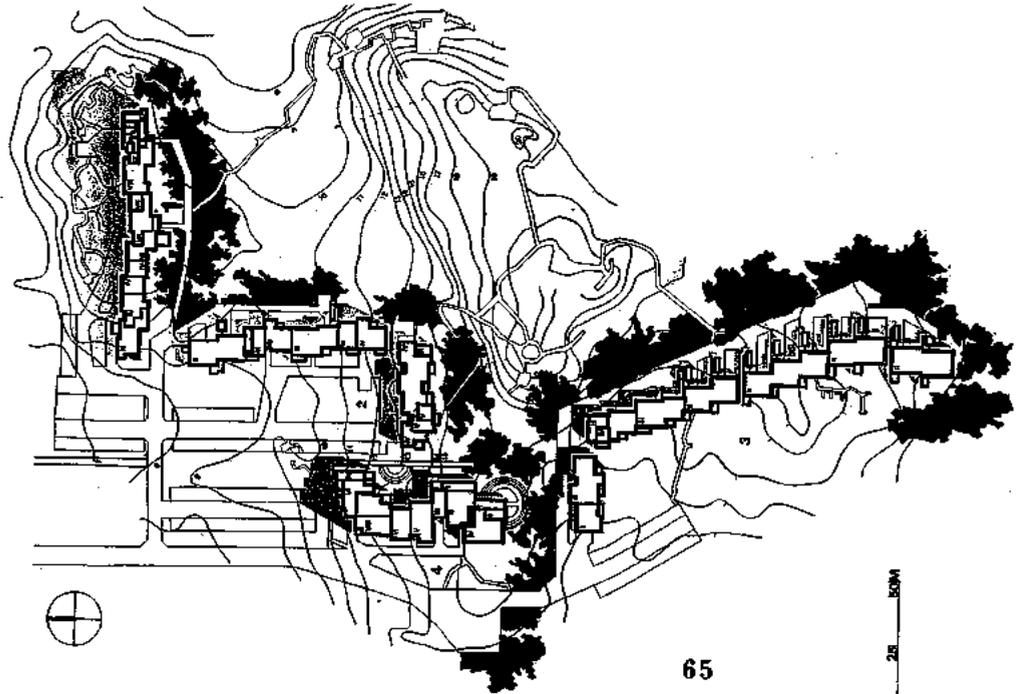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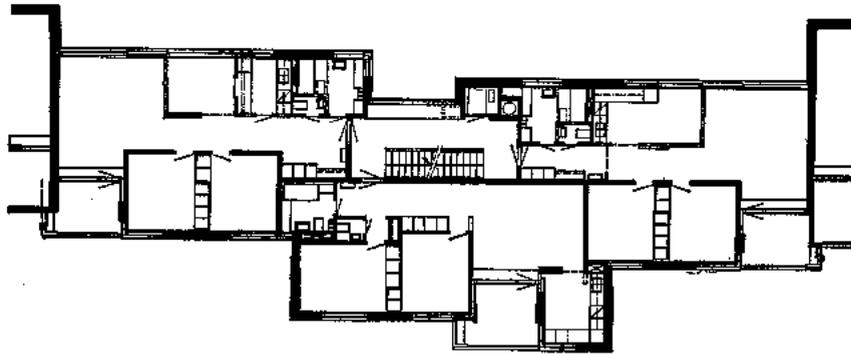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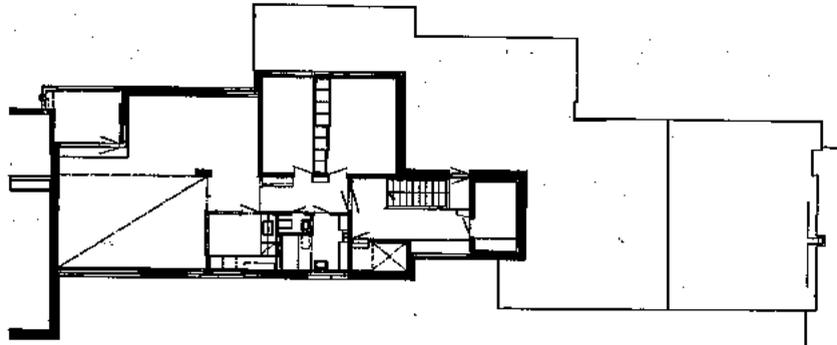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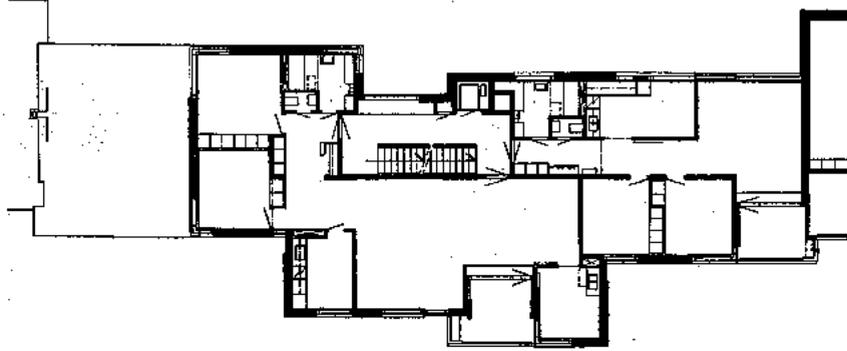
▲ 外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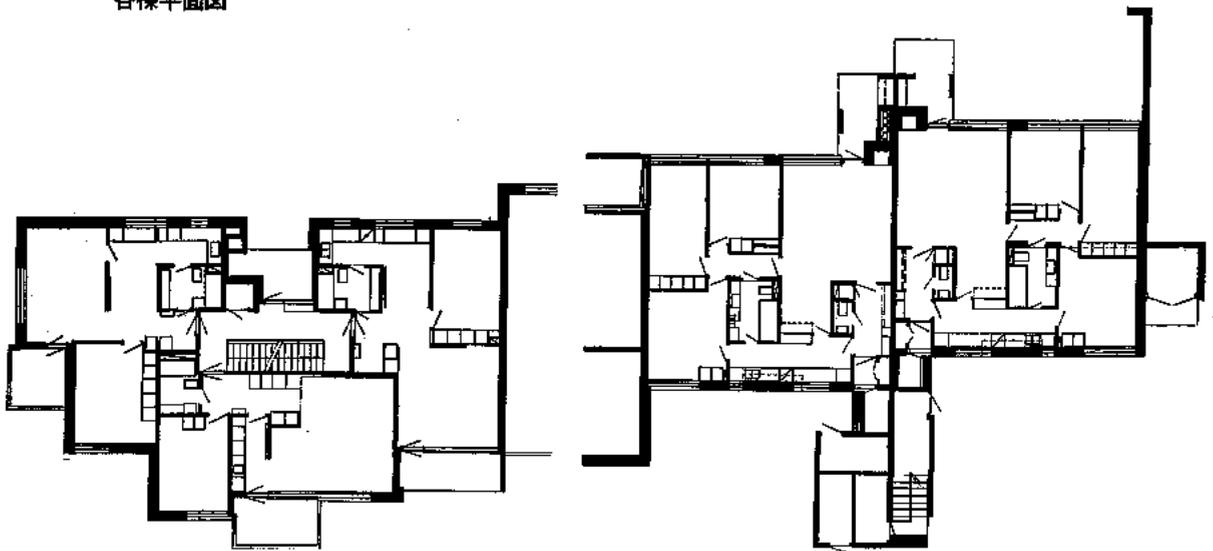
▲ 南側立面圖



▲ 配置圖



各様平面図



自勤部

(서울特別市支部)

新入會員

姓名	名 稱	所 在 地	電 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月日
鄭 正 治	金正建築研究所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466-1	57-0660	2-1714	424	75. 12
구 태 수	금강건축기술공사	서울 용산구 도원동 8-6	43-1696	2-740	426	75. 12
김 병 완	김병완건축연구소	서울도봉구 수유동 191-67	98-2228	2-1722	2-418	75. 11
김 종 대	금강건축(설계사무소)	서울 중구 저동 2가 78	27-0832	1-998	1-679	75. 11
유 백 원	(유백원건축사무소)에건사	서울 강남구 반포동 산 1(6의 1)	57-1129	2-1702	2-425	75. 11
김 형 길	우성건축(설계사무소)	서울 종로구 내수동 20번지	75-6853	1-1118	1-681	75. 11
허 순	근화건축연구소	서울 종로구 청진동 269	73-2565	1-1103	671	12. 11
이 덕 로	정도건축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36	63-3884	1-506	1-684	12. 16
송 신 현	正柱建築研究所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16	21-1653 -7교616	1-1513	682	12. 23
강 남 익	강남건축연구소	서울 중구 인현동 2가 192-30	27-2302	620	687	75. 12. 7
이 종 욱	정원건축이종욱 건축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 16-91호)	(57-2750)	2-1383	2-427	12. 29
민 중 식	민건축환경(研究所)	신문로 2가 89-2	74-4371	1-1514	1-688	
조 순 완	경일건축설계사(무소)	내수동 20	75-6853	1-1229	1-686	
이 영 래	신기술 종합공단	서울시 종로구 노령동 135 삼정빌딩 201호	74-3662	1-864	631	75. 2
폐업회원						
김 진 천	김진천건축설계사무소	서울 용산구 문배동 33-1	42-1505	1-40	1-27	(사망)
박 진 규	현대건축연구소	천호동 410-168	55-8224		2-292	12. 31
제명회원						
임 길 생	한국건축기술연구소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552-4	27-4013	1-625	1-262	
(휴업회원)						
김 한 근	벨타건축연구소	신문로 2가 89-2	74-4371	1-958	1-382	12. 10
장 욱	동화건축공사	홍인동 122	52-4615	1-427	1-541	12. 19
事務室移転						
尹 太 鉉	晶園建築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129-4	9969-69	1-732	1-200	
안 장 원	신아건축연구소	서울 중구 저동 2가 24	26-7191	1-1405	1-585	
이 병 일	공익 건축	서울 서대문구 합동 27-3	75-7602 교 1954	1-101	1-46	
고 연 복	고건축설계사무소	서울 관악구 신림동 74-40	69-5582	1-247	1-350	
박 정 평	신양지건축연구소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147		1-890	1-680	
김 대 로	한일건축기술공사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344-1	25-7749	1-94	1-580	
김 두 설	극동건축연구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5	26-1614	1-56	1-48	
황 규 태	한일종합건축연구소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125	26-7489	1-1204	1-480	
임 병 태	신진건축기술공사	서울 종로구 창신동 366	53-3977	1-500	1-319	
허 명 재	허명재건축연구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78-2	57-0208	2-1565	2-340	

(서울特別市支部)

事務室移転

姓名	名稱	所在地	電話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月日
방효출	신탁 건축	서울강남구학동87-2		1-434	1-411	
김정웅	삼화건축연구소	서울중구올지로6가18-67	21-0533	1-869	1-448	
양치병	文化建築	서울강남구청담동산67-120	57-0533	2-414	2-303	
김재철	김재철건축연구소	서울강남구학동35-3	57-1064	1-1	1-5	
조남수	육일건축기술공사	서울동대문구상봉동116	97-9017	1-224	1-179	
유춘복	동원건설공사	서울중구소공동111-17	22-0440	1-1116	1-528	
이원희	한양건축	서울종로구연의동98-7	21-3777		1-638	
김운웅	상지건축	서울종로구신문로2가55	74-2365	1-1175	1-492	
강순일	필 건축	서울종로구신문로2가55	74-4794	1-1178	1-525	
김웅정	예일종합건축연구소	서울강남구청담동산67-68	57-3393	2-1088	2-339	
윤주현	내외건축연구소	서울중구저동1가90-55		1-1313	1-599	
홍정길	홍정길건축연구소	서울영등포동2가2-1	62-1261		2-400	
이태휘	대홍건축연구소	남창동205-44	22-8108	1-616	1-297	12.4
편기봉	F·A 건축연구소	삼성동6지구회6호	57-4704	1-1071	1-429	12.15
이종상	정우건축연구소	학동1산16-91		1-563	1-610	
유기조	범진건축	특산동171-8		2-881	2-209	
최성남	한미합동건축기술연구소	올지로1가74-1	28-3063	1-1011	1-463	
손정호	은하건축	내수동20	72-4702	2-1710	2-415	12.17
임양섭	청우건설연구소	올지로3가302-2	29-4929	1-1493	1-677	12.18
김봉열	협신건축	올지로6가18-76		2-322	2-104	12.19
이종규	삼용건축	반포동113-1	57-5048	2-961	2-237	"
장성진	광진건축	충무로1가24-14	76-3943	2-682	2-273	"
이찬영	:	:	:	1-1105	1-522	"
장석웅	아도무건축연구소	회현동2가69	23-4434	1-552	1-276	"
신현직	청송건축	상도동22-113	69-1979	1-547	1-187	"
서천식	삼일건축서천식	인현동2가192-30	27-2302	1-1170	1-496	"
이병수	신한건축설계(사)	명륜동1가33-4		1-560	1-487	"
방성	예전사전축방성	영등포동2가195-1	64-2446	2-966	2-239	"
채대웅	채대웅건축연구소	:	:	2-1640	2-377	"
문정일	일정건축	천호동409-28	56-2235	1-1436	1-648	"

(江原道支部)

(新入會員)

裴基雄	성보종합설계기술연구소	속초시동명동 466-60	2495	2-52	1	
禹瑞均	대아건축설계사무소	춘천시중앙로1가90-2	2690	2-1029	(춘천) 3	
洪永培	대아건축기술공단	춘천시 중앙로1가90-1	6049	2-1570	춘천 4	

(慶尙北道支部)

(新入會員)

洪起元	중영건축공사	대구시중구공평동 45	4-9046	2-1742	98	75. 12
李琪亦	이기혁건축사무소	대구시중구공평동 100-3	4-8466	2-1697	101	75. 12
金武權	上智建築設計研究所	대구시중구공평동 11-3	4-6550	1-1517	99	75. 12
김선돌	우진건축	대구시중구남일동 14-1	3-8847	2-1478	100	75. 12
채용희	전양건축설계사무소	대구시중구남일동 14-1	3-8847	2-1419	104	75. 12
박재광	東新建築研究所	경북선산군구미읍원평동 964-13	3600	2-1695	7	75. 12
崔秉敏	상록건축설계사	대구시중구동인동 1가 285-2	4-8457	2-933	105	75. 12
李相烈	理想建築設計研究所	대구시중구동인동 285-2	4-8457	2-1578	103	75. 12

釜山直轄市支部

新入會員

성명	명칭	소재지	전화	면허번호	등록번호	년월일
鄭昇畧	裕林建築設計社	부산시 중구 중앙동 1가24		1506	236	12. 22
임병욱	삼원건축연구소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25-2	44-2449	2-1681	237	12. 24
李炳鉉	조형건축연구소	부산시 동구 초량동 164-9	42-7530	1-1442	238	12. 26
崔洛璜	삼익코아 건축설계사	부산시 남구 대연동 327-12	6-6425	2-1732	239	12. 27
朴在平	三益·에이스 건축설계사	"	6-6425	2-1733	240	12. 27
張潤煥	三益·모든 건축설계사	"	6-6425	2-1736	241	12. 27
金永相	黎明 건축설계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 구포동 1060-114	9-0155	1734	242	12. 30
姜世柱	광동 건축설계사	부산시 동구 범일동 832	8-1225	1164	243	12. 30
金聖坤	聖田 건축설계사	부산시 중구 남포동 2가6	22-8439	2-1171	244	12. 31
표재찬	유일 건축설계사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340-1		2-1601	245	12. 31
정문일	남구 건축사 합동사무소, 신영건축	부산시 남구 대연동 330-11 6-0244	1390	246	246	12. 31
	光明建築設計社	부산지구부전동 351-13	3-9033	2-855	234	75. 11. 25

転入會員 (경남지부에서)

김연호	東進建築設計事務所	부산시동내구사직동 68-1		1-1511		
-----	-----------	----------------	--	--------	--	--

事務所移転

지훈경	하나 공방	부산시동래구명륜동595-	55-0336		중구44호	75. 12
甲玉崗	중앙설계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양정동416	3-7719 6630		부산6호	75. 12
商호變更						
박성길	성진설계 사무소	부산시동래구부곡동898-1	52-0978		동래12호	75. 12
(폐업)						
손태희	성지설계사무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동 260-3			(부산) 5	75. 12. 24
						12. 31

(전라남도 지부)

(新入會員)

김상석	공간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매의동83	2-1738	2-1311 (광주) 26		74. 5. 16
林永在	芸巢建築研究所	광주시동구매인동 125	2-2587	1-1507 (광주) 24		75. 12. 1
曹導引	조일건축연구소	여주시충무동 628	2706	2-1449 (여수) 4		75. 12. 3
최영태	우미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매의동83-2	2-1738	2-1315 33		
신재규	高麗建築研究所	광주시동구계림동 505-113	4-0995	2-1729 31		
林禎奎	市民建築設計事務所	전남광주시동구금남로 5가99	3-2703	2-251 (광주) 32		75. 12. 18

(사무실이전)

朴華洙	국보건축연구소	광주시동구인림동	3-8940	1-1482	23	75. 11. 1
-----	---------	----------	--------	--------	----	-----------

(全羅北道支部)

(新入會員)

白南国	南国建築設計社	전주시중앙동 2가39	2-4821	2-1522	2-30	
-----	---------	-------------	--------	--------	------	--

新入會員의 面顔

서울특별巽支部



정정치



구태수



김병완



김종대



유백원



김형길



허순



이덕로



송신헌



강남익



이종욱



민종신



조순완



이영래

釜山直轄巽支部



정승창



임병욱



이병헌



최낙준



박재평



장윤환



김영상



강세주



김성곤



성문일

釜山直轄市支部



표재찬
慶尙北道支部



임채광



홍기원



이기혁



김무권



김선율



채용희



박재광
全羅北道支部



崔秉敏
全羅南道支部



李相琨



백남국



김상석



임영재



조도인



최영태



선재규
江原支部



임정규



우서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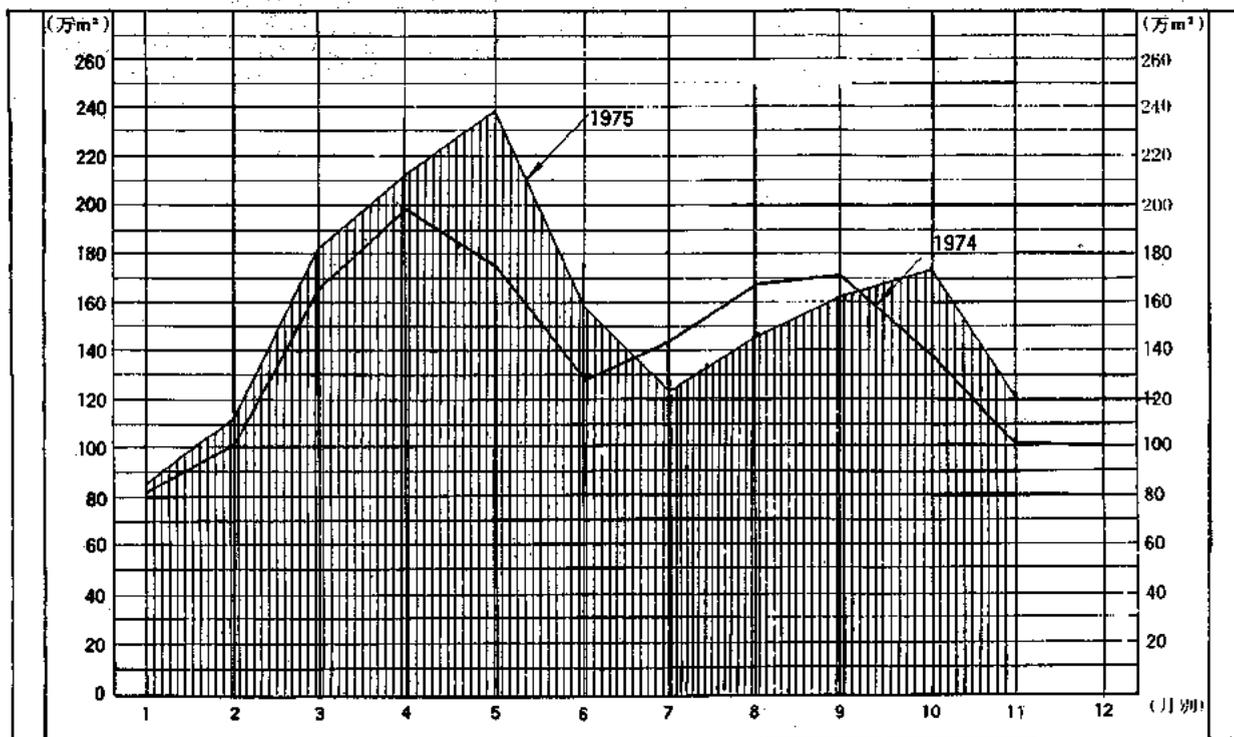
배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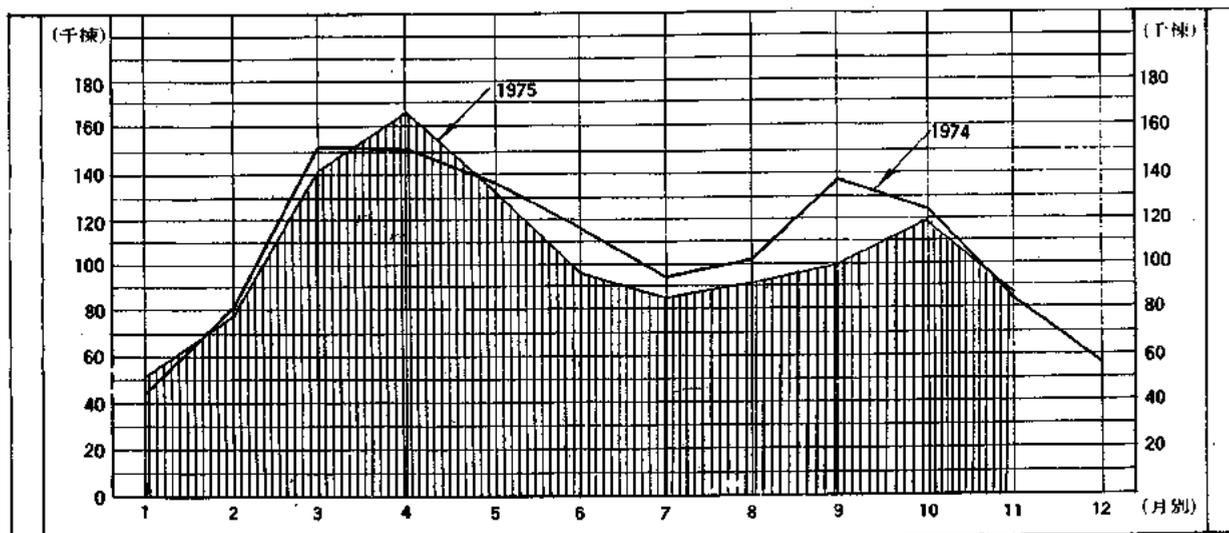
홍영배

全国建築許可統計 (1975.11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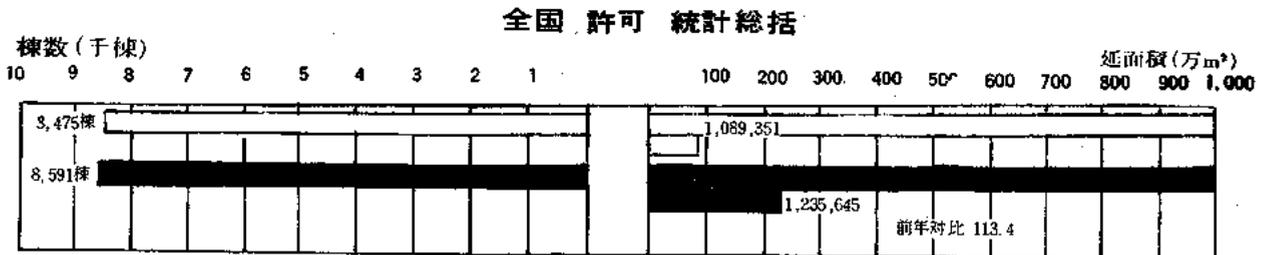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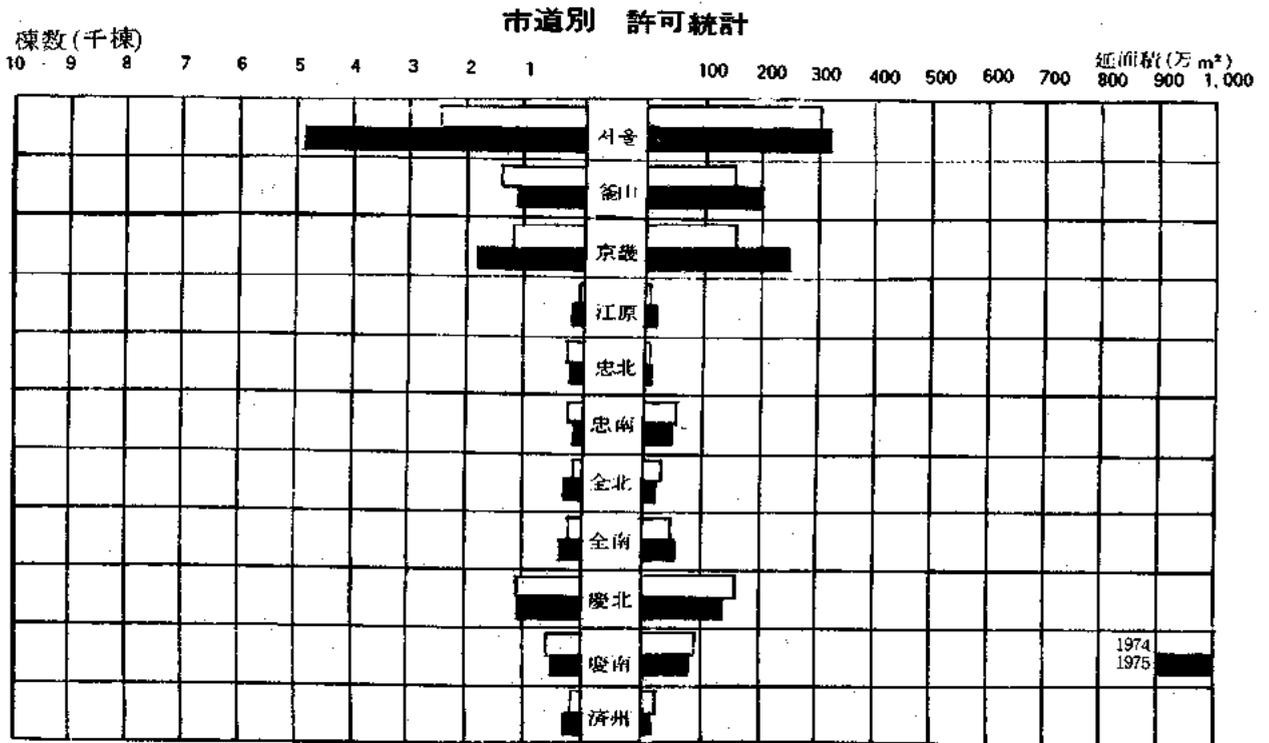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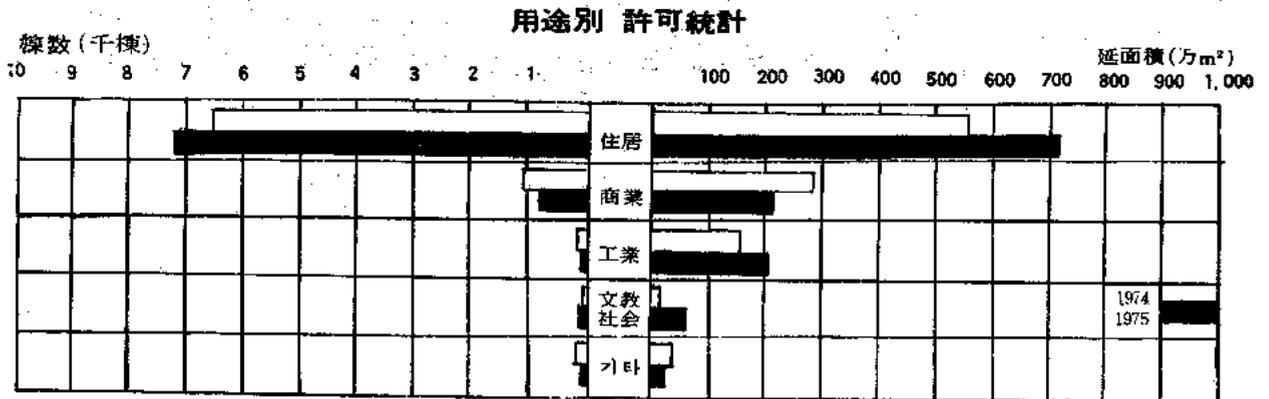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11月分



住宅建築許可節次改善方案實施要綱

建設部

1. 目的

一般國民生活과 가장 密接한 關係가 있는 一般住宅의 建築에 있어 建築許可로부터 竣工에 이르기까지 諸般節次가 繁雜하여 建築主에게 不便을 주고 또한 不条理의 素地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果敢히 改善하여 建築行政의 合理化를 期하는데 있음.

2. 改善方針

- 가. 單獨住宅을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主는 建築士에게 建築을 爲한 設計監理와 許可等 節次에 關한 一切의 業務를 委託代行케 함으로서 建築主가 許可官庁에 出入할 必要가 없도록 함.
- 나. 建築許可官署가 遂行하던 許可申請書의 檢討 竣工 檢査等을 爲한 現場調査를 建築士가 代行處理하게 하고 建築士가 許可申請書의 檢討報告書 및 竣工檢査 調査書等을 建築許可官署에 提出하면 建築許可官署는 이에 依拠하여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等 處分을 함. 다만, 許可官庁이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關係機關合同으로 竣工檢査(現場調査)를 實施한다.
- 다.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等에 있어서 關係部署의 協議 또는 檢査를 大幅省略하는 代身 建築士가 協議 또는 檢査部署에서 미리 作成公表한 點檢表(Check List)에 依拠 檢討하게 함.
- 라.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等을 爲한 諸般業務를 建築士로 하여금 代行하게 함에 따른 建築士의 違法行爲 및 違法建築物 發生을 防止하기 爲하여 建築士 5人以上의 連帶責任下에 同業務行爲를 하게 한다. 違法事項이 있을 때에는 連帶責任을 진 建築士全員을 刑事問責토록 함과 同時에 免許取消等 措置를 함.
- 마. 建築工事現場에는 建築許可部署의 建築許可担当公務員以外에는 누구도 出入을 禁함.
- 바. 都市計劃區域內에서 垆地造成을 하기 爲하여는 土地形質變更許可以外의 他節次는 廢止함.
- 사. 建築許可나 竣工檢査時에는 不合理한 條件賦與 또는 附書類는 廢止함.
- 아. 本 改善方案에 依한 住宅建築節次를 建築主에게 周知시키기 爲하여 建築許可申請書 뒷면에 住宅建築節次 案内文을 記함.
- 자. 本 改善方案은 1976. 1. 1부터 6. 30까지 全州市·水原市·晉州市에 示範實施하고, 必要한 補完을 하여 1976. 7 1부터 全國에 擴大實施함.

3. 細部指針

- 가. 660m² 未滿의 單獨住宅을 建築하고자 하는 建築主는 建築士에게 建築設計·監理와 建築許可로부터 竣工檢査에 이르기까지 一切의 節次履行을 委託하고 許可官庁에 出入하지 아니한다.
- 나. 建築士로부터 委託받은 建築士는 다음 業務를 代行하고 이에 対応하여 許可官庁은 다음과 같다.

建築士가 하는 業務

- (1) 設計(標準住宅設計圖를 活用하는 境遇에는 附近 案内圖, 配置圖, 土地掘整部分整理計劃圖의 作成을 말한다) 및 許可申請書를 作成한다.
- (2) 美觀地區內의 住宅인 境遇에는 다음 書類를 作成 添附하여 美觀審議申請을 하고 그 結果를 設計에 反映한다.
圖面(平面圖, 立面圖, 主断面圖, 配置圖)
写真(現場, 透視圖) 各 3枚
- (3) 建築許可部署 및 關係協議部署가 미리 作成 公表한 Check list에 依據 建築許可를 爲한 許可機關 및 關係 協議部署의 現場確認 및 許可申請書 檢討를 代行한다.
- (4) 許可申請書에 同檢討報告書를 添附하여 許可申請한다.
(設計後 3日以内)
- (5) 許可処分되면 免許稅 其他 市稅納付畢証과 國民住宅債券 添加買入畢証 (85m² 以下인 경우에는 不要)을 提出하고 建築許可書를 受領하여 即時 建築主에게 交付한다.
- (6) 建築材料의 積置等을 爲하여 道路(国道, 特別市道, 地方道, 市郡道에 限한다)의 使用이 必要한 境遇에는 管轄道路 管理庁에 道路使用 許可申請書를 受領한다.
- (7) 着工을 하면 着工後 7日以内에 着工調査書를 作成하여 着工 申告한다.
- (8) 工事監理.
- (9) 3層以上의 住宅인 境遇에는 基礎掘土 完3時와 지붕 構造體 工事完3時 (鉄筋콘크리트造 또는 鉄骨 철근콘크리트造는 基礎配筋完3時와 屋上層配 交付한다. 筋 完3時)에 中間檢査를 實施하고 同調査書를 作成添附하여 中間檢査申請하고 中間檢査畢証을 受領한다.
- (10) 工事が 完了되면 竣工檢査를 實施하고 同調査書를 作成 添附하여 竣工後 7日以内에 竣工申告하고 竣工檢査畢証을 受領하여 即時 建築主에게 交付한다.

許可官庁等의 業務處理

3日以内에 建築士에게 審議結果를 通知한다.

- (가) 建築許可申請檢討報告書란에 依據 8勤務時間 以內에 許可処分하고 建築士 및 建築主에게 許可通知 하여야 한다.
다만, 軍事施設 保護區域內의 住宅인 境遇에는 即時 管轄軍部隊에 協議要請하고 協議完3後 8勤務時間以內에 許可 処分하고 許可通知를 하여야 한다.
- (나) 管轄軍部隊는 3日 以內에 許可官庁에 協議結果를 通報하여야 한다.
다만, 不得已한 境遇에는 事由를 들어 遲延通報 할 수 있되 通算 7日을 超過할 수 있다.
- (다) 建築許可處理時 다음 條件以外의 條件은 붙일 수 없다.
空地內 空地에 10m²當 1株의 庭園樹(樹高 2m以上)를 植栽할 것. 다만 植樹不適期(1~3月, 6~8月)에는 이 條件履行을 適期까지 保留함.
- (가) 竣工檢査調査書란에 依據 8勤務時間 以內에 竣工檢査処分하여 建築士에게 竣工檢査畢証을 交付한다.
다만, 다음의 住宅에 對하여는 關係機關 合檢査班으로 徹底히 竣工檢査(現場調査)를 實施하여 竣工檢査畢証을 交付하되 違法事項이 發見된 關係法令에 依據 措置한다.
(1) 竣工申告件 50件當 1件으로 選定(無作為抽出)된 住宅
(2) 違法事項 情報를 入手한 住宅
(3) 其他 許可 官庁에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住宅
- (나) 前項의 違法事項에 對한 措置는 아래 範圍內에서 嚴重措置하여 一罰 百戒의 實效를 거두도록 한다.
建築物→使用禁止 또는 撤去(但 故意없이 極히 輕微한 違反을 한 境遇에는 改修命令)와 電話, 電氣, 水道의 供給禁止
建築主→告發
建築士→免許取消 또는 登錄取消와 告發
- (다) 竣工檢査畢証을 交付한 때에는 即時 그 寫本을 稅務部署에 送付하여 이를 받은 稅務部署는 3日 以內에 家屋台帳에 自動登載 한다.

- 다. 建築主로부터 委託받은 建築士가 前項(第 5 号를 除外한다)의 業務를 行할 때에는 共同責任을 지도록 미리 編成된 他建築士 4 人과 連署로 하여야 한다.
- 라. 建築士는 前項의 業務를 行함에 있어서 建設部長官이 認可한 設計, 監理報酬(標準, 住宅設計圖書를 活用하는 境遇에는 監理報酬)以外에 어떠한 名目の 金額도 請求할 수 없으며 共同責任 建築士를 爲한 增額等 要求할 수 없다.
- 마. 前項의 禁止指示에 違反한 建築士에게는 刑事問責토록 함과 同時에 登錄取消措置를 한다.
- 바. 建築工事現場에는 建築士(所屬職員包含) 建築許可 担当公務員 合同檢査班을 除外하고는 어느 公務員(職員包含)도 出入을 禁한다. 다만, 不可避하게 調査確認할 事項이 있는 境遇에는 建築許可 担当公務員에게 依據할 수 있다.
- 사. 前項의 禁止指示에 違反한 公務員等에게는 命令違反으로 嚴罰한다.
- 아. 都市計劃區域內의 空地造成行為의 許可에 있어서는 都市計劃部署가 土地形質變更許可만으로 處理토록 하며 이로써 農地轉用協議 또는 林野開墾等 許可에 가름하게 한다.
- 자. 建築許可申請書裏面に 住宅建築節次案内文(別添 1)을 添記한다.

4. 施行準備措置

이 改善策의 円滑한 實施를 爲하여 全州市·水原市·晉州市의 市場(關係協議部署包含)은 다음 措置를 取하여 同 結果를 通知事經由 1975. 12. 22까지 建設部長官에게 提出하고 承認을 받은 後 이를 公表한다.

가. 建築許可官庁

- (1) 建築許可, 着工申告, 中間檢査 竣工檢査時에 確認檢討되어야 할 具體的인 事項과, 그 適否 表示方法을 明示한 點檢表(Check List)를 作成한다.
- (2) 管轄區域內의 建築士(事務所開設登錄單)를 5 人單位(5 人單位에 未達되는 端數調整上 必要할 경우에는 4 人單位)로 共同責任下에 이 改善策에 依한 業務를 行하도록 自律的으로 編成케 하고 同建築士의 連署한 誓約書(別添 2)를 徵求한다.
- (3) 다음 基準에 따라 合同檢査班을 編成한다.
 班長: 建築許可部署의 担当官
 班員: 다음 關係部署의 担当職員 各 1 人
 都市計劃部署
 清掃担当部署
 警察官署
 韓國電力株式会社(또는 大韓電氣安全公社)
 區副整理部署(區副整理事業地區內)
 綠地部署(風致地區內)
 軍部隊(軍事施設保護區域內)
 其他 市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部署
- (4) 裏面に 住宅建築節次案内文이 添記된 建築許可申請書用紙를 印刷配布한다.

나. 關係部署

- (1) 建築許可 및 竣工檢査를 爲한 協議와 其他 現場調査時에 確認·檢討되어야 할 具體的인 事項과, 그 適否表示方法을 明示한 點檢表(Check List)를 作成한다.
- (2) 建築工事現場에 出入을 禁止하는 指示事項을 所屬公務員等에게 周知시켜 違反이 없도록 한다.

5. 經過措置

本 住宅建築 許可節次改善方案 施行以前에 建築許可官庁에 接受된 建築許可申請書 또는 既許可된 것에 對하여는 從前方針에 依拠 處理토록 한다.

<별첨 1>

주택건축절차안내문

1. 주택(660㎡미만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청에 출입할 필요없이 건축사에게 의뢰만 하면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건축사는 의뢰받은 즉시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가. 설계

나. 미관지구내의 주택인 경우에는 미관심의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 건축허가 관청의 검토와 관계부서의 협의를 대행합니다.

(1) 현장확인

(2) 용도지역, 지구, 도로등에의 적합여부 검토

(3) 구조의 안전 및 정화조 구조의 검토

(4) 도시계획시설(또는 구획정리사업)에의 저촉 여부 확인

(5) 풍치 저해 여부 검토

라. 허가신청

건축사는 설계후 3일이내에 위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 관청은 이 검토보고서만에 의하여 8 근무시간이내에 허가하게 됩니다.

다만, 특수지역에서는 허가관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후 허가 합니다.

마. 건축허가가되면 제시공과금을 납입한 후 허가서를 수령합니다.

바. 건축자재의 적치등을 위하여 도로의 일부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로사용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서를 수령합니다.

사. 공사에 착수하면 7일 이내에 착공 조사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합니다.

아. 3층이상의 주택이면 기초 굴토완료시와 지붕구조체공사 완료시에 중간검사를 실시하고 중간검사 조사서를 첨부하여 중간검사 신청을 하고 중간검사 필증을 수령합니다.

자. 공사가 완료되면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사서를 첨부하여 준공신고하고, 준공검사 필증을 수령합니다.

허가 관청은 위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조사서만에 의하여 8 근무시간이내에 검사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다만, 위법 건축 방지를 위하여 허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검사반이 준공검사(현장조사)를 한후에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3. 건축공사 현장에는 건축사, 건축과 담당공무원과 합동검사반 이외에는 누구도 출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4. 의뢰받은 건축사는 정부가 승인한 설계감리보수 이외에는 위에 말한 일을 하는 비용을 따로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사가 부당한 보수 또는 비용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와 전항에서 출입 금지된 공무원이 건축공사장에 출입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시(또는 구청), 군의 건축과(전화:)

에 신고 하시면 즉시 시정함과 동시에 관계자는 엄중 문책하게 됩니다.

5.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되면 동시에 그 사본이 세무부서에 송부되어 3일이내에 가옥대장에 자동등재되며 등대장등본을 교부받아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하면 됩니다.

連帶責任建築士

事務所名

級建築士 姓名 印

〇〇 市長 郡守 貴下

<별첨 2> 誓約書

1976年 1月부터 住宅建築節次改善策이 實施됨에 따라 本人等은 連帶責任下에 同改善策에 依한 諸般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關係法令 및 同改善策內容을 誠實히 遵守하여 建築行政의 合理化에 寄與하고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겠으며 萬若 이를 違反하여 違法建築物을 發生하게한 境遇에는 勿論, 建築主에게 不當한 金品을 要求하거나 業務處理를 不當하게 遲延시키는 등 非違事實이 있는 境遇에는 本人等全員을 刑事処罰 托辱한 과 同時에 免許取消 등의 處分을 하여도 이를 甘受하겠기 連署로 誓約합니다.

1976年度 第1回 編纂委員會

일시: 1976. 1. 15. 16:00

장소: 본회 회의실

- 출석: 위원장 이홍수
 위 원 김진일
 " 김인석
 " 유경철
 " 윤도근
 " 이문보
 " 김한근

토의안건:

1. 전월호 합평
2. 1월호 편집계획안 토의
3. 기타사항

제 6회 윤리위원회

일시: 1975. 12. 26(금) 15:00

장소: 회의실(본회)

- 참석위원: 양경식
 윤기병
 장기인
 선병택
 한광수
 강진삼

심의요청사항

1. 징계(회원 자격정지 6월)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권 심의
2. 타, 건축사가 설계한 사실을 알면서 설계한 행위건 심의
3. 명의 대여 행위건 심의

제 1회 定期理事会

일시: 1976年 1月 8日(목) 14:00

장소: 본협 회의실

- 출석
 회 장 이 규 복
 총무이사 박성규
 이 사 이 홍 수
 이 사 성 일 영
 이 사 김진성
- 참석
 감 사 윤회준
 감 사 박래윤
 서울시지부장 이봉노

부의안건

1. 각 위원회 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임의견
2. 충남지부 은양 분소 및 장항분소 설치 승인 의견
3. 윤리위 필정 사항 수락 의견
4. 직원(출판부 소속 2명) 채용 및 직원 승진의견
5. 본부 직원 및 각시노 지부 사무국장 호봉결정의견
6. 실적회비 산출 기준 제정의견
7. 전북지부 임원취임 승인 의견
8. 기타 사항

國務總理指示第16号에 對한 陳情

技術用役業體의 重點育成策의 一環으로 政府에서는 75年 11月 13日 國務總理指示 第16号를 傘下에 示達하여 政府의 各部處 政府傘下機關 地方自治團體에서 兪注하는 用役費 5百萬元 以上의 土木建設分野 및 化工分野의 技術用役은 韓國 綜合技術開發公社 및 코리아엔지니어링에 各各 委囑하도록 指示함을 계기로 政府의 一部 部處에서는 이같은 國務總理指示를 擴大解釋 用役費 500萬元 以上의 建築設計分野의 用役도 同總理指示와 關聯시켜 우리 회원에게 用役兪注하는 것을 拒否하는 事態를 惹起함으로써 會員業務活動에 莫大한 支障은 招來하고 있음으로 本協會에서는 別途揭載한 바와 같은 陳情書를 靑瓦台 國務總理室 등 關係要路에 提出하는 한便(76. 1. 19)

1月21日에는 李圭福會長이 國務總理室 關係官을 심방하고 陳情의 要旨를 說明하는 同時 早速한 是正策을 강구해 주도록 要請하고 아울러 建設部 關係官 들에게도 協助를 要請하였는바 關係當局의 反應으로 보아 本協會에서 陳情한 內容에 立脚한 是正措置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予想된다.

建築法施行令(案)에 對한 公聽會

지난해 定期國會에서 建築法改正法律이 通過되고 이어 政府에서 이를 公布함에 따라 建設部에서는 그間 建築法 施行令 改正 作業을 推進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本協會 會議室에서 建設部 關係官 本協會 任員 其他 關係團體人士 등이 모여 이 施行令案에 對한 公聽會가 開催되었다.

本協會에서는 이와같은 1連의 움직임에 對處 建築法 施行令에 垜地境界線 問題 등 論理의 焦點이 되고 있는 部分이 合理的으로 그리고 現實에 알맞게 規定되도록 各種資料와 協會 意見을 提出하는 등 多角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委嘱된 各委員會 委員名單

〈指導委員會〉

- 委員長 李圭福 (現會長)
- 委員 崔統 (國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 " 南德鉉 (住宅都市局長) 建設部
- " 張起仁 (本會第2代會長)
- " 金在哲 (本會第3代會長)
- " 姜明求 (本會第4代會長)
- " 姜奉辰 (本會第5代會長)
- " 姜大雄 (本會第6代會長)
- " 韓昌鎭 (本會第7代會長)

〈企副委員會〉

- 委員長 朴成圭 (本協會總務理事)
- 委員 李奉魯 (本會서울市支部 支部長)
- " 柳光澤 (本會釜山直轄市 支部長)
- " 朴弘雨 (忠南支部長)
- " 崔春和 (全南支部長)
- " 尹商鳳 (慶南支部長)
- " 韓永洙 (大韓合同設計公社) 代表
- " 金榕培 (成美建築社) 代表
- " 宋寬植 (黃海建築社) 代表
- " 金萬盛 (連合建築) 代表
- " 金正治 (金正治建築研究所) 所長
- " 鄭孝煥 (경건축設計事務所) 所長
- " 吳棕 (連合建築研究所) 所長
- " 尹太鉉 (晶園建築 代表)
- " 李祖源 (世紀建築設計事務所) 所長
- " 崔光鉉 (汎美建築研究所) 所長
- " 朴來昇 (한성건축설계사무소) 所長

〈倫理委員會〉

- 委員 朴成圭 (本會總務理事)
- 委員 柳常悅 (建設部法務官)
- " 法律顧問 ()
- " 宣炳澤 (漢陽大學校 教授)
- " 韓珖洙 (陳陽綜合技術設計事務所 所長)
- " 康晉參 (太陽建設 技術公社) 代表
- " 金斗燮 (極東建築開發研究所 所長)

慶南支部

支部事務所 · 電話番号變更
 變更電話번호: 2-4590 · 2-4531
 구번호: 2-4540 · 2-9421

〈建築研究委員會〉

- 委員長 成一永 (本協會理事)
- 委員 金鎭成 (本協會理事)
- " 韓圭奉 (建設部建築系長)
- " 安仁模 (三朋建築研究所長)
- " 金技泰 (三亞建築事務所長)
- " 李明煥 (有信綜合設計公團) 代表
- " 吳雄錫 (新潮建築 代表)
- " 李丞雨 (綜合建築設計事務所 所長)
- " 李春相 (新洋建築事務所 所長)

〈編纂委員會〉

- 委員長 李興秀 (本協會理事)
- 委員 金仁錫 (又新建築 研究所長)
- " 李文輔 (東大建築科 教授)
- " 金眞一 (漢大建築科 教授)
- " 尹道根 (弘大建築科 教授)
- " 韓鏞燮 (富國建築研究所 所長)
- " 俞景哲 (三·六建築研究 所長)
- " 金漢根 (델타建築 新門路 89-2)

— 人事發令 —

1976年度 第1回 理事會議에서

本部 技術部長 安義模 命總務部長 겸임
 出版担当 李海東 命出版部長署理
 出版部근무 許宗宅 命出版部廣告担当
 으로 各各 發令하다 (1月1日字)

建築法規 (圖解)

著者 洪鵬義
 李柱瑛

값 3,700원

建築界소식

國內

弘益大學校 理工大 建築科 第11回

建築都市計劃展

韓國住居의 過去・現在・未來象

- 第1部： 大都市 住宅
 - 第2部： 中小都市 住宅
 - 第3部： 農村住宅
 - 第4部： 都市計劃 및 취락計劃
- 일시： 1975. 12. 5~15까지
장소： 弘大 博物館

서울 大學校 工大

建築學科

第30회 卒業作品展

- 일시： 1976. 1. 12(月)
1. 21(水)
장소： 大韓建築士協會
1층 展示場

西紀1975年 12月26日 金曜日



在日韓僑母國訪問日記
不遇의 奇蹟기 誠金집자
△大韓建築士協會 濟州新聞社 贈
發行所 濟州新聞社 發行部



國外

公 告

會員諸位
丙辰 새해 本會는오직 會員을 위한 會員의 해로 정하고
會員任들의 作品을 회지 建築士誌에 되도록 많이 収録코자
널리 그作品을 募集하오니, 會員여러분의 많은 利用을 바
랍니다
특히 地方 特色을 살린 作品을 더욱 환영합니다. 論文
散文, 趣味 等 會員코 -너도 마련 되 있음을 알립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月刊建築士

新刊圖書案內

중
心
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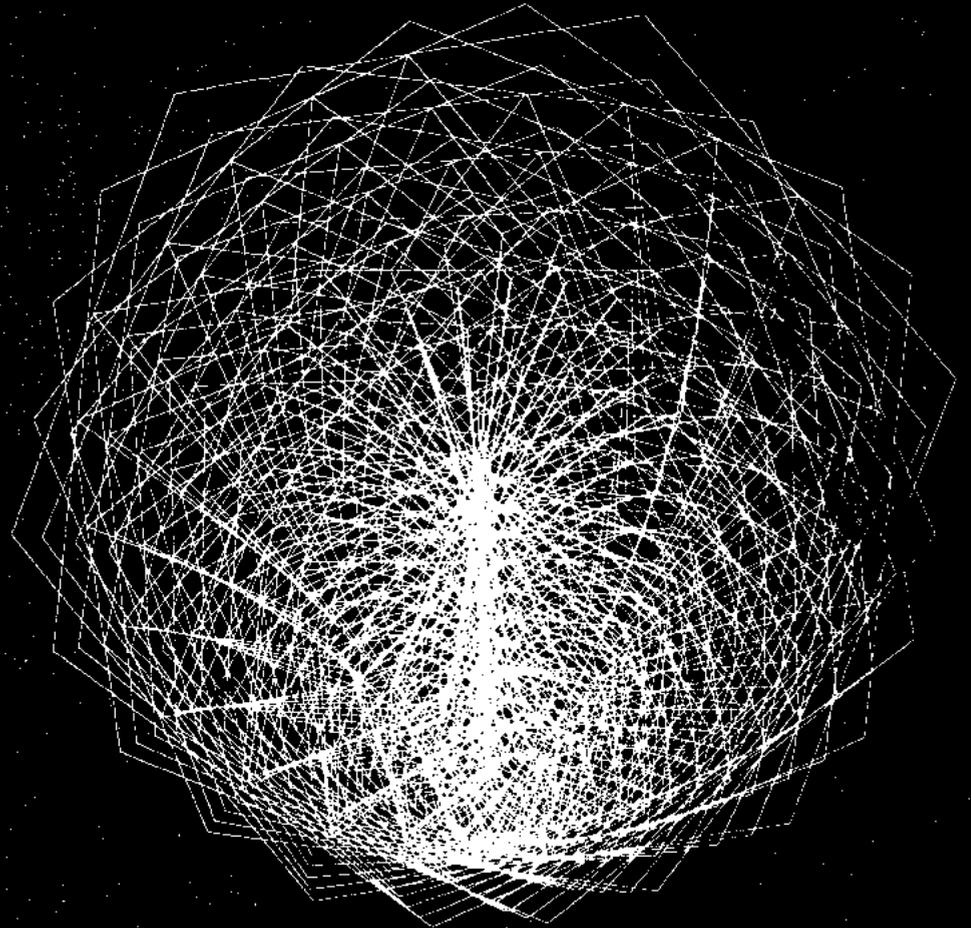
應用構造力學問題集

曹
鐵
鎬
著

中
心
點

應用構造力學問題集

曹 鐵 鎬 著



국판 총문제수 500여 문제
上·下권 各 ₩ 1,500

- 韓國·日本 과거 12年間 出題 問題 収録
- 최신 경향의 予想問題 多數 収録
- 새로운 不靜定 解法인 行列式의 解説
- 建築士, 建設技術者, 構造技術士 過去 12年間 問題 年度別, 各章 別 分析으로 출제 경향의 파악
- 초보자도 알기 쉽도록, 기초적인 基本, 學習, 應用問題順으로 자세한 解説, 公式 總整理

구입방법 :

① 서울·중구 태평로1가 68-8 73-6616
국제극장 옆 감리회관 1층 (74-0221)
관인 서울컴퓨터학원 建設應用室
에서 직접 구입

② 지방에 계신 분은 아래 주소로 소액환을
등기로 보내 주시기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매체계좌 (서울 525956)를 이용해 주십시오.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175-1 (4층)
도서담당 귀중 (73) 6255·(99) 9796

技術士·建築士·技師 1·2級을 위한 建築試驗問題集시리즈

主觀式
客觀式

鐵骨·鐵筋콘크리트問題集

曹 鐵 鎬 著

₩ 2,800

(再版 發行) 국판 412면, 鐵筋 461문제, 鐵骨 71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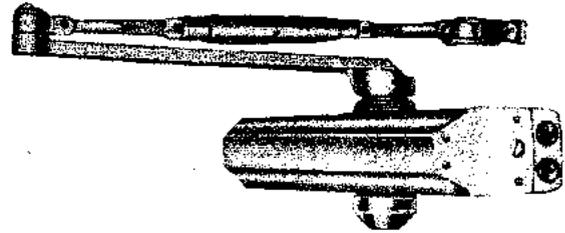
- 韓國規準에 따른
- 要点中心, 短期完成, 問題解説集
- 基本問題, 學習問題, 應用問題를 段階式으로
- 韓國·日本·과거 12年間 出題問題 収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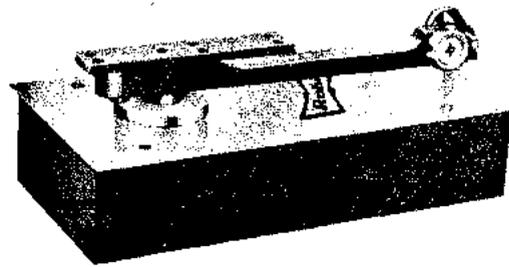
RUBICON HARDWARE

⇒ 建築界 諸賢의 不便을 덜어드리기 爲하여
建築用鐵物綜合 메-카로서 業界의 一翼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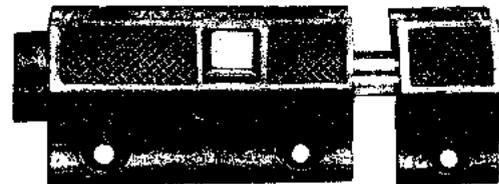
도아 크로저 DOOR CLOSER



후로아 힌지 FLOOR HINGE



自動 랫지 AUTO LATCH



- DOOR CLOSER는 標準型外도 여러 機種이 있으며 特히 Stop裝置機種이 있어 문을 열어두어야 할때는 開門 90度에서 任意位置에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 FLOOR HINGE는 現在市販되고 있는 製品과는 달리 完全油压式으로 作動의 부드러움과 正確性은 需要家 여러분에게 滿足을 드릴것입니다.
- AUTO LATCH(自動랫지)는 ONE TOUCH로 잠그고 열 수 있으며 出入門의 補助자물쇠, 家具用 등 그 用途는 多様합니다.
- 其他 精密을 要하는 여러가지가 生産되고 있으며 特殊한것은 注文에 応하고 있습니다.



世界를 向한 建築用 鐵物綜合 메-카

루비컨製作所

本社 및 工場
市内事務所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溫水洞 42-1 TEL. 8-2294
서울特別市 中區 草洞 55 TEL. 26-1567-29-8680